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2016년도 제1,2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2016. 6.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016년도 제1,2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기관명	처분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경고	주의	소계	
성산유치원	3	0	3	3	190,000
해승유치원	4	2	2	4	84,852,000
청파유치원	3	1	2	3	11,248,410
솔빛유치원	4	8	5	13	31,538,078
합 계	14	11	12	23	127,828,488

2. 유치원별 지적사항 및 처분(안)

기관명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성산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인천시 숲 나무심기 후원금 50,000원, 여름성경학교 후원금 100,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0원 등 총 19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190,000원 “주의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상여금, 여름휴가비를 근로소득에 미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함 - 2015년도: 원장 □□□ 외 6명, 총 380만원	“시정” “주의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서류(계약서 등) 미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세입, 세출 불일치	“주의 요구”
해승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경로당 지원금 1,800,000원, 개인 차량유지비 312,000원 등 총 2,112,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2,112,000원 “경고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상여금, 여름휴가비를 근로소득에 미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함 - 2015년도: 원장 ▲▲▲ 외 9명, 총 740만원	“시정” “주의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주의 요구”
	연금보험료	○ 유치원 원장 개인 연금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 - 2012. 11월 ~ 2014. 4월, 총 8,274만원	“시정(회수)” 82,740,000원 “경고 요구”

기관명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청파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지역사회 후원금 170,000원, 교사회식 택시비 43,900원, 교직원 예방접종비 650,000원 등 총 863,9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863,900원 “주의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연말정산 착오 신고 – 2015년도: 원장 ☆☆☆ 외 12명, 총 8,554,302원 ○ 근로소득세, 강사세금등을 개인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10,384,510원	“시정(회수)” 10,384,510원 “경고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세입, 세출 불일치	“주의 요구”
솔빛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차량 유류비 3,509,748원, 공공요금 연체료 472,003원, 학부모 병원 진료비 352,000원 등 총 4,333,751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4,333,751원 “경고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을 근로소득에 미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함 – 2015년도: 원장 □□□ 외 11명, 총 17,800,000원	“시정” “주의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공통운영비, 급식비, 교수학습활동비, 업무추진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주의 요구”
	보험료 납입	○ 2013년 5월 현대해상 및 2013년 7월 ING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였으나, 해지시 발생한 해지 환급금을 유치원 회계에 납입하지 않음 (현대해상 9,500,000원, ING생명보험 17,704,327원)	“시정(회수)” 27,204,327원 “경고 요구”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90,000원
수감기관	성산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성산유치원
내 용

성산유치원 원장 □□□은 2005.03.18.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성산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금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07.19.	인천시 숲 나무심기 후원금	50,000	
2	2013.07.31.	여름성경학교 후원금	100,000	
3	2015.07.31.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0	
합 계			190,000	

조치할 사항 “시정”

성산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190,00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성산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성산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성산유치원
내 용

성산유치원 원장 □□□은 2005.03.18.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성산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여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성산유치원장은 **원장 □□□ 외 6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 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성산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연번	성 명	명절상여금 (2015.02.17.)	여름휴가비 (2015.07.31.)	명절상여금 (2015.09.25.)	합 계
1		200,000	200,000	200,000	600,000
2		200,000	200,000	200,000	600,000
3		200,000	200,000	200,000	600,000
4		200,000	200,000	200,000	600,000
5		200,000	200,000	200,000	600,000
6		’15.3월 임용	200,000	200,000	400,000
7		’15.3월 임용	200,000	200,000	400,000
합 계					3,800,00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성산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성산유치원
내 용

성산유치원 원장 □□□은 2005.03.18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산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지출결의서의 적요 란에 단순한 품목만을 기재하면서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을 비치하지 않았음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5.04.03.	농장 사용료	500,000	
2	2015.02.27.	관리비(공공요금 분담금)	2,000,000	

2.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3.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4.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성산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성산유치원 원장 □□□

[붙임 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집행과목
1	2013.03.08.	행사식대	200,000	교수학습활동비
2	2013.03.08.	내빈식대	60,000	교수학습활동비
3	2014.07.29.	교사음료간식	16,400	공통운영비
4	2014.09.02.	커피구입	26,330	공통운영비
5	2015.02.16.	교사야근간식	23,100	공통운영비
6	2015.02.16.	교사간식비	9,600	공통운영비
7	2015.05.22.	교사회식비	61,200	공통운영비
8	2016.02.19.	교사회식비	146,000	공통운영비
합 계			542,630	

[붙임 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수
특성화활동비	36,111,000	45,295,250	-9,184,250	25,150,000	33,419,100	-8,269,100	33,8
현장학습비	7,991,850	7,669,100	322,750	7,204,780	7,531,550	-326,770	5,20
급식비	25,371,160	31,611,090	-6,239,930	23,723,370	27,431,890	-3,708,520	19,0
교재비및재료비	7,365,150	6,452,000	913,150	5,982,140	6,543,560	-561,420	79
원복비	-	-	-	1,495,000	1,592,000	-97,000	2,07
합 계	76,839,160	91,027,440	-14,188,280	63,555,290	76,518,100	-12,962,810	60,9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112,000원
수감기관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00.03.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승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로당 지원금 등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해승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2,112,00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해승유치원 원장 ▲▲▲

[붙임] 해승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3.~2016.3.	경로당지원금	1,800,000	50,000원×36개월 (2015.5월제외)
2	2013.03.18.	차량유지비	7,000	
3	2013.05.09.	주유대금	100,000	
4	2013.05.09.	세차	25,000	
5	2013.07.05.	주유대금	80,000	
6	2013.08.23.	주유대금	100,000	
합 계			2,112,000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00.03.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승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여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해승유치원장은 **원장 ▲▲▲ 외 9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 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해승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연번	성 명	명절상여금 (2015.02.28.)	여름휴가비 (2015.07.23.)	합 계
1		3,300,000	300,000	3,600,000
2		300,000	300,000	600,000
3		200,000	200,000	400,000
4		200,000	200,000	400,000
5		200,000	200,000	400,000
6		200,000	200,000	400,000
7		200,000	200,000	400,000
8		200,000	200,000	400,000
9		200,000	200,000	400,000
10		200,000	200,000	400,000
합 계				7,400,000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00.03.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해승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집행과목
1	2013.05.30.	출산선물	53,200	교수학습활동비
2	2014.11.25.	동생 출산선물	47,600	교수학습활동비
3	2015.06.22.	출산선물	33,600	교수학습활동비
합 계			134,400	

조치할 사항

해승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해승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82,740,000
수감기관	해승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연금보험료 납부
관계기관 해승유치원
내 용

해승유치원 원장 ▲▲▲은 2000. 03. 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학교운영지원과-633, 2016.1.18)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에게 권리 이전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승유치원에서는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2012.11.12.부터 현재까지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입한 사실이 있다.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보험명	가입일	월납입보험료	총 납입보험료	비 고
Free재정플랜연금보험 (적립형)	2012.11.12	월 1,970,000원	82,740,000	1,970,000원×42개월

조치할 사항 “시정”

해승유치원장은 **개인연금보험 납입금 82,74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해승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863,900원
수감기관	청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청파유치원
내 용

청파유치원 원장 ☆☆☆는 2002. 05.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파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지역사회 후원금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청파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863,90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청파유치원 원장 ☆☆☆

[붙임] 청파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3.~2014.8.	지역사회후원금	170,000	10,000원×17회
2	2013.12.17.	회식 이동 택시비	8,500	
3	2014.08.13.	교사회식 택시비	6,500	
4	2014.10.29.	교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325,000	
5	2014.11.01.	추첨일 교사 회식 택시비	6,500	
6	2014.12.24.	방학중 출근 택시비	12,000	
7	2014.12.30.	방학중 출근 택시비	7,200	
8	2015.10.24.	부모참여수업후 회식장소 이동 교통비	3,200	
9	2015.10.29.	교직원 독감예방 접종비	325,000	
합 계			863,900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0,384,510원
수감기관	청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청파유치원
내 용

청파유치원 원장 ☆☆☆는 2002. 05.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파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상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하는 등 연말정산 착오 신고함.
(※ 붙임1 연말정산 착오 신고 내역 참조)

2. 근로소득세, 강사세금등을 개인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함.
(※ 붙임2 근로소득세, 강사세금 등 지급 내역 참조)

조치할 사항 “시정”

청파유치원장은 **원장 ☆☆☆외 12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개인 근로소득세 등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10,384,51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청파유치원 원장 ☆☆☆

[붙임 1] 연말정산 착오 신고 내역

연번	성 명	명절상여금 (2015.02.12.)	명절상여금 (2015.09.23.) (2015.09.25.)	급여액 차액 (상여금 제외)	합 계 (추가 신고)
1		200,000	4,046,300		4,246,300
2		200,000	1,386,377		1,586,377
3		200,000	200,000		400,000
4		200,000	100,000		300,000
5		200,000	200,000	79,000	479,000
6		200,000	200,000		400,000
7		200,000			200,000
8		200,000	200,000		400,000
9		200,000	200,000		400,000
10		200,000	200,000		400,000
11			200,000		200,000
12			200,000		200,000
13				-657,375	-657,375
합 계					8,554,302

[붙임 2] 근로소득세, 강사세금 등 지급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7.05.	소득세	2,288,350	
2	2013.07.05.	주민세	228,790	
3	2014.01.28.	강사세금	758,600	
4	2014.02.26.	지방소득세	758,600	
5	2014.03.31.	국고납부 (사업소득 가산세)	23,000	
6	2014.10.16.	지방소득세	589,690	
7	2015.07.13.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5,737,480	
합 계			10,384,510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청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청파유치원
내 용

청파유치원 원장 ☆☆☆는 2002. 05.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다.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파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건명	세금계산서 발급일	지출일	금액(원)
유치원 전등, 전열설비공사	2012.11.12	2014.04.24.	175,000
		2014.05.02.	1,750,000
전기보수공사	2013.11.15.	2014.04.24.	550,000
합 계			2,475,000

3.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2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공통운영비 목록 참조)

4. 2013학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3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청파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청파유치원 원장 ☆☆☆

[붙임 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집행과목
1	2013.06.03.	교사 식사비	34,000	교수학습활동비
2	2013.07.02.	교사 식사비	47,000	교수학습활동비
3	2013.09.03.	교사연수 식비	45,000	교수학습활동비
4	2013.09.04.	교사 식사비	160,000	교수학습활동비
5	2013.09.04.	교사 간식비	32,000	교수학습활동비
6	2013.09.27.	교사 식사비	49,000	교수학습활동비
7	2013.09.27.	교사 식사비	29,000	교수학습활동비
8	2013.09.28.	교사 식사비	26,000	교수학습활동비
9	2013.09.28.	교사 음료수	4,200	교수학습활동비
10	2013.10.01.	교사 야간식사비	40,000	교수학습활동비
11	2013.10.08.	교사간식비	21,700	교수학습활동비
12	2013.10.11.	교사 식사비	56,000	교수학습활동비
13	2013.10.16.	교사야간 간식비	14,000	교수학습활동비
14	2013.10.22.	원장식사비	16,000	교수학습활동비
15	2013.10.22.	지도점검 준비식사비	30,000	교수학습활동비
16	2013.10.22.	교사 식사비	24,000	교수학습활동비
17	2013.10.22.	교사 간식비	16,500	교수학습활동비
18	2013.11.25.	교사야간간식비	17,000	교수학습활동비
19	2013.12.12.	교사야식	56,000	교수학습활동비
20	2013.12.13.	교사야식	83,500	교수학습활동비
21	2013.12.06.	교사결혼축의금	100,000	공통운영비
22	2014.02.06.	교사연수저녁식대	65,000	교수학습활동비
23	2014.02.07.	교사간식비외	103,000	교수학습활동비
24	2014.02.08.	교사연수식대	24,000	교수학습활동비
25	2014.02.10.	교사야근식대	15,000	교수학습활동비
26	2014.02.12.	교사야근식사비	36,000	교수학습활동비
27	2014.02.20.	인천도시공사요금(실지출교사회식비)	375,100	공통운영비
28	2014.04.05.	교사간식비	46,550	복리후생비
29	2014.04.19.	교사식대비	50,000	복리후생비
30	2014.06.11.	교사연수간식비	30,100	교수학습활동비
31	2014.12.19.	학부모운영위원회 간식비	35,600	교수학습활동비
32	2015.06.23.	행사후교사커피간식비	15,000	교수학습활동비
33	2015.10.06.	추석선물 대하구입	750,000	교수학습활동비

34	2015.10.23.	행사준비 교사식대	77,800	교수학습활동비
35	2015.10.24.	부모참여수업시 교사점심식대	45,000	교수학습활동비
36	2015.10.24.	부모참여수업 회식	239,500	교수학습활동비
37	2016.01.29.	행사준비 교사식대	95,300	교수학습활동비
38	2016.02.17.	졸업식준비 교사식대	68,900	교수학습활동비
39	2016.03.01.	오티준비 교사식대	115,800	교수학습활동비
40	2016.03.05.	교사연수식대	13,500	연구비
41	2016.03.05.	교사연수부식비	11,000	연구비
42	2016.03.12.	교사연수간식비	45,000	연구비
43	2016.03.26.	슈크림빵외 교사연수식대	14,750	연구비
44	2016.03.31.	교사연수간식비	26,500	연구비
45	2016.04.23.	행사후 교직원회식비	190,000	교수학습활동비
합 계			3,389,300	

[붙임 2]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공통운영비 목록

연번	지출일자	적 요	금 액(원)	집행과목
1	2013.03.28.	원장 연수비	600,000	교수학습활동비
2	2013.05.06.	원장 연수비	174,700	교수학습활동비
3	2013.09.03.	교사교통비	16,100	교수학습활동비
4	2013.09.03.	교사연수비	60,000	교수학습활동비
5	2013.09.07.	탐큐연수비	44,000	교수학습활동비
6	2013.11.11.	원장 연수비	150,000	교수학습활동비
7	2013.11.19.	석면교육수강료	30,000	교수학습활동비
8	2014.01.08.	원장상담연수비	500,000	교수학습활동비
9	2014.01.19.	유아창의인성연수회 연수비	100,000	교수학습활동비
10	2014.09.23.	원장님연수비	200,000	교수학습활동비
합 계			1,874,800	

[붙임 3]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3년도			20	
	수입	지출	잔액	수입	
특성화활동비	36,720,000	42,166,000	-5,446,000	24,169,080	2
교통비	20,926,000	26,540,000	-5,614,000	34,417,440	3
현장학습비	16,561,000	16,961,500	-400,500	9,719,800	1
급식비	70,883,000	71,050,040	-167,040	56,294,040	6
교재비및재료비	39,130,000	43,599,460	-4,469,460	45,394,955	5
원복비	3,120,000	3,358,000	-238,000	3,153,000	
합 계	187,340,000	203,675,000	-16,335,000	173,148,315	19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4,333,751원
수감기관	솔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솔빛유치원
내 용

솔빛유치원 교사 ★★★는 2013. 03. 01.부터 2013. 05. 15.까지, 원장 ◆◆◆은 2013. 05. 16.부터 2013. 10. 13.일까지, 원장 ○○○은 2013. 11. 06.부터 2014. 03. 31.까지, 원장 □□□는 2014. 04. 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4.11.~2016.2.	개인차량 주유대금	3,509,748	
2	2013.4.~2016.3.	공공요금 연체료 등	472,003	
3	2016.01.25.	학부모 병원 진료비	352,000	
합 계			4,333,751	

붙임 1. 개인차량 주유대금 사용내역
2. 공공요금 연체료 납입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성산유치원장은 <u>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4,333,751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u>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퇴직불문)

① 솔빛유치원 교사 ★★★
② 솔빛유치원 원장 ◆◆◆
③ 솔빛유치원 원장 ○○○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솔빛유치원 원장 □□□

[붙임 1] 솔빛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4.11.17.	주유대금	50,000	
2	2014.11.24.	주유대금	50,000	
3	2014.12.02.	주유대금	50,000	
4	2014.12.06.	주유대금	50,000	
5	2014.12.11.	주유대금	50,000	
6	2014.12.18.	주유대금	60,000	
7	2015.01.06.	주유대금	60,000	
8	2015.01.12.	주유대금	60,000	
9	2015.01.21.	주유대금	50,000	
10	2015.01.28.	주유대금	50,000	
11	2015.02.02.	주유대금	50,000	
12	2015.02.09.	주유대금	50,000	
13	2015.02.16.	주유대금	50,000	
14	2015.03.07.	주유대금	50,000	
15	2015.03.13.	주유대금	50,000	
16	2015.03.19.	주유대금	50,000	
17	2015.03.26.	주유대금	50,000	
18	2015.03.31.	주유대금	50,000	
19	2015.04.06.	주유대금	50,000	
20	2015.04.13.	주유대금	40,000	
21	2015.04.20.	주유대금	50,000	

22	2015.04.27.	주유대금	50,000	
23	2015.04.30.	주유대금	30,000	
24	2015.05.08.	주유대금	50,000	
25	2015.05.12.	주유대금	50,000	
26	2015.05.18.	주유대금	50,000	
27	2015.05.26.	주유대금	50,000	
28	2015.06.01.	주유대금	50,000	
29	2015.06.12.	주유대금	50,000	
30	2015.06.28.	주유대금	50,000	
31	2015.07.02.	주유대금	50,000	
32	2015.07.07.	주유대금	50,000	
33	2015.07.13.	주유대금	50,000	
34	2015.07.20.	주유대금	50,000	
35	2015.07.28.	주유대금	60,000	
36	2015.08.03.	주유대금	50,000	
37	2015.08.11.	주유대금	50,000	
38	2015.08.19.	주유대금	50,000	
39	2015.08.24.	주유대금	50,000	
40	2015.08.31.	주유대금	50,000	
41	2015.09.04.	주유대금	50,000	
42	2015.09.10.	주유대금	50,000	
43	2015.09.14.	주유대금	50,000	
44	2015.09.20.	주유대금	50,000	
45	2015.09.25.	주유대금	50,000	
46	2015.09.30.	주유대금	50,000	
47	2015.10.05.	주유대금	50,000	
48	2015.10.12.	주유대금	50,000	
49	2015.10.16.	주유대금	50,000	
50	2015.10.22.	주유대금	50,000	
51	2015.10.26.	주유대금	50,000	
52	2015.11.02.	주유대금	50,000	
53	2015.11.09.	주유대금	50,000	
54	2015.11.13.	주유대금	49,748	
55	2015.11.17.	주유대금	50,000	
56	2015.11.23.	주유대금	50,000	
57	2015.11.27.	주유대금	50,000	
58	2015.12.02.	주유대금	50,000	
59	2015.12.07.	주유대금	50,000	
60	2015.12.14.	주유대금	50,000	
61	2015.12.21.	주유대금	50,000	
62	2015.12.24.	주유대금	50,000	
63	2015.12.28.	주유대금	50,000	
64	2016.01.07.	주유대금	50,000	

65	2016.01.13.	주유대금	50,000	
66	2016.01.18.	주유대금	50,000	
67	2016.01.25.	주유대금	50,000	
68	2016.02.01.	주유대금	50,000	
69	2016.02.12.	주유대금	50,000	
70	2016.02.25.	주유대금	50,000	
합 계			3,509,748	

[붙임 2] 솔빛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공공요금 연체료)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	전기세	375	
2	2013.04	도시가스	908	
3	2013.04	건강보험	29,580	
4	2013.05	도시가스	9,478	
5	2013.06	건강보험	29,290	
6	2013.07	도시가스	13,095	
7	2013.08	상하수도	4,980	
8	2013.08	건강보험	33,000	
9	2013.09	도시가스	1,855	
10	2013.11	도시가스	628	
11	2013.12	상하수도	4,090	
12	2014.01	건강보험	18,650	
13	2014.02	직장건강보험	15,600	
14	2014.02	고용보험	5,700	
15	2014.02	산재보험	540	
16	2014.02	전기세	10,441	
17	2014.02	사학연금	890	
18	2014.03	건강보험	10,480	
19	2014.04	상하수도	6,740	
20	2014.04	전기세	365	
21	2014.04	도시가스	29,536	
22	2014.05	도시가스	17,909	
23	2014.05	건강보험	14,070	
24	2014.06	건강보험	11,530	
25	2014.06	직장건강보험	460	
26	2014.07	건강보험	11,870	
27	2014.07	직장건강보험	460	

28	2014.08	도시가스	209	
29	2014.08	직장건강보험	2,120	
30	2014.09	건강보험	12,830	
31	2014.09	직장건강보험	1,170	
32	2014.10	건강보험	10,010	
33	2014.10	직장건강보험	1,170	
34	2014.10	상하수도	2,790	
35	2014.10	전기세	11,816	
36	2014.11	상하수도	2,590	
37	2014.11	도시가스	127	
38	2014.12	상하수도	2,380	
39	2014.12	도시가스	176	
40	2014.12	건강보험	12,890	
41	2014.12	고용보험	900	
42	2014.12	산재보험	1,330	
43	2014.12	사학연금	64,230	
44	2015.01	건강보험	7,890	
45	2015.01	도시가스	412	
46	2015.02	직장건강보험	1,170	
47	2015.02	사학연금	800	
48	2015.03	도시가스	5,117	
49	2015.04	상하수도	1,360	
50	2015.04	전기세	12,022	
51	2015.04	도시가스	22,599	
52	2015.05	도시가스	7,177	
53	2015.06	도시가스	2,489	
54	2015.07	도시가스	409	
55	2015.08	도시가스	140	
56	2016.03	사학연금	1,160	
합 계			472,003	

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솔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솔빛유치원
내 용

솔빛유치원 원장 □□□는 2014. 04. 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솔빛유치원장은 **원장 □□□외 11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솔빛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설명절상여금 (2015.02.04.)	여름방학 (2015.07.24.)	추석상여금 (2015.09.24)	겨울방학 (2015.12.24.)	특별상여금 (2015.11.03.) (2015.11.11.) (2015.03.09.) (2015.03.27.)	합 계
					1,400,000	1,4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6,0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800,000	2,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1,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0	1,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6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600,000
합 계						17,800,000

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솔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솔빛유치원
내 용

솔빛유치원 교사 ★★★는 2013. 03. 01.부터 2013. 05. 15.까지, 원장 ◆◆◆은 2013. 05. 16.부터 2013. 10. 13.일까지, 원장 ○○○은 2013. 11. 06.부터 2014. 03. 31.까지, 원장 □□□는 2014. 04. 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2. 공통운영비, 급식비, 교수학습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공통운영비, 급식비, 교수학습활동비,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조치할 사항

해승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퇴직불문)

① 솔빛유치원 교사 ★★★
② 솔빛유치원 원장 ◆◆◆
③ 솔빛유치원 원장 ○○○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솔빛유치원 원장 □□□

[붙임 1] 잘못된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잘못 집행과목	정당 집행과목
1	2015.09.01.	자석철교놀이	17,200	업무추진비	교수학습활동비
2	2015.09.21.	복숭아, 복숭아통조림	190,000	공통운영비	급식비
3	2015.09.22.	도너츠	350,000	공통운영비	급식비
4	2015.10.29.	교사 간담회	259,2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	2015.12.04.	교사 식대	160,500	급식비	업무추진비
6	2016.01.14.	커피믹스	8,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7	2016.01.16.	교원식사	147,000	급식비	업무추진비
8	2016.02.05.	교사간식	21,500	급식비	업무추진비
9	2016.02.22.	커피믹스	33,98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0	2016.03.09.	교사간식	22,700	급식비	공통운영비
11	2016.03.25.	교사야근식대	57,000	급식비	공통운영비
합계			1,267,780		

일련번호	14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7,204,327원
수감기관	솔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연금보험료 납부
관계기관 솔빛유치원
내 용

솔빛유치원 교사 ★★★는 2013. 03. 01.부터 2013. 05. 15.까지, 원장 ◆◆◆은 2013. 05. 16.부터 2013. 10. 13.일까지, 원장 ○○○은 2013. 11. 06.부터 2014. 03. 31.까지, 원장 □□□는 2014. 04. 2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입하였으나, 환급금을 유치원 회계에 납입하지 않음.

보험명	가입일	금액(원)	해약일	비고
현대해상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	2013.5.13.	9,500,000		2014년 12월부터 개인이 보험료 납부
ING생명 (연금보험프리스타일)	2013.7.19.	10,622,597	2015.4.	
ING생명 (연금보험프리스타일)	2013.7.19.	7,081,730	2015.4.	

붙임 보험료 납입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솔빛유치원장은 **보험료 해약환급금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퇴직불문)

① 솔빛유치원 교사 ★★★
② 솔빛유치원 원장 ◆◆◆
③ 솔빛유치원 원장 ○○○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솔빛유치원 원장 □□□

[붙임] 보험료납입내역

보험료(현대해상) 납입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5.13.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2	2013.07.22.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3	2013.07.22.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4	2013.08.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5	2013.09.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6	2013.10.07.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7	2013.11.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8	2013.12.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9	2014.01.06.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0	2014.02.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1	2014.03.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2	2014.04.10.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3	2014.05.07.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4	2014.06.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5	2014.07.07.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6	2014.08.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7	2014.09.2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8	2014.10.27.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19	2014.11.05.	보험료(현대해상)	500,000	
합 계			9,500,000	

보험료(ING생명보험) 납입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7.19.	ING생명보험	2,961,000	
2	2013.07.19.	ING생명보험	1,974,000	
3	2013.08.16.	ING생명보험	2,961,000	
4	2013.08.16.	ING생명보험	1,974,000	
5	2013.09.30.	ING생명보험	2,961,000	
6	2013.09.30.	ING생명보험	1,974,000	
7	2013.10.15.	ING생명보험	2,961,000	
8	2013.10.15.	ING생명보험	1,974,000	
9	2014.01.16.	ING생명보험	3,000,000	
10	2014.01.16.	ING생명보험	2,000,000	
11	2014.02.04.	ING생명보험	2,961,000	
12	2014.02.04.	ING생명보험	1,974,000	
합 계			29,675,000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2016년도 제3,4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2016. 8.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016년도 제3,4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기관명	처분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경고	주의	소계		
다솜유치원	3	2	1	3	1	40,917,341
박문유치원	3	4	2	6	0	3,084,880
지영유치원	4	1	3	4	0	11,875,646
관교유치원	3	1	2	3	0	5,075,568
합 계	13	8	8	16	1	60,953,435

2. 유치원별 지적사항 및 처분(안)

기관명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다솜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차량유지비 18,799,390원, 식재료 및 간식비, 병원진료비 16,930,314원, 기부금 3,375,000원, 공공요금 연체료 275,617원, 번역비외 1,537,020원 등 총 40,917,341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40,917,341원 “경고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주의 요구”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학비 중 340,000,000원을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하고 상환함	“경고 요구” “기관 경고”
박문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1,357,880원, 퇴직교사 전별금 외 1,577,000원, 기부금 150,000원 등 총 3,084,88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3,084,880원 “경고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주의 요구”
	시재 불일치	○ 개인 급여 공제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으로 거래되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시정” “경고 요구”

기관명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지영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개인주유대금 8,628,070원, 휴대전화 사용요금 1,951,890원, 연체금 1,295,686원 등 총 11,875,64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11,875,646원 “경고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연말정산 착오 신고 – 2015년도: 원장 ◆◆◆ 외 9명, 총 2,976,560원	“시정” “주의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세입, 세출 불일치	“주의 요구”
	예산 적립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 없이 적립금을 적립함	“시정” “주의 요구”
관교	예산의 목적외 사용	○ 기부금 1,285,000원, 개인 주유비 3,780,998원, 연체료 9,570원 등 총 5,075,568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시정(회수)” 5,075,568원 “경고 요구”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 교직원 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을 근로소득에 미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함 – 2015년도: 원장 ■■■ 외 15명, 총 7,200,000원	“시정” “주의 요구”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예산 편성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 수익자부담교육비를 세입, 세출 불일치	“시정” “주의 요구”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40,917,341원
수감기관	다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다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차량유지비 등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 주유대금외)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간식 및 식재료외) 사용내역
3.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내역
4. 예산의 목적외(연체료) 사용내역
5. 예산의 목적외(기타)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40,917,341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다솜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 목적외(개인 주유대금외)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07.	유류대(휘발유)	90,000	
2	2013.03.07.	유류대(휘발유)	30,000	
3	2013.03.07.	유류대(휘발유)	139,000	
4	2013.03.07.	유류대(휘발유)	20,000	
5	2013.03.12.	차량충전	44,893	
6	2013.03.15.	유류대(경유)	67,000	
7	2013.03.15.	유류대(휘발유)	50,000	
8	2013.03.15.	유류대(경유)	86,000	
9	2013.03.15.	유류대(휘발유)	50,000	
10	2013.03.15.	유류대(휘발유)	127,632	
11	2013.03.15.	유류대(휘발유)	50,000	
12	2013.03.22.	유류대(휘발유)	140,000	
13	2013.03.22.	유류대(경유)	116,000	
14	2013.03.22.	유류대(휘발유)	150,000	
15	2013.03.27.	유류대(경유)	90,000	
16	2013.04.01.	유류대(휘발유)	60,000	
17	2013.04.01.	유류대(휘발유)	50,000	
18	2013.04.01.	유류대(경유)	120,000	
19	2013.04.03	차량수리	194,800	
20	2013.04.04.	유류대(휘발유)	50,000	
21	2013.04.04.	유류대(휘발유)	10,000	
22	2013.04.04.	유류대(휘발유)	74,893	
23	2013.04.11.	차량충전	45,381	
24	2013.04.11.	유류대(경유)	111,000	
25	2013.04.11.	유류대(경유)	195,000	
26	2013.04.11.	유류대(휘발유)	90,000	
27	2013.04.11.	유류대(휘발유)	90,000	
28	2013.04.11.	차량타이어교체	800,000	

29	2013.04.18.	유류대(휘발유)	90,000	
30	2013.04.25.	유류대(경유)	222,000	
31	2013.04.25.	유류대(휘발유)	50,000	
32	2013.04.25.	유류대(휘발유)	100,000	
33	2013.04.25.	차량수리	395,000	
34	2013.05.11.	유류대(경유)	223,000	
35	2013.05.11.	유류대(경유)	160,000	
36	2013.05.11.	유류대(경유)	80,000	
37	2013.05.16.	유류대(휘발유)	22,000	
38	2013.05.16.	유류대(경유)	60,000	
39	2013.05.16.	유류대(휘발유)	50,000	
40	2013.05.16.	유류대(휘발유)	100,000	
41	2013.05.20.	차량충전	42,897	
42	2013.05.24.	유류대(휘발유)	100,000	
43	2013.05.30.	자동차보험	938,010	
44	2013.06.04.	유류대(휘발유)	100,000	
45	2013.06.04.	유류대(휘발유)	50,000	
46	2013.06.07.	유류대(휘발유)	30,000	
47	2013.06.07.	유류대(휘발유)	50,000	
48	2013.06.07.	유류대(휘발유)	100,000	
49	2013.06.19.	차량충전	42,911	
50	2013.06.24.	차량충전	33,794	
51	2013.06.24.	유류대(휘발유)	100,000	
52	2013.06.24.	타이어교체	400,000	
53	2013.06.25.	자동차세	166,880	
54	2013.06.27.	유류대(휘발유)	20,000	
55	2013.06.27.	유류대(휘발유)	50,000	
56	2013.06.27.	유류대(휘발유)	150,000	
57	2013.07.04.	유류대(휘발유)	10,000	
58	2013.07.04.	유류대(경유)	57,000	

59	2013.07.04.	유류대(휘발유)	100,000	
60	2013.07.04.	유류대(휘발유)	90,000	
61	2013.07.11.	유류대(휘발유)	100,000	
62	2013.07.11.	유류대(휘발유)	121,700	
63	2013.07.18.	유류대(휘발유)	150,000	
64	2013.07.23.	차량충전	43,391	
65	2013.07.25.	유류대(휘발유)	50,000	
66	2013.07.25.	유류대(휘발유)	80,000	
67	2013.08.14.	유류대(휘발유)	20,000	
68	2013.08.14.	유류대(휘발유)	50,000	
69	2013.08.14.	유류대(휘발유)	100,000	
70	2013.08.14.	유류대(휘발유)	20,000	
71	2013.08.21.	차량충전	37,635	
72	2013.08.23.	유류대(휘발유)	20,000	
73	2013.08.23.	유류대(휘발유)	200,000	
74	2013.08.23.	유류대(휘발유)	50,000	
75	2013.08.23.	유류대(휘발유)	50,000	
76	2013.08.23.	유류대(휘발유)	100,000	
77	2013.08.29.	유류대(휘발유)	30,000	
78	2013.08.29.	유류대(휘발유)	100,000	
79	2013.09.05.	유류대(휘발유)	30,000	
80	2013.09.12.	유류대(휘발유)	30,000	
81	2013.09.12.	유류대(휘발유,경유)	200,000	
82	2013.09.13.	차량충전	48,101	
83	2013.09.27.	유류대(휘발유)	20,000	
84	2013.09.27.	유류대(휘발유)	360,436	
85	2013.10.04.	유류대(휘발유)	119,910	
86	2013.10.04.	밧데리교체	30,000	
87	2013.10.10.	유류대(휘발유)	10,000	

88	2013.10.10.	유류대(경유)	131,239	
89	2013.10.10.	유류대(휘발유)	100,000	
90	2013.10.17.	차량충전	42,598	
91	2013.10.17.	유류대(휘발유)	91,000	
92	2013.10.17.	유류대(휘발유)	100,000	
93	2013.10.17.	유류대(휘발유)	30,000	
94	2013.10.24.	유류대(휘발유)	90,000	
95	2013.10.24.	유류대(경유)	57,000	
96	2013.11.11.	유류대(휘발유)	176,409	
97	2013.11.14.	유류대(휘발유)	188,000	
98	2013.11.21.	유류대(휘발유,경유)	279,000	
99	2013.11.28.	가스	47,512	
100	2013.12.05.	유류대(휘발유)	183,605	
101	2013.12.12.	유류대(휘발유)	20,000	
102	2013.12.19.	유류대(휘발유)	53,000	
103	2013.12.19.	유류대(휘발유)	235,060	
104	2013.12.19.	차량수리비	10,000	
105	2013.12.26.	유류대(휘발유)	93,871	
106	2014.01.13.	가스	50,752	
107	2014.01.16.	경유	34,000	
108	2014.01.16.	경유	46,000	
109	2014.01.29.	유류대(휘발유)	30,000	
110	2014.01.29.	유류대(휘발유)	161,880	
111	2014.02.13.	유류대(경유)	52,000	
112	2014.02.13.	유류대(휘발유)	118,807	
113	2014.02.13.	유류대(휘발유)	50,000	
114	2014.02.13.	차량수리비	100,000	
115	2014.02.17.	유류대	45,916	
116	2014.02.12.	유류대(휘발유)	90,000	
117	2014.02.21.	유류대(휘발유)	90,000	

118	2014.02.27.	유류대(휘발유)	109,580	
119	2014.03.10.	차량충전(LPG)	53,616	
120	2014.03.20.	유류대(휘발유)	90,000	
121	2014.03.27.	차량수리 (르노삼성자동차지정)	121,000	
122	2014.04.03.	유류대(휘발유)	90,000	
123	2014.04.10.	유류대(휘발유)	122,692	
124	2014.04.10.	유류대	63,000	
125	2014.04.11.	차량충전(LPG)	43,180	
126	2014.04.15.	워셔액	2,000	
127	2014.04.24.	유류대(휘발유)	10,000	
128	2014.05.08.	유류대(휘발유)	100,000	
129	2014.05.15.	유류대	174,000	
130	2014.05.21.	차량충전(LPG)	48,075	
131	2014.05.22.	휘발유	50,000	
132	2014.06.17.	유류대	50,000	
133	2014.06.26.	유류대(휘발유)	50,000	
134	2014.06.26.	휘발유	50,000	
135	2014.06.26.	휘발유	90,000	
136	2014.06.27.	차량충전(LPG)	43,201	
137	2014.07.10.	휘발유	50,000	
138	2014.08.04.	차량수리	55,000	
139	2014.07.10.	휘발유	50,000	
140	2014.08.04.	주유비	50,000	
141	2014.08.04.	주유비	49,410	
142	2014.08.05.	차량충전(LPG)	41,694	
143	2014.08.14.	휘발유	17,890	
144	2014.08.14.	휘발유	80,000	
145	2014.08.21.	휘발유	70,000	
146	2014.08.21.	휘발유	50,000	

147	2014.08.21.	주유비	62,000	
148	2014.08.28.	주유비	110,110	
149	2014.08.29.	차량수리	40,000	
150	2014.09.03.	차량충전(LPG)	45,195	
151	2014.09.03.	차량충전(LPG)	45,195	
152	2014.09.03.	차량충전(LPG)	45,195	
153	2014.09.11.	휘발유	90,000	
154	2014.09.11.	주유비	73,000	
155	2014.09.11.	주유비	42,000	
156	2014.09.22.	휘발유	70,000	
157	2014.09.22.	휘발유	90,000	
158	2014.09.26.	휘발유	102,175	
159	2014.10.02.	경유	56,320	
160	2014.10.10.	휘발유	50,000	
161	2014.10.23.	휘발유	90,000	
162	2014.10.23.	휘발유	129,949	
163	2014.10.28.	차량충전(LPG)	48,078	
164	2014.10.30.	경유	56,470	
165	2014.11.04.	휘발유	50,000	
166	2014.11.06.	경유	270,000	
167	2014.11.20.	차량수리 (송도현대모터스)	80,000	
168	2014.11.20.	휘발유	50,000	
169	2014.11.20.	경유	61,960	
170	2014.11.27.	부동액	44,440	
171	2014.12.02.	휘발유	70,000	
172	2014.12.04.	휘발유	50,000	
173	2014.12.04.	경유	56,329	
174	2014.12.10.	유치원차량키	32,500	
175	2014.12.14.	휘발유	50,000	
176	2014.12.18.	차량자동문 리모콘	32,500	

177	2014.12.18.	경유	53,650	
178	2014.12.24.	차량충전(LPG)	32,134	
179	2015.01.05.	차량수리(기아오토큐)	10,000	
180	2015.01.06.	휘발유	60,000	
181	2015.01.15.	차량수리 (정재자동차공업사)	120,000	
182	2015.01.15.	경유	57,380	
183	2015.01.15.	휘발유	90,000	
184	2015.01.23.	휘발유	100,000	
185	2015.01.30.	휘발유	30,000	
186	2015.01.30.	휘발유	90,000	
187	2015.02.05.	휘발유	83,822	
188	2015.02.12.	휘발유	56,000	
189	2015.02.17.	휘발유	50,000	
190	2015.02.27.	유류대(영수증없음)	79,000	
191	2015.02.28.	휘발유	50,000	
192	2015.03.16.	경유	56,320	
193	2015.03.27.	주유(휘발유)	50,000	
194	2015.04.02.	주유	91,403	
195	2015.04.22.	경유	56,320	
196	2015.04.30.	주유	50,000	
197	2015.05.15.	주유	56,320	
198	2015.06.02.	주유비	60,000	
199	2015.06.10.	주유비	56,325	
200	2015.07.04.	주유비	62,000	
201	2015.08.05.	출장비(주유비)	50,000	
202	2015.08.26.	주유비	44,000	
203	2015.09.03.	주유비	56,330	
204	2015.09.07.	주유비	73,000	

205	2015.09.14.	경유	56,320	
206	2015.10.08.	주유비	69,000	
207	2015.10.21.	경유	52,869	
208	2015.11.04.	주유비	56,330	
209	2015.12.01.	주유비	73,000	
210	2015.12.23.	주유비	30,000	
211	2016.01.04.	주유비	50,000	
212	2016.01.27.	경유	53,200	
213	2016.2.17.	주유비(휘발유)	62,000	
214	2016.03.02.	유류대(휘발유)	50,000	
215	2016.03.11.	유류대(경유)	20,000	
216	2016.03.11.	유류대(휘발유)	20,000	
217	2016.03.16.	유류대(휘발유)	70,000	
218	2016.04.06.	유류대(경유)	51,000	
219	2016.04.12.	유류대(휘발유)	50,000	
220	2016.04.20.	유류대(휘발유)	50,000	
합 계			18,799,390	

[붙임 2] 예산의 목적외(간식 및 식재료 외) 사용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05.	풋고추외	16,070	
2	2013.03.05.	잡곡	64,000	
3	2013.03.07.	콩나물외	24,090	
4	2013.03.07.	단무지외	85,560	
5	2013.03.07.	과자	1,900	
6	2013.03.07.	빵	25,000	
7	2013.03.07.	생선외	32,660	
8	2013.03.07.	너구리라면	3,400	
9	2013.03.07.	애호박외	43,000	
10	2013.03.07.	찰옥수수	9,000	
11	2013.03.15.	병원진료비(한의원)	20,300	
12	2013.03.15.	병원진료비(한의원)	18,300	
13	2013.04.04.	마요네즈	9,500	
14	2013.04.04.	밥솥	85,000	
15	2013.04.04.	바나나우유외	49,140	
16	2013.04.04.	바나나외	125,730	
17	2013.04.24.	토스트빵외	33,590	
18	2013.04.25.	병원진료비(한의원)	12,200	
19	2013.04.25.	약품대	107,000	
20	2013.04.25.	양배추외	51,060	
21	2013.04.25.	빵외	21,910	
22	2013.04.25.	깐마늘외	35,270	
23	2013.05.11.	정육	13,700	
24	2013.05.11.	상추외	18,990	
25	2013.06.15.	아이스크림외	80,130	
26	2013.06.24.	라면	3,400	
27	2013.06.24.	우유외	26,480	
28	2013.08.23.	새우깡외	80,180	
29	2013.09.05.	고등어외	65,000	
30	2013.09.12.	유부초밥외	11,560	
31	2013.09.12.	진미오징어외	66,460	

32	2013.09.12.	바디워시외	42,200	
33	2013.09.12.	교사간식외	64,910	
34	2013.09.27.	스팸외	210,000	
35	2013.10.04.	병원진료비	4,200	
36	2013.10.04.	처방약제	4,100	
37	2013.10.10.	구이김외	33,260	
38	2013.10.17.	치료비	57,000	
39	2013.10.17.	양지외	20,400	
40	2013.10.17.	단감외	63,650	
41	2013.10.17.	부식자재	114,445	
42	2013.10.17.	교직원식자재	60,540	
43	2013.10.22.	병원진료비	9,600	
44	2013.10.24.	쌈채류외	30,770	
45	2013.10.24.	상추외	22,620	
46	2013.11.11.	교사간식	85,570	
47	2013.11.11.	교사간식	15,280	
48	2013.11.14.	교사급식재료	60,960	
49	2013.11.14.	올리브외	37,320	
50	2013.11.14.	두부외	19,930	
51	2013.11.21.	치료비	10,600	
52	2013.11.21.	교사간식	52,030	
53	2013.11.21.	물품대	60,000	
54	2013.11.21.	물품대	20,000	
55	2013.11.25.	교구구입	450,000	
56	2013.11.28.	치료비	4,500	
57	2013.11.28.	치료비	1,200	
58	2013.11.28.	숙녀용장우산	3,000	
59	2013.11.28.	아침돌보미간식	79,970	여성무직5족등
60	2013.12.05.	간장외	24,700	
61	2013.12.05.	세제외	77,700	
62	2013.12.05.	삼겹살외	26,100	
63	2013.12.05.	교사간식	43,320	
64	2013.12.05.	부식재료	90,380	

65	2013.12.12.	교사간식	60,040	
66	2013.12.12.	교사간식	20,960	
67	2013.12.19.	쌀	20,000	
68	2013.12.19.	교사간식	58,830	
69	2013.12.26.	교사간식	82,500	
70	2014.01.16.	간식/귤	39,170	
71	2014.01.16.	우유외	62,950	
72	2014.01.16.	유정란외	50,390	
73	2014.01.17.	스카시외(쌀포함)	204,590	
74	2014.01.17.	교사식대	36,200	
75	2014.01.23.	치과치료비	8,000	
76	2014.01.23.	치료비	10,900	
77	2014.02.06.	치료비	12,000	
78	2014.02.06.	교사간식	42,040	
79	2014.02.11.	부식자재	33,040	
80	2014.02.13.	삼겹살외	16,300	
81	2014.02.13.	교사간식	4,900	
82	2014.02.15.	방과후간식	28,800	
83	2014.02.21.	방울토마토외	59,690	
84	2014.02.21.	돈목살외	12,600	
85	2014.02.21.	교사간식	53,920	
86	2014.02.27.	교사간식	12,000	
87	2014.02.27.	교사식자재외	107,900	
88	2014.02.27.	교사 식자재외	93,980	
89	2014.02.27.	식빵	2,500	
90	2014.02.27.	오랜지외	38,500	
91	2014.03.10.	볶음용멸치외	51,300	
92	2014.03.10.	하우스밀감외	26,020	
93	2014.03.10.	우유외	15,410	
94	2014.03.20.	포카칩외	10,880	
95	2014.03.20.	정육	15,300	
96	2014.03.20.	교사간식	3,600	
97	2014.03.20.	자반고등어외	72,900	

98	2014.03.20.	저지방우유외	24,370	
99	2014.03.27.	베이컨외	55,990	
100	2014.03.27.	우유외	104,980	
101	2014.03.27.	삼겹살외	31,510	
102	2014.04.03.	천혜향외	76,460	
103	2014.04.03.	정육	59,390	
104	2014.04.03.	교사식재료/고등어자반외	38,960	
105	2014.04.03.	필통외(부채살외)	85,970	
106	2014.04.03.	쫄면외	82,140	
107	2014.04.10.	자른미역외	86,170	
108	2014.04.10.	포도외	82,810	
109	2014.04.18.	정육	26,140	
110	2014.04.18.	고등어살외	108,940	
111	2014.04.24.	정육	35,110	
112	2014.04.24.	라면 외	29,730	
113	2014.05.01.	우유 외	27,180	
114	2014.05.01.	정육 외	37,740	
115	2014.05.01.	유정란 외	74,460	
116	2014.05.01.	시금치 외	40,810	
117	2014.05.08.	시금치 외	17,600	
118	2014.05.08.	스파게티 외	67,940	
119	2014.05.15.	곡물시빵외	70,310	
120	2014.05.22.	우유외	15,180	
121	2014.05.22.	참치캔외외	104,620	
122	2014.05.29.	교사식대	147,000	
123	2014.05.29.	병원치료비	25,900	
124	2014.05.29.	정육	16,900	
125	2014.05.29.	라면외	16,810	
126	2014.05.29.	고등어살외	83,000	
127	2014.05.29.	피자치즈외	11,690	
128	2014.05.29.	정육	13,100	
129	2014.06.05.	연어외	18,890	
130	2014.06.05.	수박외	62,200	

131	2014.06.05.	교사간식(와작)	12,600	
132	2014.06.05.	식빵외	54,670	
133	2014.06.05.	라면외	26,780	
134	2014.06.05.	정육	33,469	
135	2014.06.17.	돈까스소스외	9,450	
136	2014.06.17.	아이스티외	3,190	
137	2014.06.17.	깻잎외	62,010	
138	2014.06.17.	송곳외	5,400	
139	2014.06.17.	상추외	52,370	
140	2014.06.17.	콩나물외	8,140	
141	2014.06.17.	참외외(김자반)	15,370	
142	2014.06.19.	교사식대	12,500	
143	2014.06.19.	양배추외	48,040	
144	2014.06.19.	두부부침외	67,140	
145	2014.06.26.	교사식재료외	46,180	
146	2014.06.26.	칠리소스외	70,700	
147	2014.07.10.	식대	9,500	
148	2014.07.10.	식대	14,700	
149	2014.07.10.	참외외(문학)	10,290	
150	2014.07.10.	차렵이불외	56,970	
151	2014.07.10.	에어건외	65,100	
152	2014.07.17.	부추외	9,510	
153	2014.07.17.	국물용멸치외	65,820	
154	2014.07.17.	방울토마토외	27,040	
155	2014.08.04.	회식대	165,100	
156	2014.08.04.	병원치료비	2,100	
157	2014.08.04.	교사식대	16,000	
158	2014.08.04.	화장지외	25,000	
159	2014.08.04.	올리고당외	29,330	
160	2014.08.04.	핫도그외	16,100	
161	2014.08.04.	김자반외	53,460	
162	2014.08.04.	아이스크림외	78,640	
163	2014.08.04.	포도맛외	124,610	

164	2014.08.14.	치즈외	73,740	
165	2014.08.14.	우유외	35,730	
166	2014.08.18.	양산(뉴코아)	10,000	
167	2014.08.21.	정육(일, 연수구)	20,000	
168	2014.08.21.	정육	17,500	
169	2014.08.21.	정육	23,300	
170	2014.08.21.	바나나외	91,000	
171	2014.08.21.	치즈외	53,070	
172	2014.08.21.	공사시 인부식대	224,200	
173	2014.08.21.	식대	9,000	
174	2014.08.21.	정육(연수구)	8,800	
175	2014.08.21.	거봉외	25,800	
176	2014.08.21.	교사간식 (스파케티소스외)	19,150	
177	2014.08.21.	카레라면외	59,320	
178	2014.08.28.	부추외	96,480	
179	2014.09.11.	정육	12,100	
180	2014.09.11.	숙주나물외	66,080	
181	2014.09.11.	튀김가루외	59,940	
182	2014.09.11.	당근외	75,310	
183	2014.09.22.	식대	16,000	
184	2014.09.22.	정육	14,700	
185	2014.09.22.	라면외	23,780	
186	2014.09.22.	우동외	71,390	
187	2014.09.22.	북어채외	21,630	
188	2014.09.22.	정육	13,000	
189	2014.09.22.	양파외	90,490	
190	2014.09.26.	다대기오이외	15,950	
191	2014.10.02.	정육	20,000	
192	2014.10.02.	교사간식	20,000	
193	2014.10.02.	오이맛고추	87,380	
194	2014.10.10.	정육	16,150	
195	2014.10.10.	교사간식	12,800	

196	2014.10.10.	커피외	52,290	
197	2014.10.10.	교사간식	22,340	
198	2014.10.10.	키친타올외	170,540	
199	2014.10.23.	식대	12,000	
200	2014.10.23.	정육	12,700	
201	2014.10.23.	정육	13,600	
202	2014.10.23.	홍시외	55,120	
203	2014.10.23.	정육외(이마트)	91,590	
204	2014.10.23.	귀리쌀외(토)	30,000	
205	2014.10.23.	요플레외(토)	18,790	
206	2014.10.23.	주전자외	36,180	
207	2014.10.23.	김밥햄외	35,370	
208	2014.10.23.	거봉포도	42,290	
209	2014.10.23.	식대	39,600	
210	2014.10.24.	식대	50,000	
211	2014.10.30.	우유외	20,610	
212	2014.10.30.	참느타리버섯외	89,370	
213	2014.10.30.	골드키위외	30,130	
214	2014.10.30.	모나카	14,400	
215	2014.11.06.	병원치료비	6,400	
216	2014.11.06.	정육외	124,930	
217	2014.11.06.	슬라이스햄외	16,390	
218	2014.11.06.	화장지외	55,140	
219	2014.11.20.	자두외	33,970	
220	2014.11.20.	양파외	37,380	
221	2014.11.20.	흙대파외	78,520	
222	2014.11.20.	식대	12,000	
223	2014.11.20.	정육	12,000	
224	2014.11.20.	식대	8,000	
225	2014.11.20.	식대	78,000	
226	2014.11.20.	병원진료비	7,600	
227	2014.11.20.	햇당근외	22,050	
228	2014.11.20.	깐마늘외	75,370	

229	2014.11.20.	시금치외	14,560	
230	2014.12.04.	부침두부외	27,100	
231	2014.12.04.	브로커리외	27,250	
232	2014.12.04.	달걀외	89,230	
233	2014.12.14.	베지밀외	1,800	
234	2014.12.14.	흙대파외	83,470	
235	2014.12.14.	찹쌀도넛외	4,800	
236	2014.12.18.	식대	9,800	
237	2014.12.18.	콩나물외	58,270	
238	2014.12.18.	현미외	87,440	
239	2014.12.22.	간장외	22,380	
240	2015.01.06.	식대	12,000	
241	2015.01.15.	교사간식	17,800	
242	2015.01.15.	스마트폰수리비	26,500	
243	2015.01.15.	간장외	22,380	
244	2015.01.15.	교사간식	4,700	
245	2015.01.15.	정육	11,000	
246	2015.01.15.	식대	38,000	
247	2015.01.15.	애호박외	82,850	
248	2015.01.15.	고등어살외	66,230	
249	2015.01.15.	오이맛고추외	64,420	
250	2015.01.15.	오렌지쥬스외	35,050	
251	2015.01.15.	초코소라빵외	7,500	
252	2015.01.15.	부침두부외	25,730	
253	2015.01.15.	잡회(삼성svc-501)	23,000	
254	2015.01.23.	콩나물외	78,170	
255	2015.01.23.	주방용품	81,990	
256	2015.01.23.	베이킹소다(일산)	9,290	
257	2015.01.30.	정육	11,100	
258	2015.01.30.	슈크림빵외	5,600	
259	2015.01.30.	햇반외	29,250	
260	2015.01.30.	부산어묵외	105,100	
261	2015.02.05.	교사간식	19,500	

262	2015.02.05.	우유외	5,230	
263	2015.02.05.	브로커리외	30,330	
264	2015.02.16.	식대	14,000	
265	2015.02.17.	식대	165,000	
266	2015.02.17.	둥글레차외	50,490	
267	2015.02.23.	식대	27,000	
268	2015.02.28.	식대	103,600	
269	2015.02.28.	식대	77,000	
270	2015.02.28.	부식대	87,020	
271	2015.02.28.	돈안심	10,900	
272	2015.02.28.	콩나물외	13,100	
273	2015.02.28.	바나나외	20,010	
274	2015.02.28.	한우외	19,050	
275	2015.02.28.	감자외	107,600	
276	2015.03.16.	김말이외	98,400	
277	2015.03.16.	게장외	89,080	
278	2015.03.16.	문구	20,000	
279	2015.03.16.	월드콘외	37,570	
280	2015.04.02.	삼겹살외	68,400	
281	2015.04.03.	토마토외	68,180	
282	2015.04.03.	우유외	13,880	
283	2015.04.15	대파외	2,200	
284	2015.04.15.	비엔나외	66,890	
285	2015.04.15.	감자외	96,880	
286	2015.04.22.	토마토외	46,610	
287	2015.04.28.	슈퍼	48,800	
288	2015.04.29.	삼겹살	15,400	
289	2015.04.29.	통행료	6,000	
290	2015.04.29.	스팸외	113,060	
291	2015.04.29.	애호박외	82,480	
292	2015.05.06.	참기름	2,800	
293	2015.05.06.	고구마외	25,780	
294	2015.05.14.	용가리치킨외	88,350	

295	2015.05.14.	샘물외	8,970	
296	2015.05.14	미숫가루외	17,800	
297	2015.05.20.	정육외	48,880	
298	2015.05.20.	삼겹살	29,900	
299	2015.05.20.	정육	18,800	
300	2015.05.20.	고데기외	62,830	
301	2015.05.20.	파워오투외	11,200	
302	2015.05.20.	꼬칼콘외	90,950	
303	2015.05.27	빵외	22,270	
304	2015.05.27	변기시트외	82,300	
305	2015.06.10.	우유외	5,600	
306	2015.06.10.	가지외	4,980	
307	2015.06.10.	고기	14,800	
308	2015.06.10.	물냉면외	40,050	
309	2015.06.10.	감자외	21,620	
310	2015.06.17.	정육	27,000	
311	2015.06.17.	모듬쌈외	75,020	
312	2015.07.07.	우유외	10,250	
313	2015.07.07.	우유외	51,100	
314	2015.07.07.	우유식빵외	9,470	
315	2015.07.07.	비비고왕교자외	79,020	
316	2015.07.07.	흑미외	81,480	
317	2015.07.07.	한우안심외	43,600	
318	2015.07.07.	크림샌드외	28,940	
319	2015.07.07.	스파게티소스외	63,010	
320	2015.07.07.	우유외	8,480	
321	2015.07.08.	쌀외	64,290	
322	2015.07.08.	크린베리외	13,430	
323	2015.07.16.	차량수리	125,000	
324	2015.07.16	파외	44,460	
325	2015.08.26	소면	7,990	
326	2015.08.26.	망고외	9,380	
327	2015.08.26.	우유	3,580	

328	2015.08.26.	수박외	18,480	
329	2015.08.26.	우유외	20,540	
330	2015.08.26.	두부외	10,000	
331	2015.09.03.	어묵외	106,270	
332	2015.09.03.	과일외	26,860	
333	2015.09.03.	문구류	7,800	
334	2015.09.03.	우유외	68,170	
335	2015.09.14.	밀가루외	8,580	
336	2015.09.14.	검정콩선식외	114,230	
337	2015.09.14.	대파외	27,400	
338	2015.09.14.	콩나물외	53,610	
339	2015.09.24.	오징어땅콩외	13,640	
340	2015.10.07.	쌀외	109,980	
341	2015.10.07.	현미외	8,500	
342	2015.10.08.	수박	6,500	
343	2015.10.17.	물품대	13,440	
344	2015.10.21.	과자외	17,940	
345	2015.10.21.	피죤외	16,520	
346	2015.10.21.	우유외	71,710	
347	2015.10.21.	스티커북외	115,670	
348	2015.10.21.	정육	25,100	
349	2015.10.21.	오징어외	170,910	
350	2015.10.21.	마늘외	38,070	
351	2015.10.21.	화장지외	49,660	
352	2015.10.28.	정육	29,800	
353	2015.10.28.	김밥	20,000	
354	2015.10.28.	정육	8,000	
355	2015.10.28.	우동외	47,900	
356	2015.10.28.	감귤외	80,250	
357	2015.10.28.	치즈외	34,350	
358	2015.10.28.	토마토	3,080	
359	2015.11.04.	돈가스외	120,600	
360	2015.11.18.	정육	24,000	

361	2015.11.18.	정육	36,790	
362	2015.11.18.	정육	53,000	
363	2015.11.18.	만두외	40,220	
364	2015.12.23.	쥬스외	25,740	
365	2016.01.27.	쌀외	151,670	
366	2016.01.27.	방울토마토외	32,380	
367	2016.03.08.	고등어	34,000	
368	2016.03.08.	바나나	38,000	
369	2016.03.08.	우유	5,200	
370	2016.03.08.	오이외	2,830	
371	2016.03.11.	건어물	19,000	
372	2016.03.11.	콩나물외	61,980	
373	2016.03.16.	바나나	38,000	
374	2016.03.24.	사과	36,000	
375	2016.03.25.	병원비	5,100	
376	2016.04.06.	숙주나물외	18,370	
377	2016.04.06.	설탕외	38,010	
378	2016.04.06.	식수외	127,980	
379	2016.04.09.	물품대	90,000	
380	2016.04.12.	호박외	44,000	
합 계			16,930,314	

[붙임 3] 예산 목적외(기부금)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11.	기부금	85,000	
2	2013.04.10.	기부금	85,000	
3	2013.05.10.	기부금	85,000	
4	2013.06.10.	기부금	85,000	
5	2013.07.10.	기부금	85,000	
6	2013.08.12.	기부금	85,000	
7	2013.09.10.	기부금	85,000	
8	2013.10.10.	기부금	85,000	
9	2013.11.11.	기부금	85,000	
10	2013.12.10.	기부금	85,000	
11	2013.01.10.	기부금	85,000	
12	2013.02.10.	기부금	85,000	
13	2014.03.10.	기부금	85,000	
14	2014.04.10.	기부금	85,000	
15	2014.05.12.	기부금	85,000	
16	2014.06.10.	기부금	85,000	
17	2014.07.10.	기부금	85,000	
18	2014.08.11.	기부금	85,000	
19	2014.09.11.	기부금	85,000	
20	2014.10.10.	기부금	85,000	
21	2014.11.10.	기부금	85,000	
22	2014.12.10.	기부금	85,000	
23	2015.01.12.	기부금	85,000	
24	2015.02.10.	기부금	85,000	
25	2015.03.10.	기부금	85,000	
26	2015.04.10.	기부금	85,000	
27	2015.05.11.	기부금	85,000	
28	2015.06.10.	기부금	85,000	
29	2015.07.08.	기부금	60,000	
30	2015.07.10.	기부금	85,000	
31	2015.08.10.	기부금	85,000	
32	2015.09.10.	기부금	85,000	
33	2015.10.12.	기부금	85,000	
34	2015.11.10.	기부금	85,000	
35	2015.12.10.	기부금	85,000	
36	2016.01.11.	기부금	85,000	
37	2016.02.11.	기부금	85,000	
38	2016.03.10.	기부금	85,000	
39	2016.04.11.	기부금	85,000	
40	2016.05.10.	기부금	85,000	
합계			3,375,000	

[붙임 4] 예산 목적외(연체료) 지출 목록

연번	지출월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	건강보험	19,540	
2	2013.05	도시가스	2,215	
3	2013.05	사학연금	4,410	
4	2013.05	사학연금	940	
5	2013.06	사학연금	920	
6	2013.06	건강보험	11,850	
7	2013.08	사학연금	890	
8	2013.10	사학연금	910	
9	2014.02	사학연금	1,330	
10	2014.04	상하수도	780	
11	2014.05	사학연금	1,260	
12	2014.11	사학연금	1,490	
13	2015.03	사학연금	2,330	
14	2015.03	사학연금	2,270	
15	2015.04	사학연금	1,130	
16	2015.07	사학연금	7,480	
17	2015.07	소득세	5,610	
18	2015.08	도시가스	372	
19	2015.08	사학연금	4,980	
20	2015.09	상하수도	1,330	
21	2015.09	국민연금	3,810	
22	2015.09	사학연금	15,980	
23	2015.10	사학연금	8,430	
24	2015.10	산재보험	1,050	
25	2015.11	국민연금	4,580	
26	2015.11	사학연금	7,030	
27	2015.12	국민연금	8,630	
28	2015.12	사학연금	4,320	
29	2015.12	건강보험	2,330	
30	2015.12	산재보험	3,180	
31	2015.12	고용보험	5,450	
32	2016.01	상하수도	1,190	

33	2016.01	국민연금	11,500	
34	2016.01	자동차세	3,440	
35	2016.01	사학연금	4,210	
36	2016.01	산재보험	1,310	
37	2016.01	고용보험	2,600	
38	2016.02	상하수도	1,110	
39	2016.02	국민연금	8,630	
40	2016.02	사학연금	12,650	
41	2016.02	건강보험	28,250	
42	2016.03	사학연금	9,530	
43	2016.03	사학연금	11,120	
44	2016.03	건강보험	1,800	
45	2016.03	산재보험	2,960	
46	2016.03	고용보험	6,060	
47	2016.04	산재보험	1,480	
48	2016.04	고용보험	2,090	
49	2016.06	건강보험	18,170	
50	2016.06	사학연금	10,690	
합 계			275,617	

[붙임 5] 예산 목적외(기타)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4.09.11.	유치원차량신청	600,000	이중출금
2	2014.12.04.	번역	65,000	
3	2014.12.04.	우편요금(베트남)	14,100	
4	2014.12.05.	우편요금(내역없음)	33,720	
5	2015.02.05.	우편요금(미국)	100,500	
6	2015.02.24.	업무추진비	250,000	과지급
7	2015.03.19.	인천번역	15,000	
8	2015.03.16.	등기(미국)	108,700	
9	2015.04.30.	개업선물	50,000	
10	2015.05.08.	방수계약금	300,000	계약금 지급하고 미시공
합 계			1,537,020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다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다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다솜유치원 원장 ★★★

[붙임]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3~2014.2	교직원 식대 및 간식비	2,086,895	공통운영비
2	2014.3~2015.2	교직원 식대 및 간식비	14,816,868	공통운영비
3	2015.3~2016.2	교직원 식대 및 간식비	2,728,607	공통운영비
4	2016.3~2016.5	교직원 식대 및 간식비	327,400	공통운영비
합계			19,959,77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다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 요구, 기관 경고

제 목 유치원 회계 차입금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다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하며 차입금 허가를 위하여 ①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설립자 차입 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학비 중 340,000,000원을 관할청의 승인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다.

붙임 차입금 입·출금 현황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다솜유치원 원장 ★★★

“기관 경고”

[붙임] 차입금 입·출금 현황

연번	일시	교육청지원금	차입금	상환액
1	2013.04.01.	94,796,300		
2	2013.04.24.		−40,000,000	
3	2013.05.24.			35,000,000
4	2013.06.25.	171,807,260		
5	2013.06.25.			20,000,000
6	2013.06.25.		−20,000,000	
7	2013.06.28.		−25,000,000	
8	2013.07.02.			25,000,000
9	2013.07.03.		−105,000,000	
10	2013.07.23.			5,000,000
11	2013.07.25.			25,000,000
12	2013.08.01.			5,000,000
13	2013.08.23.			30,000,000
14	2013.09.30.	135,669,400		
15	2013.10.10.		−40,000,000	
16	2013.10.25.			40,000,000
17	2013.11.06.		−80,000,000	
18	2013.11.08.			80,000,000
19	2013.11.22.		−30,000,000	
20	2013.12.23.			20,000,000
21	2013.12.24.	8,500,000		
22	2013.12.26.			20,000,000
23	2014.01.15.	62,020,960		
24	2014.01.24.	62,020,970		
25	2014.02.15.			33,000,000
26	2014.02.26.			2,000,000
합계		534,814,890	−340,000,000	340,000,000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3,084,880원
수감기관	박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박문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0.3.1.부터 2014.09.01.까지 원장 ▲▲▲은 2014.09.02.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 휴대전화)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전별금외) 사용내역
3.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3,084,88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박문유치원 원장 ◇◇◇(현, 계성유치원)

② 박문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150	
2	2013.04.22.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3	2013.05.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680	
4	2013.06.19.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5	2013.07.22.	휴대전화 사용요금	100,590	
6	2013.08.21.	휴대전화 사용요금	81,650	
7	2013.09.23.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8	2013.10.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9	2013.11.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0	2013.12.23.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1	2014.01.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2	2014.02.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3	2014.03.20.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4	2014.04.20.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5	2014.05.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6	2014.06.23.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17	2014.07.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8,370	
합계			1,357,880	

[붙임 2] 예산의 목적외(전별금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10.17.	축의금 (AA컴퓨터)	100,000	
2	2015.02.16.	퇴직교사 전별금	300,000	
3	2015.02.16.	퇴직교사 전별선물	215,000	
4	2015.03.27.	퇴직전별금	300,000	
5	2015.12.23.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32,000	
6	2016.02.11.	퇴직교사 선물	230,000	
7	2016.02.16.	퇴직교사 전별금	400,000	
합계			1,577,000	

[붙임 3]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4.07.25.	월드비전 기부금	25,000	
2	2014.08.25.	월드비전 기부금	25,000	
3	2014.09.25.	월드비전 기부금	20,000	
4	2014.10.27.	월드비전 기부금	20,000	
5	2014.11.25.	월드비전 기부금	20,000	
6	2014.12.26.	월드비전 기부금	20,000	
7	2015.01.26.	월드비전 기부금	20,000	
합계			150,000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박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박문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0.3.1.부터 2014.09.01.까지 원장 ▲▲▲은 2014.09.02.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박문유치원 원장 ◇◇◇(현, 계성유치원)

② 박문유치원 원장 ▲▲▲

[붙임 1]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06.27.	교촌치킨	115,000	공통운영비
2	2013.07.08.	탕수육외	63,000	공통운영비
3	2014.03.24.	찬누리 닭강정	48,000	공통운영비
4	2014.03.06.	맥심커피믹스외	58,870	공통운영비
5	2014.03.06.	입학식 식대	203,000	교수학습활동비
6	2014.04.07.	찬누리 닭강정	96,000	공통운영비
7	2014.04.10.	야채치킨	45,000	공통운영비
8	2014.04.10.	올찬김밥	24,000	공통운영비
9	2014.04.17.	아구찜	180,000	공통운영비
10	2014.04.20.	4월 휴대전화 사용요금	300,000	효도휴가비
11	2014.04.21.	화과자	48,000	공통운영비
12	2014.04.28.	닭강정	96,000	공통운영비
13	2014.04.20.	교사야간간식비	17,000	공통운영비
14	2014.05.02.	떡볶이외	26,000	공통운영비
15	2014.05.23.	김밥, 닭찜	61,500	공통운영비
16	2014.05.30.	헛개음료	53,100	공통운영비
17	2014.06.03.	야채치킨	45,000	공통운영비
18	2014.06.18.	참치김밥외	59,000	공통운영비
19	2014.06.19.	명동보리밥	136,000	공통운영비
20	2014.07.10.	교원야근 식대, 중식대외	74,000	공통운영비
21	2014.07.11.	팥빙수, 쉬폰케익 교원간식	59,000	공통운영비
22	2014.07.17.	뼈다귀 해장국외	60,000	공통운영비
23	2014.07.24.	도라지차외	90,000	공통운영비
24	2014.07.24.	요런떡볶이외	11,000	공통운영비
25	2014.07.30.	제과빵 구입	28,600	공통운영비
26	2014.07.30.	명동보리밥	21,000	공통운영비
27	2014.07.31.	김밥외	25,000	공통운영비
28	2014.07.31.	순두부 찌개외	45,000	공통운영비
29	2014.07.31.	백반4인분	24,000	공통운영비
30	2014.08.04.	팥빙수	21,000	공통운영비

31	2014.08.13.	교직원식대	521,730	공통운영비
32	2014.09.19.	매콤닭강정외	23,840	공통운영비
33	2014.09.25.	농심 신라면	7,000	급식비
34	2014.10.07.	식빵외 교원간식	12,000	공통운영비
35	2014.10.11.	청기와 뼈다귀 해장국	111,000	공통운영비
36	2014.10.16.	어묵외(신라면외)	41,510	급식비
37	2014.11.06.	참치김밥외	24,500	공통운영비
38	2014.11.14.	명동보리밥	73,000	공통운영비
39	2014.11.20.	맥도날드 햄버거	41,700	공통운영비
40	2014.11.21.	족발	68,000	공통운영비
41	2014.11.26.	김밥외	39,000	공통운영비
42	2014.12.03.	굽네치킨	16,000	공통운영비
43	2014.12.06.	상하이스파이시치킨버거 외	54,000	공통운영비
44	2014.12.09.	탕수육외	49,500	공통운영비
45	2014.12.12.	자장면외	46,500	공통운영비
46	2014.12.17.	올찬김밥	52,500	공통운영비
47	2014.12.22.	바닐라라떼외	38,100	공통운영비
48	2015.01.14.	삼선짬뽕	21,000	공통운영비
49	2015.02.05.	교촌치킨	35,000	공통운영비
50	2015.02.11.	싸이버거외	31,600	공통운영비
51	2015.02.23.	삼선짬뽕외	45,500	공통운영비
52	2015.02.25.	싸이버거외	40,800	공통운영비
1	2015.03.12.	싸이버거	54,800	공통운영비
2	2015.04.13.	싸이버거	35,400	공통운영비
3	2015.04.29.	초코케익	15,000	공통운영비
4	2015.05.07.	교촌치킨	52,000	공통운영비
5	2015.05.21.	제과빵 구입	10,300	공통운영비
6	2015.05.21.	떡볶이 외	24,000	공통운영비
7	2015.06.01.	도미노피자	64,800	공통운영비
8	2015.06.02.	커피외	73,610	공통운영비
9	2015.06.02.	쵸코케익	15,000	공통운영비
10	2015.06.02.	자장면	21,000	공통운영비
11	2015.06.09.	닭강정	27,000	공통운영비

12	2015.06.19.	띠아모커피	70,300	공통운영비
13	2015.06.22.	오징어튀김외	13,800	공통운영비
14	2015.07.10.	빵구입	22,200	공통운영비
15	2015.07.16.	보쌈(교원간식)	65,000	공통운영비
16	2015.08.12.	케익	19,000	공통운영비
17	2015.08.12.	샌드위치구입	50,000	공통운영비
18	2015.09.01.	스팸김밥외	38,000	공통운영비
19	2015.09.04.	도미노피자	59,400	공통운영비
20	2015.09.08.	몽쉘통통외	48,770	공통운영비
21	2015.09.17.	교직원간식	69,200	공통운영비
22	2015.09.30.	조각케익외	43,500	공통운영비
23	2015.10.02.	교직원간식(치킨)	34,000	공통운영비
24	2015.10.05.	교직원간식(햄버거)	38,800	공통운영비
25	2015.10.18.	교직원회식	196,000	교수학습활동비
26	2015.11.10.	싸이버거	33,900	공통운영비
27	2015.11.10.	커피외	31,400	공통운영비
28	2015.11.20.	샌드위치	42,500	공통운영비
29	2015.11.27.	커피외	178,290	공통운영비
30	2015.12.16.	싸이버거외	95,400	공통운영비
31	2015.12.23.	프렌치빌 케익외	46,000	공통운영비
32	2015.12.30.	교직원직원간식	28,800	공통운영비
33	2016.02.25.	커피외	44,100	공통운영비
34	2016.02.23.	커피외	27,500	공통운영비
35	2016.02.23.	교원 중식	119,500	공통운영비
36	2016.02.16.	교직원회식	320,300	교수학습활동비
37	2016.02.05.	교촌치킨	35,000	공통운영비
합계			**5,690,420**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박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시재 불일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박문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0.3.1.부터 2014.09.01.까지 원장 ▲▲▲은 2014.09.02.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총2개의 유치원 명의 통장을 운영하면서, 개인 급여 공제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으로 거래되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2013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재가 맞지 않은 사실이 있다.

[통장 운영 현황]

연번	계좌번호	주요거래내역	비고
1	외환 023-22-03800-6	유치원 주거래 통장	
2	외환 023-22-03472-8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개인 공제금액	예산,현금출납부 미반영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개인 공제금액을 회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박문유치원 원장 ◇◇◇(현, 계성유치원)

① 박문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1,875,646원
수감기관	지영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지영유치원
내 용

지영유치원 원장 청파◆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영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주유대금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 주유대금 외)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개인휴대전화) 사용내역
3. 예산의 목적외(연체료 외)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지영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11,875,646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지영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주유대금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26.	자동차세	412,370	
2	2013.04.26.	휘발유	30,000	
3	2013.05.23.	휘발유	50,000	
4	2013.05.23.	휘발유	30,000	
5	2013.06.28.	휘발유	30,000	
6	2013.06.28.	휘발유	50,000	
7	2013.06.28.	휘발유	30,000	
8	2013.07.29.	휘발유	50,000	
9	2013.08.28.	휘발유	30,000	
10	2013.08.28.	휘발유	30,000	
11	2013.08.28.	휘발유	50,000	
12	2013.08.28.	휘발유	30,000	
13	2013.09.02.	자동차보험료	496,100	
14	2013.09.14.	오일교환외	235,510	
15	2013.09.30.	휘발유	30,000	
16	2013.09.30.	휘발유	90,000	
17	2013.09.30.	휘발유	30,000	
18	2013.09.30.	휘발유	50,000	
19	2013.10.28.	휘발유	50,000	
20	2014.01.28.	자동차수리	93,610	
21	2014.01.28.	휘발유	90,000	
22	2014.02.28.	휘발유	70,000	
23	2014.02.28.	휘발유	70,000	
24	2014.02.28.	휘발유	70,000	
25	2014.02.28.	휘발유	50,000	
26	2015.03.30.	휘발유	50,000	
27	2015.03.30.	휘발유	70,000	
28	2015.03.30.	휘발유	70,000	
29	2015.03.30.	휘발유	70,000	
30	2015.03.30.	휘발유	70,000	
31	2015.03.30.	차량수리	700,000	

32	2015.04.28.	휘발유	70,000	
33	2015.04.28.	휘발유	70,000	
34	2015.04.28.	휘발유	70,000	
35	2015.04.28.	휘발유	70,000	
36	2015.04.28.	휘발유	50,000	
37	2015.04.28.	휘발유	50,000	
38	2015.04.28.	휘발유	70,000	
39	2015.05.29.	휘발유	50,000	
40	2015.05.29.	휘발유	70,000	
41	2015.05.29.	휘발유	70,000	
42	2015.05.29.	휘발유	50,000	
43	2015.05.29.	휘발유	50,000	
44	2015.05.29.	휘발유	50,000	
45	2015.05.29.	휘발유	80,000	
46	2015.06.29.	휘발유	70,000	
47	2015.06.29.	자동차정비	450,000	
48	2015.06.29.	휘발유	70,000	
49	2015.06.29.	휘발유	90,000	
50	2015.06.29.	휘발유	50,000	
51	2015.06.29.	휘발유	70,000	
52	2015.06.29.	휘발유	70,000	
53	2015.07.28.	휘발유	70,000	
54	2015.07.28.	휘발유	50,000	
55	2015.07.28.	휘발유	70,000	
56	2015.07.28.	휘발유	70,000	
57	2015.07.28.	차량엔진수리비	450,450	
58	2015.07.28.	휘발유	50,000	
59	2015.07.28.	휘발유	50,000	
60	2015.07.28.	휘발유	50,000	
61	2016.08.28.	휘발유	70,000	
62	2015.08.28.	휘발유	70,000	
63	2015.08.28.	휘발유	50,000	
64	2015.08.28.	휘발유	70,000	

65	2015.08.28.	휘발유	70,000	
66	2015.08.28.	휘발유	50,000	
67	2015.09.30.	휘발유	70,000	
68	2015.09.30.	차량수리비	300,000	
69	2015.09.30.	휘발유	56,000	
70	2015.09.30.	휘발유	50,000	
71	2015.09.30.	휘발유	70,000	
72	2015.09.30.	휘발유	140,000	
73	2015.09.30.	휘발유	50,000	
74	2015.09.30.	휘발유	72,000	
75	2015.09.30.	자동차보험	576,030	
76	2015.10.28.	휘발유	72,000	
77	2015.10.28.	휘발유	50,000	
78	2015.10.28.	차량수리비	450,000	
79	2015.10.28.	휘발유	78,000	
80	2015.10.28.	휘발유	72,000	
81	2015.10.28.	휘발유	52,000	
82	2016.02.26.	휘발유	55,000	
83	2016.02.26.	휘발유	70,000	
84	2016.02.26.	휘발유	72,000	
85	2016.04.04.	휘발유	15,000	
합계			8,628,070	

[붙임 2] 예산의 목적외(개인휴대전화) 사용 내역

연번	연도	월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	3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42,470	
2	2013	4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39,570	
3	2013	5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39,590	
4	2013	6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41,180	
5	2013	7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4,080	
6	2013	8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60	
7	2013	9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8	2013	10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9	2013	1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0	2013	1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1	2014	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2	2014	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3	2014	3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4	2014	4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5	2014	5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6	2014	6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15,350	
17	2014	7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1,680	
18	2014	8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7,390	
19	2014	9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7,330	
20	2014	10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9,560	
21	2014	1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8,790	
22	2014	1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7,330	
23	2015	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7,330	
24	2015	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40,690	
25	2015	3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80,000	
26	2015	4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8,680	
27	2015	5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10	
28	2015	6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29	2015	7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0	2015	8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1	2015	9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2	2015	10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3	2015	1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3,000	
34	2015	1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5	2016	1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2,870	
36	2016	2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263,750	
37	2016	3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4,060	
38	2016	4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5,480	
39	2016	5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4,080	
40	2016	6	휴대전화 사용요금(사무직)	74,090	
합계				1,951,890	

[붙임 3] 예산의 목적외(연체료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30.	교원 처우개선비 반납	1,220,000	
2	2014.07.28.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100	
3	2015.04.09.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1,420	
4	2015.07.16.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840	
5	2015.10.05.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1,790	
6	2015.11.30.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170	
7	2016.02.02.	사학연금 연체금	4,280	
8	2016.03.29.	갑근세가산금	57,656	
9	2016.04.25.	지방소득세가산금	9,430	
합계			1,295,686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지영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지영유치원
내 용

지영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영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을 착오 신고 하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 착오 신고 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지영유치원장은 **원장 ◆◆◆외 9명의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지영유치원 원장 ◆◆◆

[붙임 1] 연말정산 착오 신고 내역

성명	2015 급여액	2015 신고액	연말정산 신고차액 (추가·감액 신고)
	54,508,200	52,927,380	1,580,820
	41,119,000	40,022,700	1,096,300
	27,888,600	27,454,540	434,060
	21,621,400	21,281,760	339,640
	3,713,610	3,453,660	259,950
	24,764,400	24,380,660	383,740
	3,375,860	3,056,760	319,100
	31,337,250	31,051,650	285,600
	4,892,950	5,750,000	−857,050
	16,440,400	17,306,000	−865,600
합계			2,976,560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지영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지영유치원
내 용

지영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영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목록 참조)

3. 2014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지영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지영유치원 원장 ◆◆◆

[붙임 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4.03.28.	교사식대	20,000	공통운영비
2	2014.03.28.	교사식대	27,500	공통운영비
3	2014.04.28.	교사식대	14,000	공통운영비
4	2014.04.28.	교사식대	24,000	공통운영비
5	2014.05.28.	교사식대	33,000	공통운영비
6	2014.05.28.	교사식대	32,000	공통운영비
7	2014.06.30.	교사식대	47,000	공통운영비
8	2014.06.30.	교사식대	16,000	공통운영비
9	2014.07.28.	교사식대	30,000	공통운영비
10	2014.07.28.	교사식대	31,000	효도휴가비
11	2014.08.28.	교사식대	49,000	공통운영비
12	2014.08.28.	교사식대	39,000	공통운영비
13	2014.09.29.	교사식대	22,000	공통운영비
14	2014.09.29.	교사식대	34,000	공통운영비
15	2014.10.28.	교사식대	20,000	공통운영비
16	2014.10.28.	교사식대	25,000	공통운영비
17	2014.11.28.	교사식대	19,000	공통운영비
18	2014.11.28.	교사식대	29,000	공통운영비
19	2014.12.26.	교사식대	28,000	공통운영비
20	2014.12.26.	교사식대	33,000	공통운영비
21	2015.01.28.	교사식대	34,000	공통운영비
22	2015.01.28.	교사식대	48,000	공통운영비
23	2015.02.28.	교사식대	28,000	공통운영비
24	2015.02.28.	교사식대	37,000	공통운영비
25	2015.03.30.	교사식대	127,200	공통운영비
26	2015.04.28.	교사식대	105,800	공통운영비
27	2015.05.29.	교사식대	94,000	공통운영비
31	2015.06.29.	교사식대	528,000	공통운영비
30	2015.07.28.	교사식대	86,000	공통운영비
28	2015.08.28.	교사식대	401,900	공통운영비
29	2015.09.30.	교사식대	310,600	공통운영비
32	2015.10.28.	교사식대	515,170	공통운영비
33	2015.11.02.	교사식대	13,000	공통운영비
34	2015.11.17.	음료수	23,600	공통운영비

35	2015.11.26.	식대	31,000	공통운영비
36	2015.12.09.	과자외	16,920	공통운영비
37	2015.12.15.	샌드위치 빵외	92,460	공통운영비
38	2015.12.17.	식대	20,000	공통운영비
39	2015.12.22.	빵외	13,000	공통운영비
40	2016.01.04.	돈까스	46,000	공통운영비
41	2016.01.05.	커피	3,500	공통운영비
42	2016.01.15.	간식비	35,880	공통운영비
43	2016.01.21.	교사식대	22,500	공통운영비
44	2016.01.22.	교사식대	16,000	공통운영비
45	2016.01.25.	교사식대	35,000	공통운영비
46	2016.01.26.	교사식대	34,000	공통운영비
47	2016.01.28.	간식외	22,800	공통운영비
48	2016.01.28.	핫브레이크	23,520	공통운영비
49	2016.01.30.	교사식대	131,500	공통운영비
50	2016.01.31.	교사식대	39,000	공통운영비
51	2016.02.11.	교사식대	30,000	공통운영비
52	2016.02.17.	교사식대	102,000	공통운영비
53	2016.02.19.	훈제치킨	55,000	교수학습활동비
54	2016.02.19.	식대	106,000	교수학습활동비
55	2016.02.23.	교사식대	108,000	공통운영비
56	2016.02.26.	교사식대외	167,000	공통운영비
합계			**4,075,850**	

[붙임 2] 2014년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수입	지출	잔액
교통비	11,073,500	13,920,000	-2,846,500
급식비	59,708,000	53,008,620	6,699,380
현장학습비	63,389,000	46,689,790	16,699,210
교재비 및 재료비	22,095,500	19,588,002	2,507,498
특성화활동비	20,382,000	35,754,670	-15,372,670
합 계	176,648,000	168,961,082	7,686,918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지영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적립금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지영유치원
내 용

지영유치원 원장 ◆◆◆은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2조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 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목적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찰청인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영유치원에서는 사전에 적립금의 목적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 없이 2013.04.02부터 현재까지 314,280,000원을 시설 적립금 목적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다.

붙임 2013~2016년 적립금 현황

조치할 사항 “시정”

지영유치원장은 적립금 목적으로 현재까지 적립한 적립금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지영유치원 원장 ◆◆◆

[붙임] 적립금 운영 현황

연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13.04.02.	70,000,000	
2	2013.07.05.	80,000,000	
3	2013.10.02.	90,000,000	
4	2013.10.28.	−30,000,000	유치원회계로 입금
5	2013.12.04.	−25,000,000	유치원회계로 입금
6	2014.01.03.	−20,000,000	유치원회계로 입금
7	2014.01.16.	45,000,000	
8	2014.01.09.	20,000,000	
9	2014.01.13.	50,000,000	
10	2014.02.05.	30,000,000	
11	2015.03.09.	20,000,000	
12	2016.03.29.	−5,720,000	공사대금지급
13	2016.07.05.	−10,000,000	유치원회계로 입금
합계		314,280,000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5,075,568원
수감기관	관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관교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솔빛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개인 주유대금) 사용내역
3. 예산의 목적외(연체료)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5,075,568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관교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01.	어린이재단	30,000	
2	2013.04.30.	어린이재단	30,000	
3	2013.05.30.	어린이재단	30,000	
4	2013.07.01.	어린이재단	30,000	
5	2013.07.30.	어린이재단	30,000	
6	2013.08.20.	아동돕기	5,000	
7	2013.08.30.	어린이재단	30,000	
8	2013.09.23.	YMCA	5,000	
9	2013.09.30.	어린이재단	30,000	
10	2013.10.21.	YMCA	5,000	
11	2013.10.30.	어린이재단	30,000	
12	2013.11.20.	YMCA	5,000	
13	2013.12.02.	어린이재단	30,000	
14	2013.12.20.	YMCA	5,000	
15	2013.12.30.	어린이재단	30,000	
16	2014.01.20.	YMCA	5,000	
17	2014.02.03.	어린이재단	30,000	
18	2014.02.20.	YMCA	5,000	
19	2014.02.28.	어린이재단	30,000	
20	2014.03.20.	YMCA	5,000	
21	2014.03.31.	어린이재단	30,000	
22	2014.04.21.	YMCA	5,000	
23	2014.04.30.	어린이재단	30,000	
24	2014.05.20.	YMCA	5,000	
25	2014.05.30.	어린이재단	30,000	
26	2014.06.20.	YMCA	5,000	
27	2014.06.30.	어린이재단	30,000	
28	2014.07.21.	YMCA	5,000	

29	2014.07.30.	어린이재단	30,000	
30	2014.08.20.	YMCA	5,000	
31	2014.09.01.	어린이재단	30,000	
32	2014.09.22.	YMCA	5,000	
33	2014.09.30.	어린이재단	30,000	
34	2014.10.20.	YMCA	5,000	
35	2014.10.30.	어린이재단	30,000	
36	2014.11.20.	YMCA	5,000	
37	2014.12.01.	어린이재단	30,000	
38	2014.12.22.	YMCA	5,000	
39	2014.12.30.	어린이재단	30,000	
40	2015.01.20.	YMCA	5,000	
41	2015.01.30.	어린이재단	30,000	
42	2015.02.23.	YMCA	5,000	
43	2015.03.02.	어린이재단	30,000	
44	2015.03.20.	YMCA	5,000	
45	2015.03.30.	어린이재단	30,000	
46	2015.04.20.	YMCA	5,000	
47	2015.04.30.	어린이재단	30,000	
48	2015.05.20.	YMCA	5,000	
49	2015.06.01.	어린이재단	30,000	
50	2015.06.22.	YMCA	5,000	
51	2015.06.30.	어린이재단	30,000	
52	2015.07.20.	YMCA	5,000	
53	2015.08.20.	YMCA	5,000	
54	2015.08.31.	어린이재단	30,000	
55	2015.09.21.	YMCA	5,000	
56	2015.10.20.	YMCA	5,000	
57	2015.10.30.	어린이재단	30,000	
58	2015.11.20.	YMCA	5,000	
59	2015.12.21.	YMCA	5,000	

60	2015.12.30.	어린이재단	30,000	
61	2016.01.20.	YMCA	5,000	
62	2016.02.22.	YMCA	5,000	
63	2016.02.01.	어린이재단	30,000	
64	2016.02.29.	어린이재단	30,000	
65	2016.03.21.	YMCA	5,000	
66	2016.03.30.	어린이재단	30,000	
67	2016.04.20.	YMCA	5,000	
68	2016.05.02.	어린이재단	30,000	
69	2016.05.20.	YMCA	5,000	
70	2016.05.30.	어린이재단	30,000	
71	2016.06.20.	YMCA	5,000	
72	2016.06.30.	어린이재단	30,000	
합계			1,285,000	

[붙임 2] 예산의 목적외(개인 주유대금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4.03.28.	행정 교통비	210,000	
2	2014.05.02.	행정 교통비	150,000	
3	2014.06.03.	행정 교통비	140,000	
4	2014.10.15.	행정 교통비	220,000	
5	2014.11.14.	행정 교통비	220,000	
6	2014.12.15.	행정 교통비	210,000	
7	2015.01.17.	행정 교통비	180,000	
8	2015.02.13.	행정 교통비	242,000	
9	2015.03.13.	주유	30,000	
10	2015.04.15.	주유	50,000	
11	2015.07.27.	주유	50,000	
12	2015.07.27.	주유	50,000	
13	2015.07.27.	주유	50,000	
14	2015.08.27.	주유	50,000	
15	2015.08.27.	주유	50,000	
16	2015.08.27.	주유	50,000	
17	2015.08.27.	주유	60,000	
18	2015.09.30.	주유	50,000	
19	2015.09.30.	주유	60,000	
20	2015.10.27.	주유	60,000	
21	2015.10.27.	주유	50,000	
22	2015.10.27.	주유	60,000	
23	2015.10.27.	주유	50,000	
24	2015.10.27.	주유	50,000	
25	2015.11.27.	주유	50,000	
26	2015.11.27.	주유	60,000	
27	2015.11.27.	주유	60,000	
28	2015.11.27.	주유	40,000	
29	2015.11.27.	주유	60,000	
30	2015.12.24.	주유	50,000	
31	2015.12.24.	주유	50,000	

32	2016.01.26.	주유	50,000	
33	2016.01.26.	주유	50,000	
34	2016.01.26.	주유	50,000	
35	2016.02.29.	주유	50,000	
36	2016.02.29.	주유	50,000	
37	2016.05.27.	주유	50,000	
38	2016.05.27.	주유	53,000	
39	2015.06.29.	주유	40,000	
40	2015.06.29.	주유	60,000	
41	2015.06.29.	주유	40,000	
42	2015.06.29.	주유	40,000	
43	2016.03.28.	경유	50,000	
44	2016.03.28.	경유	50,000	
45	2016.03.28.	디젤(경유)	47,000	
46	2016.03.28.	경유	47,000	
47	2016.03.28.	경유	45,000	
48	2016.04.27.	경유	50,000	
49	2016.04.19.	경유	50,000	
50	2016.05.13.	경유	46,998	
51	2016.06.27.	경유	50,000	
52	2016.06.27.	경유	50,000	
합계			3,780,998	

[붙임 3] 예산의 목적외 사용내역(연체료)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11.05.	사학연금 연체료	3,530	
2	2014.04.25.	국민연금 연체료	6,040	
합계			9,570	

일련번호	1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관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관교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원장 ■■■외 15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관교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명절상여금 (2015.02.06.)	여름휴가비 (2015.07.29.)	명절상여금 (2015.09.24.)	합 계
	400,000	400,000	400,000	1,200,000
	300,000	400,000	400,000	1,100,000
	300,000	300,000	300,000	900,000
	200,000	300,000	300,000	8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200,000	200,000	400,000
		200,000	200,000	400,000
		200,000	200,000	400,000
		200,000	200,000	40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합 계				7,200,000

일련번호	1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관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관교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03.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립유치원 설립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2016학년도 세출예산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편성함

년도	편성예산액(원)	비고
2016	200,000원*12회=2,400,000	

2.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3.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목록 참조)

4. 2013~2015년도까지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에 편성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2,400,000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관교유치원 원장 ■■■

[붙임 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05.21.	간식	46,400	급식비
2	2013.05.27.	식대	53,000	급식비
3	2013.06.12.	선물	144,400	교수학습활동비
4	2013.07.20.	동창회 간식	275,080	교수학습활동비
5	2013.09.09.	갯벌수고모임	174,500	연구장학비
합계			693,380	

[붙임 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급식비	55,830,000	56,062,789	−232,789	56,622,500	57,504,885	−882,385	50,7
현장학습비	46,200,000	46,331,550	−131,550	30,388,000	34,380,900	−3,992,900	10,4
특성화활동비	37,000,000	42,563,000	−5,563,000				14,7
합 계	139,030,000	144,957,339	−5,927,339	87,010,500	91,885,785	−4,875,285	75,8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2016년도 제5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2016.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016년도 제5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기관명	처분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경고	주의	소계		
소명유치원	4	3	1	4	1	20,039,703
노벨유치원	3	1	2	3	0	34,017,249
세종유치원	4	1	3	4	0	1,043,691
합 계	11	5	6	11	1	55,100,643

2. 유치원별 지적사항 및 처분(안)

<table>
<tr><th>기관명</th><th>지적건명</th><th>지 적 사 항</th><th>처분(안)</th></tr>
<tr><td>소명</td><td>예산의 목적외 사용</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연체료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
<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
<tr><td>1</td><td>2013.4.~2016.6.</td><td>공공요금 연체료 등</td><td>135,725</td></tr>
<tr><td>2</td><td>2014.12.~2016.8.</td><td>기부금</td><td>251,000</td></tr>
<tr><td>3</td><td>2013.12.~2016.2.</td><td>개인차량 주유대금</td><td>424,228</td></tr>
<tr><td colspan="3">합 계</td><td>810,953</td></tr>
</table></td><td>“시정(회수)”
810,953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② 2014~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td><td>“주의 요구”</td></tr>
<tr><td></td><td>연금 보험료 납부</td><td>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입한 사실이 있음.
<table>
<tr><th>보험명</th><th>가입일</th><th>금액(원)</th><th>비고</th></tr>
<tr><td>교보생명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 교보연금)</td><td>2010.5.27.</td><td>19,228,750</td><td>2010년 5월부터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 납부</td></tr>
</table></td><td>“시정(회수)”
19,228,750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차입금에 관한 사항</td><td>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부담금, 유치원 공사비 및 물품 구입 대금의 사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714,515,000원을 관할청의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음.</td><td>“경고 요구”
“기관 경고”</td></tr>
<tr><td>노벨</td><td>예산의 목적외</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td><td>“시정(회수)”</td></tr>
</table>

<table>
<tr><th>기관명</th><th>지적건명</th><th>지 적 사 항</th><th>처분(안)</th></tr>
<tr><td></td><td>사용</td><td>연체료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tr><td>1</td><td>2014.4.~2016.9.</td><td>휴대전화사용요금</td><td>3,586,044</td></tr><tr><td>2</td><td>2013.3.~2016.9.</td><td>주유대금</td><td>6,239,344</td></tr><tr><td>3</td><td>2013.3.~2016.8.</td><td>기타(목적외)</td><td>24,183,250</td></tr><tr><td>4</td><td>2013.3.~2016.7.</td><td>공공요금 연체료</td><td>8,611</td></tr><tr><td colspan="3">합 계</td><td>34,017,249</td></tr></table></td><td>34,017,249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교직원 상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등 연말정산 착오 신고 함.</td><td>“주의 요구”</td></tr>
<tr><td></td><td>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td><td>“주의 요구”</td></tr>
<tr><td>세종</td><td>예산의 목적외 사용</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주유대금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tr><td>1</td><td>2013.7.~2015.11.</td><td>주유대금</td><td>617,000</td></tr><tr><td>2</td><td>2013.3.~2016.7.</td><td>공공요금 연체료</td><td>2,261</td></tr><tr><td>3</td><td>2013.4.~2015.9.</td><td>기타(목적외)</td><td>424,430</td></tr><tr><td colspan="3">합 계</td><td>1,043,691</td></tr></table></td><td>“시정(회수)”
1,043,691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원장 ▲▲▲외 1명의 2015년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td><td>“주의 요구”</td></tr>
</table>

기관명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착오 신고 함.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③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주의 요구”
	교직원 사회보험 미가입	■■유치원에서는 직원 해승☆와 2016. 9. 8.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감사당일(2016. 9. 30.)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요구”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810,953원
수감기관	소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소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 등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1	2013.4.~2016.6.	공공요금 연체료 등	135,725
2	2014.12.~2016.8.	기부금	251,000
3	2013.12.~2016.2.	개인차량 주유대금	424,228
합 계			810,953

붙임 1. 예산의 목적외(연체료)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기부금) 사용내역
3. 예산의 목적외(개인 주유대금외)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810,953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 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소명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 목적외(연체료) 지출 목록

연번	지출월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	상하수도	1,220	
2	2013.12	전화	7,310	
3	2013.12	상하수도	1,960	
4	2014.03	국민연금	16,470	
5	2014.03	도시가스	1,354	
6	2014.04	상하수도	2,960	
7	2014.06	건강·장기요양보험	1,300	
8	2014.06	도시가스	2,133	
9	2014.06	국민연금	1,300	
10	2014.07	상하수도	1,640	
11	2014.07	도시가스	336	
12	2014.08	국민연금	1,250	
13	2014.08	건강·장기요양보험	1,250	
14	2014.11	건강·장기요양보험	1,530	
15	2014.11	국민연금	1,530	

16	2014.11	전화	10,152	
17	2014.11	도시가스	673	
18	2015.03	도시가스	1,812	
19	2015.04	상하수도	790	
20	2015.05	국민연금	1,530	
21	2015.08	도시가스	625	
22	2015.11	국민연금	1,610	
23	2015.12	국민연금	3,220	
24	2016.01	국민연금	3,220	
25	2016.01	도시가스	273	
26	2016.02	국민연금	3,220	
27	2016.02	재산세 가산세	31,110	
28	2016.03	도시가스	6,047	
29	2016.03	국민연금	3,220	
30	2016.04	국민연금	3,220	
31	2016.04	도시가스	5,493	
32	2016.04	상하수도	930	
33	2016.05	국민연금	3,220	
34	2016.05	도시가스	3,300	
35	2016.06	상하수도	3,410	
36	2016.06	도시가스	1,882	
37	2016.07	도시가스	1,949	
38	2016.06	도시가스	617	
39	2016.06	도시가스	659	
합 계			135,725	

[붙임 2] 예산 목적외(기부금)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4.12.22.	기부금	30,500	
2	2015.09.25.	미추홀공덕회	10,000	
3	2015.10.25.	미추홀공덕회	10,000	
4	2015.10.29.	복지관 기부금	100,500	
5	2015.11.25.	미추홀공덕회	10,000	
6	2015.12.25.	미추홀공덕회	10,000	
7	2016.01.25.	미추홀공덕회	10,000	
8	2016.02.25.	미추홀공덕회	10,000	
9	2016.03.25.	미추홀공덕회	10,000	
10	2016.04.25.	미추홀공덕회	10,000	
11	2016.05.25.	미추홀공덕회	10,000	
12	2016.06.27.	미추홀공덕회	10,000	
13	2016.07.25.	미추홀공덕회	10,000	
14	2016.08.25.	미추홀공덕회	10,000	
합계			251,000	

[붙임 3] 예산 목적외(개인 주유대금)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12.02.	주유비(휘발유)	100,000	
2	2013.12.02.	주유비(휘발유)	80,000	
3	2014.05.20.	주유비(휘발유)	30,000	
4	2015.08.28.	주유비(휘발유)	74,000	
5	2015.10.05.	주유비(휘발유)	90,228	
6	2016.02.15.	주유비(휘발유)	50,000	
합 계			424,228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소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소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2014~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소명유치원 원장 ☆☆☆

[붙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교통비	12,530,000	12,769,480	-239,480	12,702,000	16,086,500	-3,384,500
급식비	67,974,670	71,983,330	-4,008,660	70,614,110	70,685,670	-71,560
현장학습비	24,887,960	38,774,400	-13,886,440	24,390,750	27,212,900	-2,822,150
교재비및재료비	84,780,230	85,473,000	-692,770	83,829,250	98,603,800	-14,774,550
특성화활동비	46,049,940	52,532,000	-6,482,060	48,184,390	56,068,500	-7,884,110
원복비	3,000,000	3,125,500	-125,500	1,625,000	2,250,500	-625,500
합 계	239,222,800	264,657,710	-25,434,910	241,345,500	270,907,870	-29,562,37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9,228,750원
수감기관	소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연금보험료 납부
관계기관 소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입 한 사실이 있음.(붙임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명	가입일	금액(원)	비고
교보생명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 교보연금)	2010.5.27.	19,228,750	2010년 5월부터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 납부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보험료 납입금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소명유치원 원장 ☆☆☆

[붙임] 보험료납입내역

보험료(현대해상) 납입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0.05.2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	2010.06.2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	2010.07.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	2010.08.3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	2010.11.0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6	2010.11.3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7	2010.11.3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8	2011.01.2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9	2011.01.2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0	2011.02.2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1	2011.03.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2	2011.04.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3	2011.05.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4	2011.06.3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5	2011.08.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6	2011.08.2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7	2011.09.2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8	2011.10.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19	2011.11.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0	2011.12.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1	2012.01.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2	2012.02.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3	2012.03.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4	2012.04.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5	2012.05.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6	2012.06.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7	2012.07.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8	2012.08.2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29	2012.09.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0	2012.10.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1	2012.11.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2	2012.12.2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3	2013.01.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4	2013.02.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5	2013.03.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6	2013.04.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7	2013.05.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8	2013.06.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39	2013.07.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0	2013.08.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1	2013.09.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2	2013.10.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3	2013.11.2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4	2013.12.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5	2014.01.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6	2014.02.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7	2014.03.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8	2014.04.2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49	2014.05.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0	2014.06.20.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1	2014.07.21.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2	2014.08.18.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3	2014.09.2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4	2014.10.2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5	2014.11.17.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6	2014.12.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7	2015.01.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8	2015.02.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59	2015.03.16.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60	2015.04.15.	보험료(교보생명)	250,000	
61	2015.05.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2	2015.06.22.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3	2015.07.20.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4	2015.08.17.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5	2015.09.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6	2015.10.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7	2015.11.20.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8	2015.12.21.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69	2016.01.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0	2016.02.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1	2016.03.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2	2016.04.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3	2016.05.2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4	2016.06.1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5	2016.07.25.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6	2016.08.22.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77	2016.09.26.	보험료(교보생명)	248,750	
합 계			19,228,750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소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 요구, 기관 경고

제 목 유치원 회계 차입금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소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하며 차입금 허가를 위하여 ①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설립자 차입 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립자부담금, 유치원 공사비 및 물품 구입 대금의 사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714,515,000원을 관할청의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다.

붙임 차입금 입·출금 현황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소명유치원 원장 ☆☆☆

“기관 경고”

[붙임] 차입금 입·출금 현황

연번	일시	차입금	상환액	비고
1	2013.03.25.	540,000		
2	2013.03.27.		540,000	
3	2013.04.04.		10,000,000	
4	2013.04.23.		900,000	
5	2013.04.25.	900,000		
6	2013.04.29.		20,000,000	
7	2013.05.10.		5,000,000	
8	2013.05.16.	2,000,000		
9	2013.05.20.	500,000		
10	2013.05.22.	5,000,000		
11	2013.05.24.		1,000,000	
12	2013.05.31.	1,000,000		
13	2013.06.03.	3,000,000		
14	2013.06.05.	14,600,000		
15	2013.06.26.		50,000,000	
16	2013.07.15.		3,000,000	
17	2013.07.16.	2,000,000		
18	2013.07.22.	1,000,000		
19	2013.07.25.	3,000,000		
20	2013.07.31.	5,000,000		
21	2013.08.01.	6,000,000		
22	2013.08.02.	3,000,000		
23	2013.08.03.	4,000,000		
24	2013.08.05.	6,800,000		
25	2013.08.14.	8,000,000		

26	2013.08.27.	20,000,000		
27	2013.09.04.	10,000,000		
28	2013.09.26.	5,000,000		
29	2013.10.01.		65,900,000	
30	2013.10.11.	10,000,000		
31	2013.11.05.	14,500,000		
32	2013.11.29.	20,500,000		
33	2014.02.20.	10,000,000		
34	2014.04.01.		2,000,000	
35	2014.04.18.	10,000,000		
36	2014.04.30.		10,000,000	
37	2014.05.02.		4,000,000	
38	2014.05.02.	2,000,000		
39	2014.05.08.	1,500,000		
40	2014.05.09.	500,000		
41	2014.05.21.		2,000,000	
42	2014.06.02.	200,000		
43	2014.06.02.		200,000	
44	2014.06.05.	9,300,000		
45	2014.06.09.	4,500,000		
46	2014.06.20.		14,000,000	
47	2014.07.01.		22,000,000	
48	2014.07.04.	9,000,000		
49	2014.07.07.	5,000,000		
50	2014.07.10.	7,000,000		
51	2014.07.23.		10,000,000	
52	2014.07.24.	10,000,000		
53	2014.07.31.		12,000,000	
54	2014.08.01.	3,500,000		
55	2014.08.05.	12,000,000		
56	2014.08.12.		650,000	

57	2014.09.04.		2,000,000	
58	2014.09.11.		5,300,000	
59	2014.10.06.	8,200,000		
60	2014.10.20.		300,000	
61	2014.10.20.	800,000		
62	2014.10.21.	300,000		
63	2014.10.21.		800,000	
64	2014.11.19.		1,000,000	
65	2014.11.10.	1,450,000		
66	2014.11.20.	1,000,000		
67	2014.11.27.		10,000,000	
68	2014.12.01.	10,000,000		
69	2014.12.10.		1,000,000	
70	2014.12.11.	1,000,000		
71	2014.12.19.		5,000,000	
72	2014.12.22.	5,000,000		
73	2014.12.31.		1,000,000	
74	2015.01.05.	2,000,000		
75	2015.01.05.	300,000		
76	2015.01.06.	7,000,000		
77	2015.01.07.	3,500,000		
78	2015.01.12.		2,000,000	
79	2015.01.20.		4,000,000	
80	2015.01.20.		3,000,000	
81	2015.01.21.		2,800,000	
82	2015.01.26.		25,000,000	
83	2015.01.30.	5,000,000		
84	2015.02.02.	8,000,000		
85	2015.02.02.	12,000,000		
86	2015.03.26.	10,000,000		
87	2015.03.26.		30,000,000	

88	2015.03.31.		6,000,000	
89	2015.04.03.	26,000,000		
90	2015.04.30.		9,000,000	
91	2015.05.04.	5,000,000		
92	2015.05.11.	4,000,000		
93	2015.05.22.		30,000,000	
94	2015.06.05.	23,500,000		
95	2015.06.23.	6,500,000		
96	2015.06.29.		30,000,000	
97	2015.06.30.		11,000,000	
98	2015.07.03.	5,500,000		
99	2015.07.06.	10,000,000		
100	2015.07.07.	8,000,000		
101	2015.07.16.	1,000,000		
102	2015.07.29.		30,000,000	
103	2015.07.30.		20,000,000	
104	2015.07.30.	30,000,000		
105	2015.08.01.		10,000,000	
106	2015.08.05.	25,000,000		
107	2015.08.24.		28,000,000	
108	2015.08.31.		1,200,000	
109	2015.09.03.	1,200,000		
110	2015.09.04.	30,000,000		
111	2015.09.08.	10,000,000		
112	2015.09.21.	5,000,000		
113	2015.09.23.		17,000,000	
114	2015.09.24.		10,000,000	
115	2015.09.25.	10,000,000		
116	2015.10.02.	5,000,000		
117	2015.10.08.	2,300,000		
118	2015.10.12.	3,700,000		

119	2015.10.22.		10,000,000	
120	2015.11.05.	10,000,000		
121	2015.11.11.	1,000,000		
122	2015.11.12.		1,000,000	
123	2015.11.18.		650,000	
124	2015.11.24.		20,000,000	
125	2015.11.25.		10,000,000	
126	2015.11.26.	5,000,000		
127	2015.11.30.		2,700,000	
128	2015.12.03.	7,000,000		
129	2015.12.04.	20,000,000		
130	2015.12.16.	2,000,000		
131	2015.12.28.		10,000,000	
132	2016.01.02.		9,000,000	
133	2016.01.05.		3,500,000	
134	2016.01.05.	24,400,000		
135	2016.01.06.		2,000,000	
136	2016.01.07.	2,000,000		
137	2016.01.08.		2,000,000	
138	2016.01.15.	2,500,000		
139	2016.01.18.	100,000		
140	2016.01.22.		14,000,000	
141	2016.01.25.		15,000,000	
142	2016.01.29.	1,500,000		
143	2016.02.05.	21,700,000		
144	2016.02.15.	13,150,000		
145	2016.02.16.		675,000	
146	2016.02.16.	675,000		
147	2016.02.29.	900,000		
148	2016.02.29.		900,000	
149	2016.03.03.	1,500,000		

150	2016.03.28.		4,500,000	
151	2016.04.04.	4,500,000		
152	2016.04.05.	8,000,000		
153	2016.04.08.		5,000,000	
154	2016.04.25.		34,000,000	텃밭구입용
155	2016.04.29.	5,000,000		
156	2016.05.02.	1,000,000		
157	2016.05.04.	30,000,000		텃밭구입용
158	2016.05.17.	1,000,000		
159	2016.05.20.	1,500,000		
160	2016.05.24.		2,000,000	
161	2016.05.26.		10,000,000	
162	2016.05.30.		12,000,000	
163	2016.06.03.	21,000,000		
164	2016.06.03.	4,000,000		텃밭구입용
165	2016.06.17.	2,000,000		
166	2016.06.23.		12,000,000	
167	2016.07.05.	5,000,000		
합계		**714,515,000**	**709,515,000**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34,017,249원
수감기관	노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 · 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노벨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4.4.~2016.9.	휴대전화 사용요금	3,586,044	
2	2013.3.~2016.9.	주유대금	6,239,344	
3	2013.3.~2016.8.	기타(목적외)	24,183,250	
4	2013.3.~2016.7.	공공요금 연체료	8,611	
합 계			34,017,249	

붙임 1.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휴대전화 사용요금)
2.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3.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기타)
4.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공공요금 연체료)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34,017,249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노벨유치원 원장 ▲▲▲

[붙임 1]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25.	휴대전화 사용요금	70,215	
2	2013.05.27.	휴대전화 사용요금	125,285	
3	2013.06.25.	휴대전화 사용요금	124,419	
4	2013.07.25.	휴대전화 사용요금	124,419	
5	2013.08.26.	휴대전화 사용요금	124,653	
6	2013.09.25.	휴대전화 사용요금	101,410	
7	2013.10.25.	휴대전화 사용요금	96,190	
8	2013.11.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029	
9	2013.12.26.	휴대전화 사용요금	87,019	
10	2014.01.27.	휴대전화 사용요금	86,029	
11	2014.02.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161	
12	2014.03.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161	
13	2014.04.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029	
14	2014.05.26.	휴대전화 사용요금	86,781	
15	2014.06.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447	
16	2014.07.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029	
17	2014.08.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8,029	
18	2014.09.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865	
19	2014.10.27.	휴대전화 사용요금	86,161	
20	2014.11.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337	
21	2014.12.26.	휴대전화 사용요금	86,601	
22	2015.01.26.	휴대전화 사용요금	86,583	

23	2015.02.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370	
24	2015.03.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6,186	
25	2015.04.27.	휴대전화 사용요금	87,624	
26	2015.05.26.	휴대전화 사용요금	87,729	
27	2015.06.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7,129	
28	2015.07.27.	휴대전화 사용요금	87,261	
29	2015.08.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8,024	
30	2015.09.25.	휴대전화 사용요금	87,331	
31	2015.10.26.	휴대전화 사용요금	164,258	
32	2015.11.25.	휴대전화 사용요금	54,942	
33	2015.12.28.	휴대전화 사용요금	42,350	
34	2016.01.25.	휴대전화 사용요금	42,482	
35	2016.02.25.	휴대전화 사용요금	42,350	
36	2016.03.25.	휴대전화 사용요금	43,180	
37	2016.04.25.	휴대전화 사용요금	42,559	
38	2016.05.25.	휴대전화 사용요금	131,527	
39	2016.06.21.	휴대전화 사용요금	74,270	
40	2016.07.21.	휴대전화 사용요금	63,650	
41	2016.08.22.	휴대전화 사용요금	61,800	
42	2016.09.21.	휴대전화 사용요금	61,170	
합 계			3,586,044	

[붙임 2]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07.	주유비(휘발유)	113,000	
2	2013.03.20.	주유비(휘발유)	100,000	
3	2013.03.28.	주유비(휘발유)	60,000	
4	2013.04.04.	주유비(휘발유)	100,000	
5	2013.04.11.	주유비(휘발유)	102,000	
6	2013.04.15.	주유비(휘발유)	80,000	

7	2013.05.01.	주유비(휘발유)	95,000	
8	2013.05.16.	주유비(휘발유)	60,000	
9	2013.05.22.	주유비(휘발유)	100,000	
10	2013.06.19.	주유비(휘발유)	100,000	
11	2013.06.27.	주유비(휘발유)	100,000	
12	2013.07.12.	주유비(휘발유)	100,000	
13	2013.07.23.	주유비(휘발유)	100,000	
14	2013.08.01.	주유비(휘발유)	90,000	
15	2013.08.19.	주유비(휘발유)	50,000	
16	2013.08.27.	주유비(휘발유)	50,000	
17	2013.09.19.	주유비(휘발유)	50,000	
18	2013.10.21.	주유비(휘발유)	50,000	
19	2013.10.30.	주유비(휘발유)	100,000	
20	2013.11.13.	주유비(휘발유)	100,000	
21	2013.11.26.	주유비(휘발유)	200,000	
22	2013.11.27.	주유비(휘발유)	100,000	
23	2013.12.10.	주유비(휘발유)	100,000	
24	2013.12.23.	주유비(휘발유)	50,000	
25	2014.01.28.	주유비(휘발유)	50,000	
26	2014.02.11.	주유비(휘발유)	50,000	
27	2014.02.11.	주유비(휘발유)	100,000	
28	2014.02.22.	주유비(휘발유)	100,000	
29	2014.03.31.	주유비(휘발유)	100,000	
30	2014.04.17.	주유비(휘발유)	100,000	
31	2014.04.27.	주유비(휘발유)	80,000	
32	2014.05.18.	주유비(휘발유)	100,000	
33	2014.05.30.	주유비(휘발유)	100,000	
34	2014.06.11.	주유비(휘발유)	100,000	
35	2014.06.25.	주유비(휘발유)	100,000	
36	2014.07.03.	주유비(휘발유)	100,000	
37	2014.07.11	주유비(휘발유)	50,000	

38	2014.07.16.	주유비(휘발유)	100,000	
39	2014.07.22.	주유비(휘발유)	50,000	
40	2014.07.25.	주유비(휘발유)	100,000	
41	2014.08.03.	주유비(휘발유)	100,000	
42	2014.08.10.	주유비(휘발유)	50,000	
43	2014.09.10.	주유비(휘발유)	100,000	
44	2014.09.15.	주유비(경유)	100,000	
45	2014.09.21.	주유비(휘발유)	100,000	
46	2014.09.29.	주유비(휘발유)	100,000	
47	2014.11.03.	주유비(휘발유)	200,000	
48	2014.11.12.	주유비(휘발유)	100,000	
49	2014.11.17.	주유비(휘발유)	100,000	
50	2015.01.02.	주유비(휘발유)	50,000	
51	2015.01.04.	주유비(휘발유)	50,000	
52	2015.02.01.	주유비(휘발유)	90,000	
53	2015.02.06.	주유비(휘발유)	194,000	
54	2015.02.14.	주유비(휘발유)	97,000	
55	2015.02.27.	주유비(휘발유)	50,000	
56	2015.04.04.	주유비(휘발유)	90,000	
57	2015.04.07.	주유비(휘발유)	147,000	
58	2015.04.22.	주유비(휘발유)	50,000	
59	2015.05.18.	주유비(휘발유)	101,000	
60	2015.05.30.	주유비(휘발유)	80,000	
61	2015.06.09.	주유비(휘발유)	50,000	
62	2015.06.17.	주유비(휘발유)	94,000	
63	2015.07.10.	주유비(휘발유)	100,000	
64	2015.07.24.	주유비(휘발유)	96,000	
65	2015.09.03.	주유(휘발유)	50,000	
66	2015.09.04.	주유비	120,000	
67	2015.09.15.	주유비(휘발유)	80,000	
68	2015.09.18.	주유비(휘발유)	89,000	

69	2016.05.28.	주유비	40,000	
70	2016.09.14.	주유비(가스충전)	41,344	
합 계			6,239,344	

[붙임 3]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기타)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01.	교사식비	64,000	
2	2013.03.13.	바디워시	6,800	
3	2013.03.23.	부식	112,880	
4	2013.03.23.	부식	74,930	
5	2013.04.05.	부식비	120,000	
6	2013.04.08.	교사식비	55,000	
7	2013.04.13.	식기세척기	548,000	
8	2013.04.13.	양파외	97,330	
9	2013.04.15.	맥심외	12,050	
10	2013.04.15.	조안나자수배게커버외	233,400	
11	2013.04.15.	아메리카노외	974,600	
12	2013.04.20.	부식	20,600	
13	2013.04.24.	교사식대	26,800	
14	2013.04.27.	교사식대	17,000	
15	2013.04.29.	가지외	66,240	
16	2013.05.09.	교사식비	85,000	
17	2013.05.11.	필리핀바나나외	147,330	
18	2013.05.14.	광천재료김외	50,000	
19	2013.05.14.	둥글레차외	27,800	
20	2013.05.03.	교사식비	146,000	
21	2013.05.14.	건강깔창외	92,580	
22	2013.05.22.	부식비	190,170	
23	2013.05.24.	부식비	50,000	

24	2013.06.03.	햇살한공기	25,800	
25	2013.06.04.	부식	28,010	
26	2013.06.05.	좋은느낌	5,900	
27	2013.06.13.	과일외	225,000	
28	2013.06.18.	교사식대	24,000	
29	2013.06.18.	과실주병	42,000	
30	2013.06.22.	그릇	56,000	
31	2013.06.22.	설탕외	76,050	
32	2013.06.23.	전복외	33,930	
33	2013.06.24.	교사식비	19,000	
34	2013.06.27.	교사식비	28,000	
35	2013.06.27.	롯데마트부식	115,950	
36	2013.06.27.	좋은느낌 와일드외	12,040	
37	2013.06.28.	부식-양파외	120,000	
38	2013.07.11.	계란	45,000	
39	2013.07.15.	맥심	7,200	
40	2013.07.20.	교사식대	63,600	
41	2013.07.21.	교사식비	60,000	
42	2013.07.23.	쿨팬티외	53,800	
43	2013.07.29.	부식	60,000	
44	2013.07.30.	교사식비	49,000	
45	2013.07.30.	교사간식	9,800	
46	2013.08.01.	햇대파	27,630	
47	2013.08.01.	바나나	2,480	
48	2013.08.01.	송도소돼지	24,000	
49	2013.08.01.	여성로고3족외	111,140	
50	2013.08.04.	맥심모카믹스	22,800	
51	2013.08.10.	교사식대	24,000	
52	2013.08.10.	부식	81,000	
53	2013.08.19.	부식	138,340	
54	2013.08.19.	부식	5,500	

55	2013.08.19.	부식	36,340	
56	2013.08.20.	교사식비	43,000	
57	2013.08.20.	교사식비	9,800	
58	2013.08.21.	부식비	74,000	
59	2013.08.27.	교사간식맥도날드	12,300	
60	2013.08.27.	좋은느낌 날개	43,370	
61	2013.08.27.	구운김	20,000	
62	2013.08.27.	월드콘외	31,400	
63	2013.09.12.	교육비지원	3,358,800	
64	2013.09.13.	교사식비	18,000	
65	2013.09.17.	부식	19,310	
66	2013.09.18.	부식	30,390	
67	2013.10.02.	교사식대	24,000	
68	2013.10.07.	뉴핫브레이크외	53,800	
69	2013.10.14.	롯데마트-식품	174,420	
70	2013.10.18.	신라면외	130,060	
71	2013.10.25.	식품	100,000	
72	2013.10.28.	꿀호떡외	24,650	
73	2013.10.29.	토지장어구이	122,000	
74	2013.11.04.	탕수육외	20,350	
75	2013.11.05.	맥심커피외	50,000	
76	2013.11.25.	좋은느낌 날개외	15,000	
77	2013.11.27.	이동식행거외	137,580	
78	2013.12.02.	좋은느낌 한초랑	9,100	
79	2013.12.05.	동태	30,000	
80	2013.12.05.	오징어	30,000	
81	2013.12.05.	도토리묵	8,000	
82	2013.12.05.	교사식비	20,000	
83	2013.12.14.	신세계구월점식품	24,830	
84	2013.12.16.	클럼팩외	41,950	
85	2013.12.20.	안성탕면,신라면	5,550	

86	2013.12.23.	라면사리	1,400	
87	2013.12.23.	짜파게티	3,640	
88	2013.12.24.	에브리데이교사식대	12,850	
89	2013.12.26.	도너츠	27,000	
90	2013.12.31.	퓨리스외	50,690	
91	2014.01.10.	신세계백화점인천식품비	25,400	
92	2014.01.12.	토지 장어구이	91,000	
93	2014.01.13.	삼양라면외	7,400	
94	2014.01.14.	이마트	87,970	
95	2014.01.18.	교사식대	64,000	
96	2014.01.21.	연수이마트	127,140	
97	2014.01.21.	메주구입	100,000	
98	2014.02.11.	려 진결모외	106,630	
99	2014.02.11.	청소년 복지회 후원금	30,000	한국장애인
100	2014.02.18.	브니엘기독서점도서구입	303,500	
101	2014.02.24.	삼다수외	25,100	
102	2014.08.03.	프라임마트	46,810	부천소사
103	2014.08.04.	신진,피지스	143,000	김포,부산
104	2014.08.09.	담쟁이넝쿨	49,000	토
105	2014.08.13.	담쟁이넝쿨	20,000	13시
106	2014.08.14.	본죽	20,500	14시
107	2014.08.15.	이마트	35,930	내역없음
108	2014.08.15.	덕풍96번상회	42,000	광복절
109	2014.08.16.	교사식사	90,000	15시
110	2014.08.22.	안기정-과일	326,000	내역없음
111	2014.08.30.	맛있는즉석반찬	7,500	송도
112	2014.09.01.	유강례고춧가루	360,000	내역없음
113	2014.09.02.	원운영비	270,000	내역없음
114	2014.09.03.	흥남면옥(부평)	65,000	
115	2014.09.05.	AAA	157,320	내역없음
116	2014.09.09.	유강례고춧가루	360,000	내역없음

117	2014.09.15.	이지바이,송도신세계	13,180	송도
118	2014.09.17.	맛있는반찬	19,000	송도
119	2014.09.24.	참조은쭈꾸미	12,000	13시
120	2014.10.04.	토지장어	76,000	13시
121	2014.10.07.	원조설악추어탕(17시),본죽	17,000	본죽(송도)
122	2014.10.08.	이마트	210,220	내역없음
123	2014.10.09.	카페베네,교사식사등	35,300	14시,15시
124	2014.10.12.	옥천불난족발	30,000	송도
125	2014.10.15.	이마트	84,690	
126	2014.10.16.	영양불고기	198,000	서울
127	2014.10.17.	신세계(교사식사)	18,000	
128	2014.10.19.	무봉리순대국	8,000	일요일
129	2014.10.24.	■■유치원-국세	57,000	
130	2014.10.28.	행운마트	38,790	송도
131	2014.11.01.	정선아리랑	48,000	13시
132	2014.11.03.	이마트, 해피플러스	85,450	연수
133	2014.11.03.	정선아리랑,굴다리식당,스시마을,맥도날드	109,500	11시,16시,일,토
134	2014.11.09.	신세계-교사식사	18,000	일요일
135	2014.11.10.	에프리데이리테일	3,960	송도
136	2014.11.16.	베스킨라빈스	13,500	송도(일)
137	2014.12.04.	장단전통육개장	40,000	12시
138	2014.12.26.	교사식사	26,000	14시
139	2014.12.26.	프라임마트	7,340	부천
140	2014.12.29.	아리랑식당	45,000	14시
141	2014.12.31.	▲▲▲-교육비보조	1,400,400	
142	2015.01.01.	풍천장어직판장	65,000	신정
143	2015.01.07.	설악추어탕,본죽	37,000	13시
144	2015.01.23.	이마트	143,440	내역없음
145	2015.01.26.	홈마트	35,320	내역없음
146	2015.01.27.	본죽	10,000	13시

147	2015.01.28.	니뽕내뽕,카페베네	27,900	12시
148	2015.01.29.	오렌지마트	15,600	내역없음
149	2015.01.31.	행운마트	25,440	송도
150	2015.02.03.	이마트	88,120	내역없음
151	2015.02.04.	박정근	48,400	내역없음
152	2015.02.05.	이마트	210,220	
153	2015.02.05.	거림꽃농원	30,000	
154	2015.02.05.	우편요금	2,230	고구려대
155	2015.02.05.	본죽	10,000	17시
156	2015.02.05.	설악추어탕	14,000	13시
157	2015.02.05.	꽃다지정식	60,000	서울
158	2015.02.05.	토지장어구이	76,000	13시
159	2015.02.06.	담쟁이넝쿨	33,000	15시
160	2015.02.06.	▲▲▲	18,400	
161	2015.02.09.	차량세금(다나관광)	160,000	
162	2015.02.10.	토지장어구이식당	76,000	14시
163	2015.02.12.	이마트, 서울제과	201,230	내역없음
164	2015.02.13.	이대조뼈다귀해장국	140,000	14시
165	2015.02.13.	설악추어탕	35,000	토요일
166	2015.02.16.	장충당	25,000	송도
167	2015.02.17.	차량도색지원	600,000	
168	2015.02.17.	이마트	82,940	
169	2015.02.21.	맘스터치, 북창동순두부, 원운영비	52,400	토,내역없음
170	2015.02.22.	원소모품	15,000	식대(일)
171	2015.02.27.	참조은쭈꾸미	10,000	13시
172	2015.02.27.	금강산	16,000	14시
173	2015.02.27.	푸드코드	13,500	10시
174	2015.02.27.	cj올리브네트웍스송도	26,000	림밤외
175	2015.02.27.	육개장라면	4,600	
176	2015.02.27.	이마트(라면,여성양말등포함)	410,270	

177	2015.02.27.	행운마트	72,480	송도
178	2015.02.28.	투썸플레이스,고기마당	33,300	토요일
179	2015.03.10.	본죽	9,000	
180	2015.03.14.	배외	48,420	
181	2015.07.24.	재산세-■■유치원	166,490	
182	2015.04.07.	뱃자반	6,800	
183	2015.04.07.	행운마트	59,170	
184	2015.04.07.	롯데마켓	37,260	
185	2015.04.07.	설악추어탕	7,000	
186	2015.04.07.	설악추어탕	7,000	
187	2015.04.07.	설악추어탕	14,000	
188	2015.04.07.	설악추어탕	7,000	
189	2015.04.07.	설악추어탕	7,000	
190	2015.04.07.	참조은쭈꾸미	7,000	
191	2015.04.07.	마실한정식	29,700	
192	2015.04.09.	산너머남촌	41,700	
193	2015.04.15.	씨유송도점	9,020	
194	2015.04.17.	행운마트	15,000	
195	2015.04.18.	스시로	27,700	
196	2015.04.19.	이마트연수점	6,000	
197	2015.04.30.	홍두깨살	24,290	
198	2015.04.30.	설악추어탕	7,000	
199	2015.04.30.	홍두깨칼국수	6,000	
200	2015.04.30.	해물갈비찜	48,000	
201	2015.05.01.	웅이마트	54,000	
202	2015.05.01.	참굴비	15,000	
203	2015.05.02.	원감 조규정	2,000,000	
204	2015.05.03.	풍림마트	24,500	
205	2015.05.05.	하모니마트	10,000	
206	2015.05.06.	설악추어탕	25,500	
207	2015.05.07.	에브리데이리테일	43,930	

208	2015.05.09.	이마트	57,020	
209	2015.05.13.	밥맛나는세상	22,500	
210	2015.05.17.	하모니마트	44,720	
211	2015.05.17.	스시로	30,100	
212	2015.05.18.	카레	5,450	
213	2015.05.20.	본죽	19,000	
214	2015.05.23.	스시로	37,400	
215	2015.05.25.	행운마트	52,590	
216	2015.05.30.	신세계백화점	7,500	
217	2015.05.30.	신세계백화점	16,000	
218	2015.06.11.	토지육계	18,000	
219	2015.06.15.	홈마트	112,110	
220	2015.06.16.	홈마트	25,490	
221	2015.06.19.	요리샤브샤브	28,000	
222	2015.06.20.	피에스타치코	50,700	
223	2015.06.25.	경복궁	68,000	
224	2015.07.06.	양말	4,000	
225	2015.07.09.	행운마트	27,540	
226	2015.07.21.	학급용품	24,220	
227	2015.08.01.	요리샤브샤브	42,000	
228	2015.08.06.	피에스타치코	101,300	
229	2015.08.10.	설악추어탕	32,500	
230	2015.08.11.	행운마트	42,490	
231	2015.08.30.	해물찜	48,000	
232	2015.08.31.	바나나	2,980	
233	2015.08.31.	바이오플레인	3,250	
234	2015.08.31.	제주감귤	7,740	
235	2015.09.03.	풍림마트	11,500	
236	2015.09.04.	이마트연수점	134,890	
237	2015.09.14.	컵라면	4,450	
238	2015.09.14.	사발면	4,450	

239	2015.09.19.	아서원	33,500	
240	2015.09.21.	토지육계	12,000	
241	2015.09.23.	메모리폼가든러외	44,950	
242	2015.09.23.	새우탕큰사발	2,850	
243	2015.09.23.	참깨컵라면	950	
244	2015.09.23.	신라면	750	
245	2015.09.23.	약과	3,000	
246	2015.09.23.	스시로연수점	23,800	
247	2015.09.26.	스시로	23,800	
248	2015.10.05.	바나나	3,980	
249	2015.10.05.	팝핑칩스	2,000	
250	2015.10.13.	동원꽁치	3,960	
251	2015.10.13.	팝핑칩스	2,000	
252	2015.10.13.	돼지카레용	2,990	
253	2015.10.13.	돼지카레용	2,930	
254	2015.10.13.	뱃자반	9,800	
255	2015.10.13.	콩나물	1,210	
256	2015.10.22.	이마트연수점	93,700	
257	2015.10.23.	아이스크림	3,840	
258	2015.10.23.	도시락김외	12,760	
259	2015.10.23.	설악추어탕	21,000	
260	2015.10.23.	포메인송도점	21,000	
261	2015.10.23.	산들정원	39,000	
262	2015.10.25.	라면외	4,850	
263	2015.10.25.	김밥마을	12,000	
264	2015.10.28.	교사회식(우리가본집)	105,000	
265	2015.11.12.	홈플러스	113,780	
266	2015.11.12.	설악추어탕	7,000	
267	2015.11.14.	미스터쭝	52,000	
268	2015.11.19.	지마트	14,430	
269	2015.12.02.	한국종합유통	40,000	

270	2015.12.28.	스시로연수점	23,800	
271	2016.01.02.	롯데마켓	7,970	
272	2016.01.16.	밥맛나는세상	20,000	
273	2016.01.19.	행운마트	46,150	
274	2016.01.28.	이마트	81,350	
275	2016.01.30.	설악추어탕	17,000	
276	2016.02.02.	이마트	138,040	
277	2016.02.04.	롯데마켓	9,970	
278	2016.02.06.	이마트	112,710	
279	2016.02.18.	트라이	70,000	
280	2016.02.25.	꿀호떡	6,760	
281	2016.02.25.	척아이롤	23,350	
282	2016.02.25.	모듬어묵	5,480	
283	2016.02.25.	건표고	17,680	
284	2016.02.25.	홍합	6,980	
285	2016.02.25.	에너지바	9,580	
286	2016.02.25.	치즈케익	13,980	
287	2016.02.28.	홈마트	65,000	
288	2016.03.26.	파프리카외	208,350	
289	2016.03.26.	교사식사(스시로)	59,300	
290	2016.05.06.	카누아메리카외	128,450	
291	2016.05.06.	유한락스외	42,860	
292	2016.05.11.	사발면외	11,180	
293	2016.05.15.	식품	37,670	
294	2016.05.15.	식품	8,600	
295	2016.05.29.	삼다수외	72,340	
296	2016.06.08.	교사식비	18,000	
297	2016.06.29.	후레쉬모짜렐라외	86,080	
298	2016.07.15.	맥심모카골드	6,500	
299	2016.08.01.	삼다수외	19,790	
300	2016.08.13.	교사회식	41,000	

301	2016.08.21.	저울외	53,750	
302	2016.08.24.	교사연수식비	21,000	
합 계			24,183,250	

[붙임 4]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공공요금 연체료)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	전화	107	
2	2013.03	사학연금	1,000	
3	2013.04	전화	105	
4	2013.05	전화	114	
5	2013.06	전화	114	
6	2013.07	전화	109	
7	2013.08	전화	104	
8	2013.09	전화	53	
9	2013.10	전화	67	
10	2013.11	전화	104	
11	2013.12	전화	104	
12	2013.12	사학연금	400	
13	2014.01	전화	104	
14	2014.02	전화	104	
15	2014.03	전화	104	
16	2014.04	전화	104	
17	2014.04	도시가스	131	
18	2014.05	전화	104	
19	2014.06	전화	109	
20	2014.07	전화	107	
21	2014.08	전화	104	
22	2014.09	전화	106	
23	2014.10	전화	106	
24	2014.10	사학연금	680	

25	2014.11	전화	106	
26	2014.12	전화	123	
27	2015.01	전화	104	
28	2015.01	사학연금	520	
29	2015.02	전화	104	
30	2015.03	전화	104	
31	2015.04	전화	104	
32	2015.05	전화	104	
33	2015.05	사학연금	420	
34	2015.06	전화	104	
35	2015.08	전화	114	
36	2015.10	전화	104	
37	2015.12	전화	104	
38	2015.12	사학연금	550	
39	2016.01	전화	104	
40	2016.03	전화	114	
41	2016.04	전화	125	
42	2016.05	전화	478	
43	2016.06	전화	421	
44	2016.07	인터넷	460	
합 계			8,611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노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노벨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원장 ▲▲▲외 5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노벨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연말정산 신고액 (13.급여)	연구비 신고액 (18-4.연구)	연말정산 정당 신고액 (13.급여)	연말정산 정당 신고액 (14.상여)	연말정산 정당 신고액 (18-4.연구)
	68,475,000	1,400,000	70,075,000	6,800,000	1,400,000
	21,631,800	2,368,200	21,631,800	200,000	2,368,200
	21,743,400	2,400,000	21,343,400	200,000	2,400,000
	15,526,000	1,000,000	15,726,000	1,800,000	1,200,000
	15,583,800	2,000,000	15,583,800	200,000	2,000,000
	7,500,000	1,400,000	7,500,000	500,000	1,400,000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노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노벨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노벨유치원 원장 ▲▲▲

[붙임 1] 잘못된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잘못 집행과목	정당 집행과목
1	2014.03.08.	교사식사	13,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	2014.03.15.	교사식사	83,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	2014.05.10.	교사식사	2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	2015.03.10.	교사식대	9,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	2015.03.12.	교사식대	2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6	2015.03.12.	원아부모님선물	38,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7	2015.04.04.	교사식대	6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8	2015.04.07.	교사식대	96,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9	2015.04.09.	교사식대	41,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0	2015.04.13.	교사식대	1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1	2015.04.18.	교사식대	72,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2	2015.04.20.	교사식대	11,8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3	2015.05.01.	교사회식	133,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4	2015.05.06.	교사식대	69,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5	2015.05.07.	교사회식	92,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6	2015.05.11.	교사식대	8,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7	2015.05.12.	교사식대	2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8	2015.05.13.	교사식대	22,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9	2015.05.17.	교사식대	30,1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0	2015.05.19.	교사식대	37,9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1	2015.05.20.	교사식대	19,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2	2015.05.23.	교사식대	37,4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3	2015.05.29.	교사간식 및 식대	43,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4	2015.06.02.	교사간식	25,8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5	2015.06.10.	교사식대	4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6	2015.06.11.	교사식대	18,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7	2015.06.16.	교사식대	2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8	2015.06.19.	교사식대	28,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9	2015.06.20.	교사식대	50,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0	2015.06.25.	교사회식	68,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1	2015.07.05.	교사식대	7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2	2015.07.06.	교사간식	98,96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3	2015.07.08.	교사식대	12,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4	2015.07.11.	교사식대	2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5	2015.07.16.	교사회식	47,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6	2015.07.23.	교사회식	234,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7	2015.08.01.	교사식대	42,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8	2015.08.06.	교사식대	101,3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9	2015.08.22	교사식대	22,2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0	2015.08.26.	교사식대	18,8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1	2015.08.28.	교사식대	27,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2	2015.10.25.	교사회식외	189,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3	2015.11.20.	교사식대	17,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4	2015.12.04.	교사식대	17,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5	2015.12.18.	교사회식	77,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6	2015.12.23.	교사식대	40,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7	2016.02.19.	교사식대	2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8	2016.02.19.	교사간식	15,8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9	2016.02.22.	교사식대	24,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0	2016.02.23.	교사회식	96,4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1	2016.02.25.	교사식대	24,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합계			**2,504,260**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043,691원
수감기관	세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세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 7.~2015. 11.	개인차량 주유대금외	617,000	
2	2013. 3.~2016. 7.	공공요금 연체료 등	2,261	
3	2013. 4.~2015. 9.	기타(목적외)	424,430	
합 계			1,043,691	

붙임 1.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외)
2.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공공요금 연체료)
3.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기타 목적외)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u>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1,043,691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u>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세종유치원 원장 ▲▲▲

[붙임 1]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주유대금)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7.03.	주유대금	50,000	
2	2013.07.17.	주유대금	70,000	
3	2014.05.14.	주유대금	60,000	
4	2014.09.19.	주유대금	40,000	
5	2014.10.26.	주유대금	70,000	
6	2014.11.09.	주유대금	50,000	
7	2015.10.01.	주유대금	67,000	
8	2015.10.15.	주유대금	70,000	
9	2015.11.02.	주유대금	70,000	
10	2015.11.17.	주유대금	70,000	
합 계			617,000	

[붙임 2]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공공요금 연체료)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	도시가스	395	
2	2013.04	도시가스	1,109	
3	2013.08	도시가스	87	
4	2013.08	사학연금	210	
5	2016.07	인터넷	460	
합 계			2,261	

[붙임 3] ■■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기타)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4.04.	베이글외	17,750	내역없음
2	2013.04.10.	홈플러스	80,510	내역없음
3	2013.05.21.	식대	12,000	12시
4	2013.05.24.	홈플러스	46,750	내역없음
5	2013.05.31.	홈플러스	32,410	내역없음
6	2013.05.31.	식대	40,000	13시
7	2013.06.11.	카스캔	7,680	
8	2013.06.11.	좋은느낌 날개 중형	9,300	
9	2013.06.20.	하이트캔	7,660	
10	2013.07.25.	홈플러스	92,930	내역없음
11	2015.06.26.	홈플러스	49,960	훈제오리외
12	2015.07.25.	BIG 바캉스 도시락	6,980	
13	2015.09.09.	송주불냉면(14시)	20,500	14시
합 계			424,430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세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세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원장 ▲▲▲외 1명의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세종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연말정산 신고액 (13.급여)	연구비 신고액 (18-4.연구)	연구비 신고액 (18-2.보육)	연말정산 정당 신고액 (13.급여)	연구비 정당 신고액 (18-4.연구)	연구비 정당 신고액 (18-2.보육)
	30,424,000	2,400,000	200,000	33,024,000	2,400,000	200,000
	30,200,000	2,400,000		32,600,000	2,400,000	

일련번호	10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세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세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2.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3.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조치할 사항

■■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세종유치원 원장 ▲▲▲

[붙임 1] 잘못된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잘못 집행과목	정당 집행과목
1	2014.03.13.	교사식대	27,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2	2014.03.18.	교사식대	82,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3	2014.03.24.	교사식대	22,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4	2014.04.29.	출산선물	20,7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5	2014.05.01.	교사식대	26,5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6	2014.05.09.	교사간식	31,6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7	2014.06.27.	교사식대	73,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8	2014.09.01.	학부모선물	379,65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9	2014.12.26.	교사회식	198,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0	2015.01.31.	교직원선물	306,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1	2015.05.27.	원장회의	180,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2	2015.06.12.	커피	29,32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3	2015.07.19.	커피	21,8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4	2015.07.25.	상품권	500,000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15	2016.04.03.	교사간식	11,730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합계			1,909,800		

[붙임 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수
급식비	38,105,000	54,232,180	-16,127,180	27,981,000	33,445,780	-5,464,780	24,3
특성화교육비	30,889,270	32,321,660	-1,432,390	24,191,000	23,705,820	485,180	16,6
합 계	68,994,270	86,553,840	-17,559,570	52,172,000	57,151,600	-4,979,600	40,9

일련번호	1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세종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사회보험 미가입
관계기관 세종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3.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직원 해승☆와 2016. 9. 8.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감사당일(2016. 9. 30.)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유치원장은 향후 사회보험 관련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자인 교직원의 사회보험을 가입**하시어 교직원 복지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세종유치원 원장 ▲▲▲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2016년도 제6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2016. 1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2016년도 제6차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기관명	처분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경고	주의	소계		
은아유치원	3	2	3	5	0	2,285,133
은별유치원	3	0	3	3	0	564,090
유원유치원	3	1	2	3	0	1,641,783
합 계	9	3	8	11	0	4,491,006

2. 유치원별 지적사항 및 처분(안)

<table>
<tr><th>기관명</th><th>지적건명</th><th>지 적 사 항</th><th>처분(안)</th></tr>
<tr><td>은아</td><td>예산의 목적외 사용</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 유류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
<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
<tr><td>1</td><td>2013.3.~2016.6.</td><td>개인 유류비 등</td><td>2,270,200</td></tr>
<tr><td>2</td><td>2013.4.~2016.4.</td><td>연체료등</td><td>14,933</td></tr>
<tr><td colspan="3">합 계</td><td>2,285,133</td></tr>
</table></td><td>“시정(회수)”
2,285,133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교직원 상여금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등 연말정산 착오 신고 함.</td><td>“시정”
“주의 요구”</td></tr>
<tr><td></td><td>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②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td><td>“주의 요구”</td></tr>
<tr><td>은별</td><td>예산의 목적외 사용</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연체료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
<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
<tr><td>1</td><td>2013.3.~2016.4.</td><td>후원금 외</td><td>505,900</td></tr>
<tr><td>2</td><td>2013.3.~2016.6.</td><td>연체료 외</td><td>58,19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564,090</td></tr>
</table></td><td>“시정(회수)”
564,090원
“주의 요구”</td></tr>
<tr><td></td><td>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교직원 상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등 연말정산 착오 신고 함.</td><td>“시정”
“주의 요구”</td></tr>
</table>

<table>
<tr><th>기관명</th><th>지적건명</th><th>지 적 사 항</th><th>처분(안)</th></tr>
<tr><td></td><td>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②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③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td><td>“주의 요구”</td></tr>
<tr><td>유원</td><td>예산의 목적외 사용</td><td>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주유대금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
<table>
<tr><th>연번</th><th>지출일자(기간)</th><th>적 요</th><th>금 액(원)</th></tr>
<tr><td>1</td><td>2013.12.~2016.7.</td><td>공공요금 연체료</td><td>301,293</td></tr>
<tr><td>2</td><td>2013.5.~2016.9.</td><td>축의금 외</td><td>1,340,49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641,783</td></tr>
</table></td><td>“시정(회수)”
1,641,783원
“경고 요구”</td></tr>
<tr><td></td><td>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교직원 ■■■외 2인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부담 사회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함.</td><td>“시정”
“주의 요구”</td></tr>
<tr><td></td><td>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td><td>다음과 같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①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②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td><td>“주의 요구”</td></tr>
</table>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2,285,133원
수감기관	은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은아유치원
내 용

은아유치원 원장 ◆◆◆는 2013. 03. 12.부터 2013. 06. 30.까지, 원장 ▲▲▲은 2013. 07.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아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 유류비 등을 붙임과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1	2013.3.~2016.6.	개인 유류비 등	2,270,200
2	2013.4.~2016.4.	연체료등	14,933
합 계			2,285,133

붙임 1. 예산의 목적외(개인유류비 등) 사용내역
2. 예산의 목적외(연체료 등) 사용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은아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2,285,133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 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퇴직불문)
① 은아유치원 원장 ◆◆◆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은아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 목적외(개인 유류비 등) 지출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03.28.	주유비(휘발유)	70,000	공통운영비
2	2013.04.30.	주유비(휘발유)	50,000	공통운영비
3	2013.04.30.	주유비(휘발유)	50,000	공통운영비
4	2013.05.31.	주유비(휘발유)	200,000	공통운영비
5	2014.08.19.	코스트코연회비	30,000	교수학습활동비
6	2015.08.13.	주유비(휘발유)	80,000	업무추진비
7	2015.08.24.	주유비(휘발유)	80,000	공통운영비
8	2015.10.06.	주유비(휘발유)	90,000	업무추진비
9	2015.11.16.	주유비(내역없음)	50,000	공통운영비
10	2015.11.23.	주유비(휘발유)	80,000	공통운영비
11	2015.12.01.	주유비(휘발유)	80,000	업무추진비
12	2015.12.17.	교사회식교통비	11,800	공통운영비
13	2015.12.21.	주유비(내역없음)	80,000	공통운영비
14	2016.01.14.	업무상손상치료비, BBB	140,100	의료비
15	2016.03.03.	주유비(휘발유)	86,000	공통운영비
16	2016.03.07.	견학차량비(CCC)	300,000	교수학습활동비
17	2016.05.02.	교사치료비	43,300	학생복리비
18	2016.06.21.	주유비(목적외)	69,000	공통운영비
19	2016.06.30.	재능기부	680,000	특성화교육비
합 계			2,270,200	

[붙임 2] 예산 목적외(연체료 등) 지출 목록

연번	연체료 납입월	건명(연체료)	금액(원)	비고
1	2013.04	수도	510	
2	2013.04	도시가스	3,527	
3	2013.06	도시가스	1,868	
4	2013.07	도시가스	1,705	
5	2013.07	수도	1,480	
6	2014.02	수도	1,220	
7	2014.02	도시가스	2,113	
8	2014.04	수도	650	
9	2016.04	수도	1,860	
합 계			14,933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은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은아유치원
내 용

은아유치원 원장 ▲▲▲은 2013. 07.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아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은아유치원장은 **원장 ▲▲▲외 23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은아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연말정산 신고액	연말정산 정당 신고액	차액 (추가 신고)
	85,716,800	93,916,800	8,200,000
	46,407,640	52,907,640	6,500,000
	18,126,200	19,126,200	1,000,000
	18,126,200	19,126,200	1,000,000
	19,327,900	20,277,900	950,000
	2,900,800	3,100,800	200,000
	18,539,900	18,939,900	400,000
	25,006,000	26,006,000	1,000,000
	22,331,500	22,831,500	500,000
	4,831,000	5,431,000	600,000
	23,159,900	23,659,900	500,000
	9,683,680	9,783,680	100,000
	32,991,500	29,362,300	− 3,629,200
	19,062,800	19,262,800	200,000
	14,377,100	14,577,100	200,000
	13,626,600	13,826,600	200,000
	14,726,600	14,926,600	200,000
	13,626,600	13,826,600	200,000
	13,626,600	13,826,600	200,000
	16,726,600	18,926,600	2,200,000
	14,726,600	14,926,600	200,000
	18,150,800	18,350,800	200,000
	16,709,900	16,909,900	200,000
	6,300,000	6,864,800	564,80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은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은아유치원
내 용

은아유치원 원장 ◆◆◆는 2013. 03. 12.부터 2013. 06. 30.까지, 원장 ▲▲▲은 2013. 07.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아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함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2.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건명	세금계산서 발급일	지출일	금액(원)
홈페이지 수수료	2014.04.01.	2016.03.03.	178,200
합 계			178,200

조치할 사항

은아유치원장은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퇴직불문)
① 은아유치원 원장 ◆◆◆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은아유치원 원장 ▲▲▲

[붙임 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05.10.	기사님식대	124,500	공통운영비
2	2014.04.09.	식비	20,000	교수학습활동비
3	2014.12.02.	교사간식	66,750	급식비
4	2014.07.03.	과자외간식	23,850	급식비
5	2014.07.03.	음료수	12,850	급식비
6	2014.06.03.	교사MT간식	305,130	교수학습활동비
합 계			553,080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564,090원
수감기관	은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은별유치원
내 용

은별유치원 원장 ☆☆☆는 2009. 05. 26.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별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후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5.~2016.4	후원금 외	505,900	
2	2013.3.~2016.6.	연체료 외	58,190	
합 계			564,090	

붙임 1. 은별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후원금 외)
2. 은별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연체료 외)

조치할 사항 “시정”

은별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564,09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은별유치원 원장 ☆☆☆

[붙임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후원금 외)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5.13.	축의금(AA유치원)	100,000	
2	2013.06.28.	복지회후원	30,000	
3	2013.10.28.	복지회후원	20,000	
4	2014.05.23	축의금(BBCC참빛결혼)	100,000	
5	2014.05.23.	교원치료비	10,900	
6	2014.06.12.	부의금(DD원장부친)	100,000	
7	2014.12.24.	과태료/EEE	20,000	
8	2015.02.17.	명절선물(앞집)	35,000	
9	2016.04.21.	LED공사 차액	90,000	
합 계			505,900	

[붙임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연체료 외)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3	사학연금	3,140	
2	2014.03	사학연금	4,560	
3	2014.04	국민연금	49,980	
4	2014.04	수도요금	410	
5	2016.06	국민연금	100	
합 계			58,190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은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은별유치원
내 용

은별유치원 원장 ☆☆☆는 2009. 05. 26.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와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별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조치할 사항 “시정”

은별유치원장은 **원장 ☆☆☆외 13명의 상여금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신고**하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은별유치원 원장 ☆☆☆

[붙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내역

성명	연말정산 신고액	정당신고액	연말정산 신고차액 (추가·감액 신고)
	29,582,500	33,382,500	3,800,000
	22,583,400	23,183,400	600,000
	21,179,000	21,479,000	300,000
	2,830,600	2,980,600	150,000
	14,510,850	14,694,400	183,550
	21,928,500	22,228,500	300,000
	3,578,200	3,728,200	150,000
	55,700,000	58,000,000	2,300,000
	3,488,000	3,638,000	150,000
	17,527,400	17,827,400	300,000
	15,377,000	15,527,000	150,000
	3,514,540	4,414,540	900,000
	10,200,000	16,200,000	6,000,000
	10,101,880	10,251,880	150,000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은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은별유치원
내 용

은별유치원 원장 ☆☆☆는 2009. 05. 26.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비 등 유치원의 기본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교직원 협의회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다.

○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별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업무추진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
   (※ 붙임1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목록 참조)
2.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3.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은별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은별유치원 원장 ☆☆☆

[붙임 1] 업무추진비, 공통운영비를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지출한 내역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집행과목
1	2013.03.07.	손님접대시 식대	80,000	공통운영비
2	2014.06.23.	교사 아침식사	22,000	공통운영비
3	2014.10.13.	커피믹스	15,580	공통운영비
4	2016.01.12.	모카골드외	34,870	공통운영비
5	2016.07.21.	고농축 액체세제 외	13,900	교수학습활동비
합계			166,350	

[붙임 2]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특성화활동비 (특별활동비)	15,461,250	15,594,240	132,990	20,049,500	20,414,700	365,200	46
현장학습비	38,559,467	38,729,467	170,000	27,839,500	27,876,830	37,330	22
급식비	55,845,360	58,594,450	2,749,090	50,393,800	58,465,969	8,072,169	46
차량운영비			0			0	9
교재비및재료비	29,228,133	29,393,500	165,367	35,293,100	35,293,100	0	39
기타(원복비외)	1,746,000	1,746,000	0	2,673,000	2,673,000	0	
합 계	**140,840,210**	**144,057,657**	**3,217,447**	**136,248,900**	**144,723,599**	**8,474,699**	**164**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1,641,783원
수감기관	유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경고 요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유원유치원
내 용

유원유치원 원장 ◆◆◆은 1998.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르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원유치원에서는 설립자 또는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 등을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연번	지출일자(기간)	적 요	금 액(원)	비 고
1	2013. 12.~2016. 7.	연체료 외	301,293	
2	2013. 5.~2016. 9.	축의금 외	1,340,490	
합 계			1,641,783	

붙임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연체료 외)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축의금 외)

조치할 사항 “시정”

유원유치원장은 **예산의 목적외로 지출한 1,641,783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경고 요구”

① 유원유치원 원장 ◆◆◆

[붙임 1] 유원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연체료 외)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12.	사회보험료	12,860	
2	2014.01.	사회보험료	12,860	
3	2014.03.	사회보험료	18,740	
4	2014.04.	사회보험료	163,260	
5	2014.05.	전화	625	
6	2015.06.	사회보험료	8,700	
7	2015.06.	사회보험료	28,980	
8	2015.10.	전화	987	
9	2015.10.	전화	141	
10	2016.03.	사회보험료	7,020	
11	2016.04.	사회보험료	17,120	
12	2016.04.	수도	720	
13	2016.06.	사회보험료	8,210	
14	2016.06.	사회보험료	5,870	
15	2016.07.	사회보험료	15,200	
합 계			301,293	

[붙임 2] 유원유치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축의금 외)

연번	지출일	건명	금액(원)	비고
1	2013.05.14.	AA유치원 결혼축의금	100,000	
2	2013.05.21.	결혼축의금(솔빛유치원)	100,000	
3	2013.07.09.	결혼축의금	100,000	

4	2013.11.07.	결혼축의금(****)	50,000	
5	2013.11.18.	부의금(BB)	50,000	
6	2014.05.16.	축의금(CC유치원)	50,000	
7	2014.06.12.	부의금(DD유치원)	50,000	
8	2015.01.06.	부의금(GG유치원)	100,000	
9	2015.03.09.	■■유치원　부의금	100,000	
10	2015.03.20.	축의금	100,000	
11	2015.04.23.	축의금(KK유치원)	100,000	
12	2015.05.16.	축의금(TT유치원)	100,000	
13	2015.06.25.	부의금(▲▲▲)	100,000	
14	2015.08.19.	범칙금	32,000	
15	2015.11.02.	PP유치원　축의금	100,000	
16	2016.08.26	핸드폰　수리비	105,000	
17	2016.09.19	환경부담금(7*구**0*)	3,490	
합　　계			1,340,490	

일련번호	8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교직원 급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유원유치원
내 용

유원유치원 원장 ◆◆◆은 1998.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3조(보험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유원유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금 중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교직원의 급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교직원 사회보험 가입 및 본인부담금 공제 현황

성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일	공제여부	가입일	공제여부	가입일	공제여부
	2015.03.03.	○	2016.01.01.	X	2016.01.01.	X
	2015.10.06.	○	2015.10.06.	X	2015.10.06.	X
	2016.01.01.	X	대상아님	-	대상아님	-

조치할 사항 "시정"

유원유치원장은 **교사 ■■■ 외 2명의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유원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9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행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	회신기일	2016.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유원유치원
내 용

유원유치원 원장 ◆◆◆은 1998. 03. 01.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유원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1.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도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타 비목에서 보전함
(※ 붙임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2.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유원유치원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회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항 "주의 요구"

① 유원유치원 원장 ◆◆◆

[붙임 1] 수익자부담교육비 세입·세출 현황

구 분	2015년도		
	수입	지출	잔액
급식비	26,120,300	26,432,430	- 312,130
현장학습비	5,910,000	10,095,000	- 4,185,000
특별활동비	11,000,000	0	11,000,000
합 계	43,030,300	36,527,430	6,502,870

2017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하늘유치원, 송현유치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Incheon Nambu Office of Education

[학교운영지원과]

목 차

Ⅰ. 감사 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1
3. 감사 인원 ····· 1
4. 감사 중점사항 ····· 2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2

Ⅲ. 감사 결과 ····· 2

1. 처분심의회 개최 ····· 2
2. 지적사항 총괄 ····· 3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3

1. 처분사항 일람표 ····· 3
1-1. 신분상 처분 명세 ····· 4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4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5~18
2. 현지조치사항 명세 ····· 19~31

2017년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하늘유치원, 송현유치원)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사립유치원 회계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유치원 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연번	감사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 범위	비고
1	하늘유치원	2017. 6. 7. ~ 6. 9.(3일)	회계운영 전반	
2	송현유치원	2017. 6. 7. ~ 6. 9.(3일)		
계	2개원	6일		

3. 감사 인원

대상기관명	감사반		소계
	감사반장	감사반원	
하 늘 유 치 원			3명
송 현 유 치 원			3명
계	2명	4명	6명

4. 감사 중점사항

○ 유치원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지원금 사용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

○ 금고 확인 등 기타 감사사항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학급, 명)

감사 대상기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하 늘 유 치 원	3	64	14	
송 현 유 치 원	7	147	19	
계	10	211	33	

Ⅲ 감사 결과

1. 처분심의회 개최

○ 일　　시: 2017. 7. 26.(수) 10:00~11:30

○ 장　　소: 소회의실(4층)

○ 참석인원: 처분심의회 위원 7명

○ 안　　건: 감사결과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분(안) 결정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명, 건,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현지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기관경고	시정	시정		변상	계	
							회수	추급			
하늘유치원		1		1	1						3
송현유치원			4	4		2	9,221			9221	3
계		1	4	5	1	2	9,221			9,221	6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처분 사항 일람표

(단위: 명, 건, 천원)

감사 대상기관	연번	지적건명	감사자 처분 의견					비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구분	인원		구분	금액	
하늘유치원	1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부적정	경고요구	1	기관경고			
	소계	1건	경고요구	1	1			
송현유치원	1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2	시정	회수	4,844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2	시정	회수	4,377	
	소계	2건	주의요구	4	시정 2	회수	9,221	
합 계		3건	경고요구 주의요구	1 4	기관경고 1 시 정 2	회수	9,221	

1-1. 신분상 처분 명세

연번	기관명	지적건명	처분안(감사자 의견)				비고
			조치양정	현소속	직급	성명	
1	하늘유치원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부적정	경고요구	퇴직	원 장	□□□	퇴직 불문
2	송현유치원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송현유치원	원 장	■■■	
			주의요구	송현유치원	교 사	▲▲▲	
3	송현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요구	송현유치원	원 장	■■■	
			주의요구	송현유치원	교 사	▲▲▲	
계		3건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감사 대상기관	일련 번호	제목	조치사항	비고
하늘유치원 (3건)	1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현지주의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연체료)	현지시정 회수 394,435원	
	3	교직원 4대 보험 미가입	현지시정	
송현유치원 (3건)	1	연말정산 업무 부적정	현지시정	
	2	유치원 회계 운영 부적정	현지시정	
	3	교직원 4대 보험 미가입	현지시정	
계			현지시정(주의) 6건 회수 394,435원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하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기관경고

제 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부적정

관 계 기 관 하늘유치원

내 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창의인성교육지원과-3157호, 2014.2.20.)에 따르면 유치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유치원의 장은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이외에는 수입 장부(징수부, 개인별 수납부) 및 관련 증빙 서류(징수결의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불납결손처분결의서, 수입일계표, 은행 영수필통지서, 통장)와 지출 장부(현금출납부, 지출부) 및 관련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계약관련 서류)를 각각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늘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회계장부 및 서류의 내용이 전산화되지 않은 2014.03.01.~2015.02.28.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 지원금 198,021,540원을 포함하여 총 289,813,287원을 [표]와 같이 집행하면서, 현금출납부, 지출부, 징수부만 작성하여 비치하고 수입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 지출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014학년도 하늘유치원 회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금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등 (B)	합 계 (C=A+B)
	누리과정지원 (유아학비지원)	야간돌봄 지원금	운영비 지원금	소 계 (A)		
금 액	177,221,540	10,000,000	10,800,000	**198,021,540**	91,791,747	**289,813,287**

※ 하늘유치원 결산액(289,813,287원) 대비 **68.3%**(198,021,540원) 지원

조치할 사항

【기관경고】 하늘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관련자에게 경고를 요구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요구”

① 하늘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4,843,680원
수감기관	송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시정

제 목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송현유치원

내 용

송현유치원 원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4. 3. 1. ~ 현재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보험관리 기준」(학교운영지원과-4960호, 2017.4.21.)에 따르면 2014. 5. 19.이후 사립유치원에서 가입한 수익형 보험을 포함한 모든 만기 환급형 보험 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 하도록 하되, 이미 유치원 회계를 통해 납입한 납입보험료 중 '보장보험료(기본 보험료)' 부분은 세입조치 금액에서 제외하고 단순 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 부분은 계약 해지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2014. 5. 19. 이후 보험가입 시 보험 가입자(계약자)를 유치원, 대상자(피보험인)를 유치원·교직원·원아, 수익자(수령인)를 유치원으로 하고, 가입기간 및 보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한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부분 또는 전액 적립되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적립식 수익형 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송현유치원에서는 2015. 7. 9.에 ☆☆해상 무배당 퍼팩트가드 재산종합보험(만기 환급형)을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송현유치원, 피보험자를 원장 ■■■, 수익자를 사망 시 법정상속인, 만기 시 송현유치원, 기타 ■■■으로 하여 가입(2018. 7. 9. 만기)하였고, 보험료 7,200,000원(월 300,000원×24회)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단순 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 4,843,68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보험 가입 현황

보험명	보험 기간	가입자 (계약자)	대상자 (피보험자)	수익자 (수령인)			보험료 사항 (단위: 원)				비고
				사망	만기	기타	보장 보험료	적립 보험료	합계 보험료	납입 기간	
☆☆해상 (무배당 퍼펙트가드 재산종합보험)	2015.7.9 ~ 2018.7.9	송현 유치원	■■■	법정 상속인	송현 유치원	■■■	98,180	201,820	300,000	전기납	3년 만기

조치할 사항 **송현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만기 환급형 보험료 납입금 4,843,680원을 회수하고

【주의 요구】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요구"

① 송현유치원 원장 ■■■

② 송현유치원 교사 ▲▲▲

<붙임>

환급형 보험료(☆☆해상) 납부 내역

(단위: 원)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1	2015.07.09.	7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	2015.08.10.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3	2015.09.25.	9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4	2015.10.20.	10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5	2015.11.25.	1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6	2015.12.28.	1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7	2016.01.25.	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8	2016.02.22.	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9	2016.03.10.	3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0	2016.04.20.	4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1	2016.05.10.	5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2	2016.06.10.	6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3	2016.07.11.	7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4	2016.08.10.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5	2016.09.12.	9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6	2016.10.20.	10월 유치원 종합	98,180	201,820	300,000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보험료				
17	2016.11.21.	1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8	2016.12.20.	1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19	2017.01.10.	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0	2017.02.20.	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1	2017.03.10.	3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2	2017.04.10.	4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3	2017.05.10.	5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24	2017.06.10.	6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98,180	201,820	300,000	
합 계			**2,356,320**	**4,843,680**	**7,200,000**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4,377,410원
수감기관	송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 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송현유치원

내　　용

송현유치원 원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4. 3. 1. ~ 현재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1]은 학교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송현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등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연체료(549,230원)는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비용임에도 유치원 회계를 통해 납부되었으며, <붙임 1 참조>

교직원 개인차량 유류비(휘발유), 설립자 개인차량 자동차세,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고용보험 과태료, 구민체육대회 참가비, 동구청 체육대회 후원금 등 총 34건 3,528,180원은 유치원 운영이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경비임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다.<붙임 2 참조>

또한 2015~2016학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단지 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공적이용료 과목을 신설하여 집행(55,600,000원)하였으며, 이후 일부를 반환(55,300,000원)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3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붙임 3 참조>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4,377,41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연번	구 분	금 액(원)	비 고
1	4대 보험료 및 공공요금 연체료	549,230	
2	예산의 목적 외 물품 구입 등등	3,528,180	
3	공적사용료	300,000	집행액(55,600,000원) 반환액(55,300,000원)
합 계		**4,377,410**	

붙임 1. 4대 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등 연체료 지급내역
2. 예산의 목적 외 물품 구입, 개인 차량 유류비 지급 등등 내역
3. 2015~2016학년도 공적사용료 지급 및 반환 내역

조치할 사항 **송현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4,377,410원을 회수하고,

【주의 요구】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요구"

① 송현유치원 원장 ■■■

② 송현유치원 교사 ▲▲▲

<붙임1>

4대 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등 연체료 납부내역

(단위: 원)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1	2014	2014.03	건강보험	6,530	공통운영비
2		2014.03	고용보험	170	공통운영비
3		2014.05	건강보험	47,370	공통운영비
4		2014.05	고용보험	1,210	공통운영비
5		2014.05	산재보험	1,160	공통운영비
6		2014.06	건강보험	13,100	공통운영비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7		2014.06	국민연금	4,820	공통운영비
8		2014.06	고용보험	2,660	공통운영비
9		2014.06	산재보험	980	공통운영비
10		2014.07	건강보험	13,100	공통운영비
11		2014.07	국민연금	17,210	공통운영비
12		2014.07	고용보험	1,200	공통운영비
13		2014.07	산재보험	600	공통운영비
14		2014.07	수도요금	6,610	공통운영비
15		2014.07	전기요금	1,896	공통운영비
16		2014.07	전기요금	541	공통운영비
17		2014.07	전기요금	315	공통운영비
18		2014.07	전기요금	336	공통운영비
19		2014.07	전기요금	412	공통운영비
20		2014.07	전기요금	1,137	공통운영비
21		2014.08	건강보험	13,100	공통운영비
22		2014.08	국민연금	20,260	공통운영비
23		2014.08	고용보험	1,200	공통운영비
24		2014.08	산재보험	600	공통운영비
25		2014.08	전기요금	194	공통운영비
26		2014.08	전기요금	2,618	공통운영비
27		2014.08	전기요금	816	공통운영비
28		2014.08	전기요금	438	공통운영비
29		2014.08	전기요금	423	공통운영비
30		2014.08	전기요금	646	공통운영비
31		2014.08	전기요금	1,535	공통운영비
32		2014.09	국민연금	7,610	공통운영비
33		2014.09	고용보험	1,200	공통운영비
34		2014.09	산재보험	600	공통운영비
35		2014.09	전기요금	197	공통운영비
36		2014.10	수도요금	5,400	공통운영비
37		2014.10	전기요금	2,094	공통운영비
38		2014.11	건강보험	6,130	공통운영비
39		2014.11	국민연금	12,790	공통운영비
40		2014.11	고용보험	8,400	공통운영비
41		2014.11	산재보험	5,080	공통운영비
42		2014.11	전기요금	1,915	공통운영비
43		2014.11	전기요금	439	공통운영비
44		2014.11	전기요금	1,485	공통운영비
45		2014.12	수도요금	1,660	공통운영비
46		2014.12	전기요금	356	공통운영비
47		2014.12	전기요금	6,424	공통운영비
48		2014.12	전기요금	487	공통운영비
49		2014.12	전기요금	316	공통운영비
50		2014.12	전기요금	497	공통운영비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51		2014.12	전기요금	975	공통운영비
52		2015.01	산재보험	2,250	공통운영비
53		2015.01	수도요금	1,490	공통운영비
54		2015.01	전기요금	1,177	공통운영비
55		2015.02	국민연금	2,060	공통운영비
56		2015.02	고용보험	3,690	공통운영비
57		2015.02	산재보험	2,390	공통운영비
58		2015.02	수도요금	3,890	공통운영비
59		2015.03	건강보험	13,280	공통운영비
60		2015.03	국민연금	20,260	공통운영비
61		2015.03	고용보험	4,750	공통운영비
62		2015.03	산재보험	2,390	공통운영비
63		2015.03	전기요금	681	공통운영비
2014학년도 합계				285,550	
64		2015.04	국민연금	1,930	공통운영비
65		2015.04	고용보험	2,480	공통운영비
66		2015.04	산재보험	1,250	공통운영비
67		2015.04	전기요금	494	공통운영비
68		2015.04	전기요금	546	공통운영비
69		2015.04	전기요금	1,674	공통운영비
70		2015.04	전기요금	289	공통운영비
71		2015.04	전기요금	3,730	공통운영비
72		2015.04	전기요금	5,549	공통운영비
73		2015.05	수도요금	3,060	공통운영비
74		2015.05	전기요금	1,493	공통운영비
75		2015.05	전기요금	126	공통운영비
76		2015.05	전기요금	919	공통운영비
77		2015.06	전기요금	299	공통운영비
78		2015.07	전기요금	526	공통운영비
79	2015	2015.07	전기요금	412	공통운영비
80		2015.07	전기요금	1,247	공통운영비
81		2015.08	전기요금	143	공통운영비
82		2015.09	건강보험	3,100	공통운영비
83		2015.09	국민연금	2,240	공통운영비
84		2015.09	산재보험	600	공통운영비
85		2015.09	전기요금	589	공통운영비
86		2015.09	전기요금	914	공통운영비
87		2015.10	건강보험	8,830	공통운영비
88		2015.10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89		2015.10	고용보험	550	공통운영비
90		2015.10	산재보험	600	공통운영비
91		2015.10	전기요금	490	공통운영비
92		2015.11	건강보험	3,270	공통운영비
93		2015.11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94		2015.11	고용보험	2,450	공통운영비
95		2015.11	산재보험	1,230	공통운영비
96		2015.11	전기요금	711	공통운영비
97		2015.12	건강보험	3,270	공통운영비
98		2015.12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99		2015.12	고용보험	2,450	공통운영비
100		2015.12	산재보험	1,230	공통운영비
101		2015.12	수도요금	1,720	공통운영비
102		2015.12	전기요금	470	공통운영비
103		2015.12	전기요금	498	공통운영비
104		2015.12	전기요금	1,101	공통운영비
105		2016.01	건강보험	3,270	공통운영비
106		2016.01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107		2016.01	고용보험	1,320	공통운영비
108		2016.01	산재보험	660	공통운영비
109		2016.01	수도요금	3,840	공통운영비
110		2016.01	전기요금	198	공통운영비
111		2016.01	전기요금	1,359	공통운영비
112		2016.02	건강보험	3,300	공통운영비
113		2016.02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114		2016.02	고용보험	1,320	공통운영비
115		2016.02	산재보험	650	공통운영비
116		2016.02	전기요금	133	공통운영비
117		2016.02	전기요금	11,603	공통운영비
118		2016.02	전기요금	1,729	공통운영비
119		2016.02	전기요금	2,229	공통운영비
120		2016.02	전기요금	3,096	공통운영비
121		2016.03	건강보험	3,300	공통운영비
122		2016.03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123		2016.03	고용보험	1,320	공통운영비
124		2016.03	산재보험	650	공통운영비
2015학년도 합계				129,397	
125		2016.04	건강보험	3,300	공통운영비
126		2016.04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127		2016.04	고용보험	1,320	공통운영비
128		2016.04	산재보험	650	공통운영비
129		2016.04	수도요금	2,080	공통운영비
130	2016	2016.04	전기요금	448	공통운영비
131		2016.04	전기요금	7,448	공통운영비
132		2016.04	전기요금	368	공통운영비
133		2016.04	전기요금	275	공통운영비
134		2016.04	전기요금	552	공통운영비
135		2016.04	전기요금	800	공통운영비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136		2016.05	건강보험	5,460	공통운영비
137		2016.05	국민연금	4,490	공통운영비
138		2016.05	수도요금	2,850	공통운영비
139		2016.05	전기요금	460	공통운영비
140		2016.06	건강보험	6,440	공통운영비
141		2016.06	국민연금	8,700	공통운영비
142		2016.06	고용보험	1,680	공통운영비
143		2016.06	산재보험	1,070	공통운영비
144		2016.07	건강보험	1,500	공통운영비
145		2016.07	국민연금	3,070	공통운영비
146		2016.07	산재보험	210	공통운영비
147		2016.09	건강보험	1,580	공통운영비
148		2016.09	국민연금	1,250	공통운영비
149		2016.09	고용보험	880	공통운영비
150		2016.09	산재보험	860	공통운영비
151		2016.09	수도요금	2,090	공통운영비
152		2016.10	건강보험	3,890	공통운영비
153		2016.10	국민연금	2,240	공통운영비
154		2016.10	고용보험	1,470	공통운영비
155		2016.10	산재보험	860	공통운영비
156		2016.10	전기요금	434	공통운영비
157		2016.10	전기요금	259	공통운영비
158		2016.10	전기요금	671	공통운영비
159		2016.11	건강보험	4,040	공통운영비
160		2016.11	국민연금	4,870	공통운영비
161		2016.11	고용보험	2,350	공통운영비
162		2016.11	산재보험	1,290	공통운영비
163		2016.11	전기요금	4,750	공통운영비
164		2016.11	전기요금	214	공통운영비
165		2016.11	전기요금	547	공통운영비
166		2016.12	건강보험	2,580	공통운영비
167		2016.12	국민연금	2,910	공통운영비
168		2016.12	고용보험	1,770	공통운영비
169		2016.12	산재보험	1,010	공통운영비
170		2016.12	수도요금	2,240	공통운영비
171		2016.12	전기요금	218	공통운영비
172		2017.01	전기요금	3,170	공통운영비
173		2017.01	전기요금	558	공통운영비
174		2017.03	건강보험	9,610	공통운영비
175		2017.03	국민연금	10,430	공통운영비
176		2017.03	고용보험	3,170	공통운영비
177		2017.03	산재보험	2,340	공통운영비
178		2017.03	전기요금	1,307	공통운영비
179		2017.03	전기요금	764	공통운영비

연번	학년도	납 부 월	적 요	납 부 액	비고
2016학년도 합계				134,283	
총 계				**549,230**	

<붙임2>

예산의 목적 외 물품 구입, 개인 차량 유류비 지급 등등 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급액	비고
1	2014.03.07	졸업식 선물 구입	512,500	교직원 의류(프랑스 여성 브랜드 등) 구입
2	2014.03.07	운영물품 거래대금	12,000	커피, 콜라, 화장솜 등
3	2014.03.07	식자재 거래대금	57,440	커피 등
4	2014.03.12	근조화환	97,000	대상 미확인
5	2014.03.21	식자재 거래대금	38,220	커피,레몬에이드 1개, 비프베이크2개
6	2014.03.21	주유비	59,000	휘발유
7	2014.03.24	푸드아트수업 재료비	18,800	커피 등
8	2014.03.24	통원차량 유류비	290,500	휘발유
9	2014.04.01	식자재 거래대금	32,960	복사용지
10	2014.04.11	방과후반 간식	76,110	커피,콜라,건전지,파라다이스호텔 로비 이용
11	2014.04.15	원아 도서 구입	7,000	성인용 도서(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구입
12	2014.05.02	교사 간담회비 식사비	120,000	내역 없음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급액	비고
13	2014.05.16	근조 화환 구입	83,700	대상 미확인
14	2014.05.21	식자재	8,230	박카스 등
15	2014.05.21	통원차량 유류비	108,000	휘발유
16	2014.06.30	5496자동차세	259,350	설립자 개인차량
17	2014.08.14	식자재 거래대금	4,400	사이다, 콜라
18	2014.08.25	통원차량 유류비	50,000	휘발유
19	2014.08.25	교사 업무회의시 식사비	26,680	1인 식사, 물병 구입
20	2014.08.25	마켓놀이 수업 재료 거래대금	43,520	커피 등
21	2014.08.26	교사 업무회의시 식사비	32,000	1인 식사
22	2014.08.26	식자재 거래대금	176,390	커피 등
23	2014.08.26	화장지외 물품 거래대금	3,000	콜라
24	2014.09.29	오후 간식 거래대금	4,000	커피 등
25	2014.12.08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75,000	
26	2014.12.24	푸드아트수업 재료비	4,780	삼각김밥 등
27	2014.12.24	방과후반 간식 거래대금	19,480	커피 등
28	2014.12.24	야채외 식자재 거래대금	72,120	핸드캐리어 등
29	2015.02.24	물품 구입	96,000	내역 미확인
30	2015.05.01	김란희 경조사비	100,000	대상 미확인
31	2015.06.29	중부서발전위원회 회비	300,000	
32	2015.06.30	고용보험료 과태료	40,000	
33	2015.09.03	구민체육대회 참가비	100,000	
34	2016.09.05	동구청 체육회 후원금	600,000	
합 계			**3,528,180**	

<붙임3>

2015~2016학년도 공적사용료 지급 및 반환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지급		반환		미반환액 (A-B)	비고
	일자	금액 (A)	일자	금액 (B)		
2015	2015.03.31.	2,300,000				
	2015.05.01.	2,300,000				
	2015.05.28.	2,300,000				
	2015.06.29.	2,300,000				
	2015.07.27.	2,300,000				
	2015.08.27.	2,300,000				
	2015.09.30	2,300,000				
	2015.11.25.	2,300,000				
	2015.12.24.	2,300,000				
	2016.01.25.	2,300,000				
	2016.02.22.	2,300,000				
	2016.02.26.	2,300,000				
소계		**27,600,000**		**0**	**27,600,000**	
2016	2016.04.25.	3,500,000	2017.01.02.	7,300,000		
	2016.05.27.	3,500,000	2017.01.10.	10,000,000		
	2016.06.27.	3,500,000	2017.01.31.	10,000,000		
	2016.07.27.	3,500,000	2017.02.15.	15,000,000		
	2016.08.26.	3,500,000	2017.02.28.	13,000,000		
	2016.09.27.	3,500,000				
	2016.10.27.	3,500,000				
	2016.12.06.	3,500,000				
소계		**28,000,000**		**55,300,000**	**△27,300,000**	
합계		**55,600,000**		**55,300,000**	**300,000**	

2017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연흥유치원, 이레유치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Incheon Nambu Office of Education

[학교운영지원과]

목 차

Ⅰ. 감사 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1
3. 감사 인원 ····· 1
4. 감사 중점사항 ····· 2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2

Ⅲ. 감사 결과 ····· 2

1. 처분심의회 개최 ····· 2
2. 지적사항 총괄 ····· 3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3

1. 처분사항 일람표 ····· 3
1-1. 신분상 처분 명세 ····· 4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4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5~21
2. 현지조치사항 명세 ····· 22~25

2017년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연흥유치원, 이레유치원)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사립유치원 회계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유치원 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연번	감사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 범위	비고
1	연흥유치원	2017. 9. 26. ~ 9. 28.(3일)	회계운영 전반	
2	이레유치원	2017. 9. 26. ~ 9. 28.(3일)		
계	2개원	6일		

3. 감사 인원

대상기관명	감사반		소계
	감사반장	감사반원	
연 흥 유 치 원			3명
이 레 유 치 원			3명
계	2명	4명	6명

4. 감사 중점사항

○ 유치원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지원금 사용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

○ 금고 확인 등 기타 감사사항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학급, 명)

감사 대상기관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연 흥 유 치 원	6	114	15	
이 레 유 치 원	8	171	26	
계	14	285	41	

Ⅲ 감사 결과

1. 처분심의회 개최

○ 일　　시: 2017. 10. 27.(금) 11:00~11:30

○ 장　　소: 영상회의실(3층)

○ 참석인원: 처분심의회 위원 7명

○ 안　　건: 감사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분(안) 결정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명, 건,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현지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기관경고	시정	시정 회수	시정 추급	변상	계	
연흥유치원		1	4	5		3	386			386	3
이레유치원			2	2		2	62,340			62,340	3
계		1	6	7	0	5	62,726			62,726	6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처분 사항 일람표

(단위: 명, 건, 천원)

감사 대상기관	연번	지적건명	감사자 처분 의견					비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구분	인원		구분	금액	
연흥유치원	1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경고	1	시정			
	2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의	2	시정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	시정	회수	386	
	소계	3건	경고 주의	1 4	시정 3	회수	386	
이레유치원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1	시정	회수	1,247	
	5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의	1	시정	회수	61,093	
	소계	2건	주의	2	시정 2	회수	62,340	
합 계		5건	경고 주의	1 6	시 정 5	회수	62,726	

1-1. 신분상 처분 명세

연 번	기관명	지적건명	처분안(감사자 의견)				비고
			조치양정	현소속	직급	성명	
1	연흥유치원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경 고	연흥유치원	설립자	● ● ●	
2	연흥유치원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주 의 주 의	연흥유치원 연흥유치원	설립자 원 장	● ● ● ◎ ◎ ◎	
3	연흥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 의 주 의	연흥유치원 연흥유치원	설립자 원 장	● ● ● ◎ ◎ ◎	
4	이레유치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 의	이레유치원	원 장	■ ■ ■	
5	이레유치원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 의	이레유치원	원 장	■ ■ ■	
계		5건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감사 대상기관	일련 번호	제목	조치사항	비고
연흥유치원 (2건)	1	교직원 고용보험 미가입	현지시정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현지주의	
이레유치원 (1건)	3	유치원 회계 운영 소홀	현지주의	
계			현지시정(주의) 3건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연흥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시정

제 목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관 계 기 관 연흥유치원

내 용

연흥유치원 설립자 ●●●은 1980. 3. 1. ~ 현재까지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이 기재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연흥유치원 설립자 ●●●은 1980. 1. 18.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유치원 교지(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3-19)내에 [표]와 같이 (가칭) 수영장을 증축하고, 2017. 2. 8. 관할 구청인 남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7532)을 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2017. 9. 28.)까지 시설 변경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

[표]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3-19	1층	일반철골구조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198	

또한 (가칭)수영장은 원아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변경 인가 승인 없이 2014. 8. 19. 원내 물놀이(연홍유치원 가정통신문 제14-11호)를 시작으로 원아 대상 수영수업 등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연홍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사립유치원 변경 인가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시정】 처분 즉시 증축 시설에 대하여 남부교육지원청에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변경 인가 승인 후 시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최종 인가 상태로 시설의 원상복구)

【경고】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

① 연홍유치원 설립자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연흥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연흥유치원

내 용

연흥유치원 설립자 ●●●은 1980. 3. 1. ~ 현재까지 유치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고, 실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보험관리 기준」(학교운영지원과-4960호, 2017.4.21.)에 따르면 보험가입 시 보험 가입자(계약자)를 유치원, 대상자(피보험인)를 유치원·교직원·원아, 수익자(수령인)를 유치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연흥유치원에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하면서 계약자를 연흥유치원, 피보험자를 설립자 ●●●으로 한 사실이 있다.

[표] 보험 가입 현황

보험명	보험 기간	가입자 (계약자)	대상자 (피보험자)	보험료 (단위: 원)		비고
				보험료	납입기간	
삼성화 재보험	2014.6.13. ~ 2015.6.13.	●●●	●●●	92,200	일시납	갱신
	2015.6.13. ~ 2016.6.13.	●●●	●●●	92,200	일시납	갱신

	2016.6.15. ~ 2017.6.15.	연흥유치원	●●●	111,300	일시납	갱신
	2017.6.15. ~ 2018.6.15.	연흥유치원	●●●	99,700	일시납	갱신

조치할 사항 **연흥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피보험자를 연흥유치원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시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연흥유치원 설립자 ●●●

관련자 "주의요구"

① 연흥유치원 실 장 ◎◎◎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386,460원
수감기관	연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연홍유치원

내 용

연홍유치원 설립자 ●●●은 1980. 3. 1. ~ 현재까지 유치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고, 실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2]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연홍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의

2)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연체료 금386,460원(금삼십팔만육천사백육십원)은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비용임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연홍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386,460원(금삼십팔만육천사백육십원)을 회수하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

① 연홍유치원 설립자 ●●●

관련자 “주의요구”

① 연홍유치원 실 장 ◎◎◎

<붙임>

예산 목적외(연체료) 지출 목록

(단위: 원)

연번	납부 월	건명(연체료)	금액(원)
1	2014.04	건강보험	291,020
2	2014.04	전기요금	286
3	2014.06	고용보험	450
4	2014.06	산재보험	1,550
5	2014.07	건강보험	11,310
6	2014.07	국민연금	6,880
7	2014.07	고용보험	450
8	2014.07	산재보험	1,550
9	2014.08	건강보험	11,540
10	2014.08	국민연금	6,880
11	2014.08	고용보험	450
12	2014.08	산재보험	1,560
13	2014.09	전기요금	3,199
14	2014.10	전기요금	5,779
15	2014.11	건강보험	11,810
16	2014.12	전기요금	3,680
17	2015.01	국민연금	6,880
18	2015.01	고용보험	1,150
19	2015.01	산재보험	3,900
20	2015.02	전기요금	819
21	2015.04	전기요금	3,638
22	2015.07	전기요금	2,888
23	2015.10	가스요금	78
24	2015.10	가스요금	3
25	2016.01	가스요금	394
26	2016.01	가스요금	826
27	2016.04	전기요금	3,060
28	2016.05	전기요금	4,099
29	2017.01	가스요금	181
30	2017.01	가스요금	150
합계			386,460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1,247,659원
수감기관	이레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이레유치원

내 용

이레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3]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레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사학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및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등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연체료 금1,247,659원(금일백이십사만칠천육백오십구원)은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비용임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3)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조치할 사항 **이레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1,247,659원(금일백이십사만칠천육백오십구원)을 회수하고,

【주의 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이레유치원 원장 ■■■

<붙임> 예산 목적외(연체료, 가산금) 지출 목록

(단위: 원)

연번	납부월	사학연금	금액(원)	비고
1	2014.03	연체료	3,030	공통운영비
2	2014.04	연체료	2,140	공통운영비
3	2014.07	연체료	3,780	공통운영비
4	2014.07	연체료	3,780	공통운영비
5	2014.08	연체료	7,580	공통운영비
6	2014.10	연체료	7,820	공통운영비
7	2014.11	연체료	5,950	공통운영비
8	2014.12	연체료	4,700	공통운영비
9	2015.01	연체료	4,810	공통운영비
10	2015.02	연체료	3,840	공통운영비
11	2015.04	연체료	6,370	공통운영비
12	2015.06	연체료	6,680	공통운영비
13	2015.07	연체료	6,050	공통운영비
14	2015.08	연체료	3,020	공통운영비
15	2015.10	연체료	5,620	공통운영비
16	2015.12	연체료	7,460	공통운영비
17	2016.01	연체료	8,240	공통운영비
18	2016.03	연체료	2,450	공통운영비
19	2016.04	연체료	6,890	공통운영비
20	2016.05	연체료	4,390	공통운영비
21	2016.06	연체료	7,250	공통운영비
22	2016.07	연체료	6,510	공통운영비
23	2016.08	연체료	7,600	공통운영비
24	2016.09	연체료	7,600	공통운영비
25	2016.10	연체료	10,860	공통운영비
26	2017.03	연체료	4,250	공통운영비
27	2017.04	연체료	6,940	공통운영비
28	2017.05	연체료	2,980	공통운영비
사학연금 소계			**158,590**	

연번	납부월	4대보험	금액(원)	비고
29	2014.03	연체료	16,160	공통운영비
30	2014.04	연체료	11,160	공통운영비
31	2014.05	연체료	18,420	공통운영비
32	2014.06	연체료	18,420	공통운영비
33	2014.07	연체료	32,110	공통운영비
34	2014.08	연체료	68,020	공통운영비
35	2014.10	연체료	24,470	공통운영비
36	2014.11	연체료	61,490	공통운영비
37	2014.12	연체료	42,900	공통운영비
38	2015.01	연체료	45,470	공통운영비
39	2015.02	연체료	49,130	공통운영비
40	2015.03	연체료	49,130	공통운영비
41	2015.04	연체료	25,590	공통운영비
42	2015.05	연체료	58,850	공통운영비
43	2015.06	연체료	86,980	공통운영비
44	2015.07	연체료	31,500	공통운영비
45	2015.08	연체료	56,830	공통운영비
46	2015.10	연체료	35,070	공통운영비
47	2015.11	연체료	34,560	공통운영비
48	2015.12	연체료	10,440	공통운영비
49	2016.01	연체료	58,390	공통운영비
50	2016.01	연체료	4,980	공통운영비
51	2016.03	연체료	32,360	공통운영비
52	2016.03	연체료	12,560	공통운영비
53	2016.04	연체료	31,440	공통운영비
54	2016.05	연체료	270	공통운영비
55	2016.10	연체료	21,400	공통운영비
56	2017.03	연체료	22,870	공통운영비
57	2017.03	연체료	14,120	공통운영비
58	2017.06	연체료	6,450	공통운영비
4대보험 소계			**981,540**	

연번	납부월	상하수도	금액(원)	비고
59	2014.04	연체료	1,660	공통운영비
60	2014.06	연체료	3,940	공통운영비
61	2014.08	연체료	6,000	공통운영비
62	2014.10	연체료	5,860	공통운영비
63	2015.02	연체료	4,730	공통운영비
64	2015.03	연체료	4,110	공통운영비
65	2015.04	연체료	7,230	공통운영비
66	2015.08	연체료	3,540	공통운영비
67	2015.11	연체료	2,680	공통운영비
68	2016.02	연체료	2,570	공통운영비
69	2016.06	연체료	130	공통운영비
70	2016.08	연체료	3,730	공통운영비
71	2016.09	연체료	4,680	공통운영비
72	2016.12	연체료	1,860	공통운영비
73	2017.02	연체료	470	공통운영비
74	2017.04	연체료	4,530	공통운영비
75	2017.05	연체료	5,390	공통운영비
상하수도 소계			**63,110**	
연번	**납부월**	**도시가스**	**금액(원)**	**비고**
76	2014.04	가산금	22,936	공통운영비
77	2014.09	가산금	453	공통운영비
78	2014.10	가산금	188	공통운영비
79	2015.01	가산금	1,069	공통운영비
80	2015.02	가산금	6,195	공통운영비
81	2015.04	가산금	1,203	공통운영비
82	2015.05	가산금	1,007	공통운영비
83	2015.06	가산금	742	공통운영비
84	2015.10	가산금	48	공통운영비
85	2015.12	가산금	283	공통운영비
86	2016.07	가산금	468	공통운영비
87	2016.10	가산금	176	공통운영비
88	2017.04	가산금	9,651	공통운영비
도시가스 소계			**44,419**	
합 계			**1,247,659**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61,093,452원
수감기관	이레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이레유치원

내 용

이레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보험관리 기준」(학교운영지원과-4960호, 2017. 4. 21.)에 따르면 2014. 5. 19. 이후 보험가입 시 보험 가입자(계약자)를 유치원, 대상자(피보험인)를 유치원·교직원·원아, 수익자(수령인)를 유치원으로 하고, 가입기간 및 보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한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부분 또는 전액 적립되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적립식 수익형 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4. 5. 19.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가입한 수익형 보험을 포함한 모든 만기 환급형 보험 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 하되, 이미 유치원 회계를 통해 납입한 납입보험료 중 '보장보험료(기본 보험료)'부분을 제외하고 단순 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부분은 계약 해지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레유치원에서는 2015. 6. 24. 무배당※※프라임플러스 기업보장보험(계약자: 이레유치원, 피보험자: 종업원 18명, 수익자: 이레유치원, 만기 시: 이레유치원, 기타: 이레유치원)에 가입하여 2017. 8. 21.까지(총 30회) 단순적립보험료 금51,645,000원(금오천일백육십사만오천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고,
<붙임 1 참조>

또한 2014. 10. 24. ※※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 종합형보험(계약자: 이레유치원, 피보험자: 원장 ■■■, 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만기 시: 이레유치원, 기타: ■■■)에 가입하여 2017. 9. 25.까지(총 36회) 납입 보험료 금10,800,000원(금일천팔십만원) 중 단순적립보험료 금9,439,452원(금구백사십삼만구천사백오십이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붙임 2 참조>

아래 [표]와 같이 총 보험료 금62,454,000원(금육천이백사십오만사천원) 중 단순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 금61,093,452원(금육천일백구만삼천사백오십이원)을 감사당일까지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보험 가입 현황

(단위: 원)

보험명	보험기간	가입자(계약자)	대상자(피보험자)	수익자(수령인)			보험료 사항				비고
				사망	만기	기타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	납입기간	
교보(무배당 교보프라임 플러스 기업보장보험)	2015.6.24 ~ 2025.6.24, 2015.8.24 ~ 2025.8.24, 2016.9.5. ~ 2026.9.5	이레유치원	종업원 18명	이레유치원	이레유치원	이레유치원		51,654,000	51,654,000	전기납	10년 만기 15.8.24, 16.9.5 신규가입
현대해상(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종합형)	2014.10.24 ~ 2019.10.24	이레유치원	■■■	법정상속인	이레유치원	■■■	1,360,548	9,439,452	10,800,000	전기납	5년 만기
합 계							1,360,548	61,093,452	62,454,000		

조치할 사항 **이레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적립보험료 금61,093,452원(금육천일백구만삼천사백오십이원)을 회수하고,

【주의 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이레유치원 원장 ■■■

<붙임1>

적립형 보험료(※※프라임) 납부 내역

(단위: 원)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1	2015.06.24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600,000	600,000	신계약
2	2015.06.24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200,000	1,200,000	신계약
3	2015.07.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00,000	1,800,000	
4	2015.08.24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98,000	98,000	신계약
5	2015.08.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00,000	1,800,000	
6	2015.09.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7	2015.11.0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8	2015.11.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9	2015.12.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0	2016.02.0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1	2016.02.2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2	2016.02.29.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3	2016.05.0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4	2016.05.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5	2016.06.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6	2016.08.0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7	2016.08.2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18	2016.09.05.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00,000	100,000	신계약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19	2016.09.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898,000	1,898,000	
20	2016.10.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1	2016.11.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2	2016.12.2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3	2017.01.2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4	2017.02.2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5	2017.03.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6	2017.05.0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7	2017.05.22.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8	2017.06.30.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998,000	1,998,000	
29	2017.07.3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700,000	1,700,000	
30	2017.08.21.	유치원 기업보장보험		1,700,000	1,700,000	
합 계				**51,654,000**	**51,654,000**	

<붙임2>

적립형 보험료(※※해상) 납부 내역

(단위: 원)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1	2014.10.24.	10월 유치원 종합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	2014.11.25.	11월 유치원 종합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	2014.12.26.	12월 유치원 종합	37,793	262,207	300,000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보험료				
4	2015.01.26.	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5	2015.02.25.	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6	2015.03.25.	3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7	2015.04.27.	4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8	2015.05.26.	5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9	2015.06.25.	6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0	2015.07.27.	7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1	2015.08.25.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2	2015.09.25.	9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3	2015.10.26.	10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4	2015.11.25.	1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5	2015.12.28.	1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6	2016.01.25.	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7	2016.02.25.	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8	2016.03.25.	3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19	2016.04.25.	4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0	2016.05.25.	5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1	2016.06.27.	6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2	2016.07.25.	7월 유치원 종합	37,793	262,207	300,000	

연번	납부일	건명	보험료 납부 금액			비고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	
		보험료				
23	2016.08.25.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4	2016.09.26.	9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5	2016.10.25.	10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6	2016.11.25.	1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7	2016.12.26.	1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8	2017.01.25.	1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29	2017.02.27.	2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0	2017.03.27.	3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1	2017.04.25.	4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2	2017.05.25.	5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3	2017.06.26.	6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4	2017.07.25.	7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5	2017.08.25.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36	2017.09.25.	8월 유치원 종합 보험료	37,793	262,207	300,000	
합 계			**1,360,548**	**9,439,452**	**10,800,000**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
Incheon Education

2017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인천, 참빛, 숭의, 이화, 큰사랑, 도담유치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Incheon Nambu Office of Education

[학교운영지원과]

목 차

Ⅰ. 감사 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1
3. 감사 인원 ····· 2
4. 감사 중점사항 ····· 2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2

Ⅲ. 감사 결과 ····· 3

1. 처분심의회 개최 ····· 3
2. 지적사항 총괄 ····· 3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4

1. 처분사항 일람표 ····· 4
1-1. 신분상 처분 명세 ····· 5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6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7~49
2. 현지조치사항 명세 ····· 50~55

2017년도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인천, 참빛, 숭의, 이화, 큰사랑, 도담유치원)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사립유치원 회계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유치원 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연번	감사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 범위	비고
1	인 천 유 치 원	2017. 10. 11. ~ 10. 13.(3일)	회계운영 전반	
2	참 빛 유 치 원	2017. 10. 17. ~ 10. 19.(3일)		
3	숭 의 유 치 원	2017. 10. 24. ~ 10. 26.(3일)		
4	이 화 유 치 원	2017. 10. 24. ~ 10. 26.(3일)		
5	큰 사 랑 유 치 원	2017. 10. 31. ~ 11. 02.(3일)		
6	도 담 유 치 원	2017. 10. 31. ~ 11. 02.(3일)		
계	6개원	18일		

3. 감사 인원

대상기관명	감사반		소계
	감사반장	감사반원	
인 천 유 치 원			3명
참 빛 유 치 원			3명
숭 의 유 치 원			3명
이 화 유 치 원			3명
큰 사 랑 유 치 원			3명
도 담 유 치 원			3명
계	6명	12명	18명

4. 감사 중점사항

○ 유치원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지원금 사용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
○ 금고 확인 등 기타 감사사항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학급, 명)

감사 대상기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인 천 유 치 원	5	84	8	
참 빛 유 치 원	5	105	9	
숭 의 유 치 원	3	91	8	
이 화 유 치 원	5	96	9	
큰 사 랑 유 치 원	4	57	7	
도 담 유 치 원	3	32	7	
계	25	465	48	

Ⅲ 감사 결과

1. 처분심의회 개최

○ 일　　시: 2017. 12. 8.(금) 11:00~12:00

○ 장　　소: 영상회의실(3층)

○ 참석인원: 처분심의회 위원 7명

○ 안　　건: 감사결과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분(안) 결정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명, 건, 천원)

기관명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금액				현지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기관경고	시정	시정		변상	계	
							회수	추급			
인천유치원			5	5		1	181			181	1
참빛유치원		2	2	4		1					1
숭의유치원			3	3		2	697			697	
이화유치원			12	12		2	405			405	
큰사랑유치원		1		1		1	1,475			1,475	1
도담유치원			3	3							2
계		3	25	28	0	7	2,758			2,758	5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처분 사항 일람표

(단위: 명, 건, 천원)

감사 대상기관	연번	지적건명	감사자 처분 의견					비고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구분	인원		구분	금액	
인천유치원	1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3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	시정	회수	181	
	소계	**2건**	**주의**	**5**	**시정(1)**	**회수**	**181**	
참빛유치원	3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2	시정			
	4	유치원회계 집행 부당	경고	2				
	소계	**2건**	**주의 경고**	**2 2**	**시정(1)**			
숭의유치원	5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1				
	6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1	시정	회수	697	
	7	연말정산 신고 소홀	주의	1	시정			
	소계	**3건**	**주의**	**3**	**시정(2)**	**회수**	**697**	
이화유치원	8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5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및 연말정산 신고 부적정	주의	5	시정			
	10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의	2	시정	회수	405	
	소계	**3건**		**12**	**시정(2)**	**회수**	**405**	
큰사랑유치원	1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고	1	시정	회수	1,475	
	소계	**1건**	**경고**	**1**	**시정(1)**	**회수**	**1,475**	
도담유치원	12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3				
	소계	**1건**	**주의**	**3**				
합계		**12건**	**주의 경고**	**25 3**	**시정(7)**	**회수(4)**	**2,758**	

1-1. 신분상 처분 명세

기관명	연번	지적건명	처분안(감사자 의견)				비고
			조치양정	현소속	직급	성명	
인천유치원	1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인천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인천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인천유치원	원장	◑◑◑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인천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인천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참빛유치원	3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참빛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참빛유치원	원장	▲▲▲	
	4	유치원회계 집행 부당	경고	참빛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경고	참빛유치원	원장	▲▲▲	
숭의유치원	5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숭의유치원	원장	■■■	
	6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숭의유치원	원장	■■■	
	7	연말정산 신고 소홀	주의	숭의유치원	원장	■■■	
이화유치원	8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이화유치원	원장	▼▼▼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및 연말정산 신고 부적정	주의	이화유치원	원장	▼▼▼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10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주의	이화유치원	원장	▼▼▼	
			주의	이화유치원	원감	▷▷▷	퇴직불문
큰사랑유치원	1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경고	큰사랑유치원	원장	▽▽▽	
도담유치원	12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주의	도담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도담유치원	원장	◈◈◈	퇴직불문
			주의	도담유치원	원장	▣▣▣	
합계		12건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감사 대상기관	일련 번호	제목	조치사항	비고
인천유치원 (1건)	1	교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및 4대 보험 미가입	현지시정	
참빛유치원 (1건)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현지주의	
큰사랑유치원 (1건)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현지주의	
도담유치원 (2건)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현지시정	
	5	유치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절차 소홀	현지주의	
계			현지시정(주의) 5건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인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인천유치원
내 용

인천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2016. 2. 29.까지, 원장 ◐◐◐은 2016. 3. 1.~2017. 2. 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원장 ◑◑◑은 2017. 3. 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인천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공사,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당채주 및 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공사 관련 사진 등) 없이 지출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만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유치원 설립자**는 인천유치원에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인천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인천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인천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181,282원
수감기관	인천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인천유치원

내 용

인천유치원 원장 ●●●는 2014. 3. 1. ~ 2016. 2. 29.까지, 원장 ◐◐◐은 2016. 3. 1. ~ 2017. 2. 28.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1]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인천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사학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요금 등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연체료 금181,282원(금일십팔만일천이백팔십이원)은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비용임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1)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181,282원(금일십팔만일천이백팔십이원)을 회수하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인천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인천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붙임>

예산 목적외(연체료) 지출 목록

(단위: 원)

연번	월	사학연금	금액(원)	비고
1	2014.04	연체료	50	
2	2014.07	연체료	30	
3	2015.05	연체료	140	
소 계			**220**	
연번	**월**	**4대보험**	**금액(원)**	**비고**
4	2014.03	연체료	7,710	
5	2014.04	연체료	34,160	
6	2014.06	연체료	15,510	
7	2015.03	연체료	19,980	
8	2015.04	연체료	8,170	
9	2015.05	연체료	4,990	
10	2015.09	연체료	4,600	
11	2015.11	연체료	6,380	
12	2015.12	연체료	10,770	
13	2016.03	연체료	3,720	
14	2016.01	연체료	6,810	
15	2016.09	연체료	4,480	
16	2016.10	연체료	3,690	
소 계			**130,970**	
연번	**월**	**전기요금**	**금액(원)**	**비고**
17	2014.03	연체료	2,853	
18	2014.05	연체료	2,291	
19	2014.08	연체료	2,129	
20	2014.09	연체료	4,330	
21	2014.10	연체료	3,870	
22	2015.01	연체료	2,698	
23	2015.03	연체료	2,715	
24	2015.05	연체료	2,538	
25	2015.07	연체료	2,973	
26	2015.10	연체료	4,876	
27	2015.12	연체료	2,268	
28	2016.02	연체료	3,517	
29	2016.04	연체료	2,584	
30	2016.06	연체료	1,847	
31	2016.07	연체료	3,687	
32	2016.10	연체료	3,027	
33	2016.12	연체료	1,889	
소 계			**50,092**	
합 계			**181,282**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참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참빛유치원

내 용

참빛유치원 원장 ▲▲▲은 2010. 9. 15. ~ 2014. 11. 6.까지, 원장 ◆◆◆는 2014. 12. 22. ~ 2016. 7. 26.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장 ▲▲▲은 2016. 8. 12.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참빛유치원에서는 2014 ~ 2017학년도 원장 및 교사 총 38명(중복 인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내용 중 근로시간, 근무장소, 종사업무 등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014~2017학년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내역

학년도	직	성명	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기재여부					비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2014	원장	▲▲▲	○	○	×	○	×	×	2014.3.1.~2014.11.6.
	원장	◆◆◆	○	○	×	○	×	×	2014.12.22. 임용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5. 3. 1. 퇴사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4. 3. 17. 임용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4.3.1.~2014.9.3.
	교사	∩∩∩	○	○	×	○	×	×	2014.9.11.~2014.11.8.
	교사	∧∧∧	○	○	×	○	×	×	2014.11.25. 임용
	교사	∨∨∨	○	○	×	○	×	×	2014. 3. 15. 퇴사
2015	원장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5.5.6. 퇴사
	교사	⊃⊃⊃	○	○	×	○	×	×	2016.3.1. 퇴사
	교사	∫∫∫∫	○	○	×	○	×	×	2015.5.8.~2015.9.11.
	교사	∞∞∞	○	○	×	○	×	×	2015.9.17.~ 2016.3.1.
	교사	∧∧∧	○	○	×	○	×	×	2016.3.1. 퇴사
2016	원장	◆◆◆	○	○	×	○	×	×	2016.7.26. 퇴사
	원장	▲▲▲	○	○	×	○	×	×	2016. 8. 12. 임용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6.3.1.~2016.5.31.
	교사	▨▨▨	○	○	×	○	×	×	2016.5.12.~2016.12.1.
2017	원장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교사	▩▩▩	○	○	×	○	×	×	2017.3.22. 임용

조치할 사항 **참빛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무장소, 종사업무 등을 명시하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참빛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참빛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참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당

관 계 기 관 참빛유치원

내 용

참빛유치원 원장 ◆◆◆는 2014. 12. 22. ~ 2016. 7. 26.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원장 ▲▲▲은 2010. 9. 15. ~ 2014. 11. 6.까지, 2016. 8. 12.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및 「사립유치원 재정업무처리 지침」(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거나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유치원명의 신용카드사용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참빛유치원에서는 2014~2017학년도까지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유치원명의 신용카드로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붙임>과 같이 2014학년도 53건 금1,840,530원(금일백팔십사만오백삼십원), 2015학년도 101건 금9,648,490원(금구백육십사만팔천사백구십원), 2016학년도 50건 금7,073,779원(금칠백칠만삼천칠백칠십구원), 2017학년도 1건 금11,000원(금일만일천원) 등 총 205건 금18,573,799원(일천팔백오십칠만삼천칠백구십구원)을

개인카드로 결재한 후 해당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 회계 집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참빛유치원 설립자**는 참빛유치원에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회계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① 참빛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참빛유치원 원장 ▲▲▲

<붙임>

2014~2017학년도 개인카드 사용 및 현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학년도	지급일	적요	금액	업체명	실제채주 (교직원)	비고
2014	2014.03.06	마포걸레외	60,000		▲▲▲	
	2014.03.06	화분	28,000		▲▲▲	
	2014.03.26	빵	49,000		▲▲▲	
	2014.03.26	교사회의시 간식	41,000		▲▲▲	
	2014.03.26	텃밭 야전삽외	31,200		♤♤♤	
	2014.04.11	직관형광램프외	64,000		♤♤♤	
	2014.04.11	현관매트	42,500		♤♤♤	
	2014.04.11	화장실 매트	64,800		♤♤♤	
	2014.04.11	주방매트	84,300		♤♤♤	
	2014.04.18	과일	20,000		▲▲▲	
	2014.04.18	볼펜외	7,000		♤♤♤	
	2014.04.18	전선외	21,000		♤♤♤	
	2014.04.18	만능관통기	8,400		♤♤♤	
	2014.04.18	미끄럼방지 매트	181,110		♤♤♤	
	2014.04.30	방과후 간식류 / 과일	15,000		▲▲▲	
	2014.05.09	피스넷외	32,290		♤♤♤	
	2014.06.02	봉투	14,400		♠♠♠	
	2014.06.11	등기료	2,230		▲▲▲	
	2014.06.11	잔액증명수수료	2,000		▲▲▲	
	2014.06.16	참여수업시 재료 / 수박	80,000		▲▲▲	
	2014.06.16	참여수업시 재료 / 당근	12,000		▲▲▲	
	2014.06.16	참여수업시 재료 / 새싹	70,000		▲▲▲	
	2014.06.16	전지	3,000		▲▲▲	
	2014.06.20	변기부속 벨브 구입	14,000		♤♤♤	
	2014.07.17	화분	30,000		▲▲▲	
	2014.07.17	대일밴드외	8,000		▲▲▲	
	2014.09.29	직관형광램프	12,000		♤♤♤	
	2014.09.29	약값	9,500		▲▲▲	
	2014.09.29	간식접시	140,000		▲▲▲	
	2014.10.10	주차요금	1,400		▲▲▲	
	2014.10.27	직관형광램프	15,000		♤♤♤	
	2014.11.19	도너츠	50,000		♠♠♠	
	2014.11.26	난방용 석유	50,000		♠♠♠	
	2014.12.01	빗자루	37,000		♠♠♠	
	2014.12.03	마늘외	27,000		♠♠♠	
	2014.12.09	라바발코니매트	21,900		♠♠♠	
	2014.12.22	공CD	5,500		♤♤♤	
	2014.12.22	현대문풍지외	9,500		♤♤♤	
	2015.01.07	석유	72,000		♠♠♠	2015
	2015.01.22	석유	24,000		♠♠♠	
	2015.01.22	가스렌지수리	40,000		♠♠♠	

학년도	지급일	적요	금액	업체명	실제채주(교직원)	비고
	2015.01.26	기모고무장갑	4,000		♠♠♠	
	2015.01.26	잡화	5,000		♠♠♠	
	2015.01.26	실리콘	25,000		♠♠♠	
	2015.01.26	식대	41,000		♠♠♠	
	2015.01.30	설명회봉투	33,000		♠♠♠	
	2015.02.09	석유	22,000		♠♠♠	
	2015.02.12	석유	44,000		♠♠♠	
	2015.02.16	양변기 부속외	21,500		♤♤♤	
	2015.02.16	국자	9,000		♠♠♠	
	2015.02.24	석유	22,000		♠♠♠	
	2015.02.24	직원식대	70,000		♤♤♤	
	2015.02.27	석유	44,000		♠♠♠	
	계	**53건**	**1,840,530**			
2015	2015.03.13	교육비봉투	28,000		♠♠♠	
	2015.03.13	석유	44,000		♠♠♠	
	2015.03.18	석유	44,000		♠♠♠	
	2015.04.02	유류대	331,000		♡♡♡	
	2015.04.02	차량수리비	110,000		♡♡♡	
	2015.04.07	유류대	296,000		♥♥♥	
	2015.04.07	차량수리	50,000		♥♥♥	
	2015.04.07	클리치 마스타	80,000		♥♥♥	
	2015.04.22	석유	22,000		♠♠♠	
	2015.04.22	다용도 빗자루외	11,200		♠♠♠	
	2015.04.22	화이트 스타외	26,000		♠♠♠	
	2015.04.24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4,000		♠♠♠	
	2015.04.24	현수막	22,000		♠♠♠	
	2015.04.24	미끄럼방지 스티커	18,200		♤♤♤	
	2015.04.24	봉투	22,000		♠♠♠	
	2015.05.01	식목 모종심기/고추외 모종	47,000		♠♠♠	
	2015.05.01	유류대	233,000		♡♡♡	
	2015.05.01	빵구수리	15,000		♡♡♡	
	2015.05.01	유류대	250,000		♥♥♥	
	2015.05.01	유류대	30,000		♥♥♥	
	2015.05.21	컴팩트형광램프외	11,000		♤♤♤	
	2015.05.21	지퍼백	5,000		♤♤♤	
	2015.05.26	전기선	16,900		♤♤♤	
	2015.05.26	개미살충제	11,000		♤♤♤	
	2015.05.29	유류대	127,000		♥♥♥	
	2015.05.29	유류대	174,000		♥♥♥	
	2015.05.29	유류대	281,000		♡♡♡	
	2015.06.23	전선외	18,000		♤♤♤	
	2015.06.29	실리콘외	22,500		♤♤♤	
	2015.06.30	유류대	242,000		♡♡♡	

학년도	지급일	적요	금액	업체명	실제채주(교직원)	비고
	2015.07.01	차량수리비	108,000		♥♥♥	
	2015.07.01	유류대	46,000		♥♥♥	
	2015.07.01	유류대	210,000		♥♥♥	
	2015.07.01	유류대	45,000		♥♥♥	
	2015.07.03	전선	12,000		♤♤♤	
	2015.07.03	하드디스크외	100,660		♤♤♤	
	2015.07.03	2구 콘센트	2,000		♤♤♤	
	2015.07.23	동요발표회시 김밥	20,000		♠♠♠	
	2015.07.24	2구콘센트	4,000		♤♤♤	
	2015.07.24	필름외	42,000		♤♤♤	
	2015.07.24	마샬스피커 유니트	63,600		♠♠♠	
	2015.07.24	빨래건조대	51,800		♠♠♠	
	2015.07.28	유류대	50,000		♥♥♥	
	2015.07.28	유류대	40,000		♥♥♥	
	2015.07.28	유류대	80,000		♥♥♥	
	2015.07.28	유류대	110,000		♥♥♥	
	2015.07.28	유류대	325,000		♡♡♡	
	2015.07.28	차량 검사료	20,000		♡♡♡	
	2015.08.31	유류대	225,000		♡♡♡	
	2015.08.31	유류대	120,000		♥♥♥	
	2015.08.31	유류대	125,000		♥♥♥	
	2015.08.31	차량수리비	242,000		♥♥♥	
	2015.08.31	타이어 교체	370,000		♥♥♥	
	2015.09.11	학부모설명회시 바나나	5,000		♠♠♠	
	2015.09.11	학부모설명회시 귤	46,000		♠♠♠	
	2015.09.18	택배료	40,000		♠♠♠	
	2015.09.30	유류대	181,000		♡♡♡	
	2015.09.30	유류대	235,000		♥♥♥	
	2015.09.30	차량수리비	50,000		♥♥♥	
	2015.09.30	차량수리비	20,000		♥♥♥	
	2015.09.30	유류대	40,000		♥♥♥	
	2015.10.16	매입등기구외	44,300		♤♤♤	
	2015.10.16	수도꼭지	12,000		♤♤♤	
	2015.10.16	나사못외	19,200		♤♤♤	
	2015.10.20	가스렌지수리	15,000		♠♠♠	
	2015.10.26	시트지	11,200		♤♤♤	
	2015.10.30	유류대	36,000		♡♡♡	
	2015.10.30	유류대	243,000		♡♡♡	
	2015.10.30	유류대	91,000		♥♥♥	
	2015.10.30	수리비	50,000		♥♥♥	
	2015.10.30	유류대	143,000		♥♥♥	
	2015.11.03	실리콘	11,200		♤♤♤	
	2015.11.25	찐빵	45,000		♠♠♠	

학년도	지급일	적요	금액	업체명	실제채주(교직원)	비고
	2015.11.30	유류대	269,000		♥♥♥	
	2015.11.30	차량수리비	80,000		♥♥♥	
	2015.11.30	유류대	279,000		♥♥♥	
	2015.11.30	유류대	40,000		♥♥♥	
	2015.12.01	김장일회용장갑	8,000		♠♠♠	
	2015.12.02	무	10,000		♠♠♠	
	2015.12.02	깐쪽파외	70,000		♠♠♠	
	2015.12.02	마늘외	50,000		♠♠♠	
	2015.12.21	석유	36,000		♠♠♠	2016
	2015.12.29	차량수리비	143,000		♡♡♡	
	2015.12.29	차량수리비	20,000		♡♡♡	
	2015.12.29	검사료	20,000		♡♡♡	
	2015.12.29	유류대	271,000		♡♡♡	
	2015.12.29	차량수리비	555,000		♥♥♥	
	2015.12.29	유류대	220,000		♥♥♥	
	2016.01.14	형광램프	15,000		♤♤♤	
	2016.01.18	약값	5,000		♠♠♠	
	2016.01.25	순간접착제	10,000		♠♠♠	
	2016.01.25	석유	34,000		♠♠♠	
	2016.02.01	발표회시 김밥	50,000		♠♠♠	
	2016.02.01	유류대	197,000		♡♡♡	
	2016.02.01	유류대	30,000		♥♥♥	
	2016.02.01	유류대	169,730		♥♥♥	
	2016.02.15	석유	34,000		♠♠♠	
	2016.02.18	석유	34,000		♠♠♠	
	2016.02.29	유류대	190,000		♥♥♥	
	2016.02.29	차량수리비	330,000		♡♡♡	
	2016.02.29	유류대	137,000		♡♡♡	
	계	**101건**	**9,648,490**			
2016	2016.03.29	석유	36,000		♠♠♠	
	2016.03.31	유류대	259,000		♡♡♡	
	2016.03.31	차량수리비	50,000		♥♥♥	
	2016.03.31	유류대	278,000		♥♥♥	
	2016.04.01	텃밭거름	16,000		♤♤♤	
	2016.04.01	수건걸이	12,200		♤♤♤	
	2016.04.05	시트지	9,300		♤♤♤	
	2016.04.12	석유	36,000		♠♠♠	
	2016.04.18	소변기호스	36,000		♤♤♤	
	2016.05.02	유류대	204,000		♡♡♡	
	2016.05.02	유류대	200,000		♥♥♥	
	2016.05.04	전선	24,000		♤♤♤	
	2016.06.01	유류대	218,000		♡♡♡	
	2016.06.01	차량수리비	50,000		♥♥♥	

학년도	지급일	적요	금액	업체명	실제채주(교직원)	비고
	2016.06.01	유류대	250,000		♥♥♥	
	2016.06.13	수국	24,000		♠♠♠	
	2016.06.13	문받침대	4,100		♤♤♤	
	2016.06.24	광명동굴주차료	8,000		♠♠♠	
	2016.06.30	유류대	250,000		♥♥♥	
	2016.06.30	유류대	134,000		♡♡♡	
	2016.07.26	유류대	229,000		♡♡♡	
	2016.07.26	유류대	250,000		♥♥♥	
	2016.08.12	수질검사료	15,760		▲▲▲	
	2016.08.12	소독병	5,000		▲▲▲	
	2016.08.18	경첩	19,500		♠♠♠	
	2016.09.02	레인보우외	30,000		♠♠♠	
	2016.09.02	유류대	258,000		♡♡♡	
	2016.09.02	유류대외	320,000		♥♥♥	
	2016.09.12	한지외	19,300		♠♠♠	
	2016.09.30	유류대	208,979		♡♡♡	
	2016.09.30	유류대	433,000		♥♥♥	
	2016.10.11	국화	36,000		♠♠♠	
	2016.10.11	등기료	2,440		♠♠♠	
	2016.10.11	대나무비	6,000		♠♠♠	
	2016.10.18	한국민속촌주차료	6,000		♠♠♠	
	2016.10.31	유류대	218,000		♡♡♡	
	2016.10.31	유류대	260,000		♥♥♥	
	2016.12.01	유류대	290,000		♥♥♥	
	2016.12.01	수리비	10,000		♥♥♥	
	2016.12.01	타이어교체	440,000		♥♥♥	
	2016.12.01	유류대	278,000		♡♡♡	
	2016.12.15	콘센트외	15,500		♤♤♤	
	2016.12.27	유류대	320,000		♥♥♥	
	2016.12.27	유류대	271,000		♡♡♡	
	2017.01.31	유류대	194,000		♡♡♡	
	2017.01.31	유류대	220,000		♥♥♥	
	2017.02.02	불어펜	11,700		♠♠♠	
	2017.02.23	유류대	248,000		♡♡♡	
	2017.02.23	유류대	260,000		♥♥♥	
	2017.02.23	차량수리비	100,000		♥♥♥	
	계	**50건**	**7,073,779**			
2017	2017.07.24	전선외	11,000		♤♤♤	
	계	**1건**	**11,000**			
합	**계**	**205건**	**18,573,799**		**5명**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숭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숭의유치원

내 용

숭의유치원 원장 ■■■은 2008. 7. 14.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징수부, 수입부, 금전출납부, 세출내역부,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등을 작성하여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숭의유치원에서는

- [표]와 같이 교직원 명절 선물 구입비로 10회, 금9,619,810원(금구백육십일만구천팔백일십원)을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실제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대상자, 수령여부 확인서 등)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고,

[표] 교직원 선물 구입 현황

(단위: 원)

지출일	건명	지출금액	예금주	비고
2014.08.22.	교직원 명절 선물 구입	1,639,940		
2015.02.04.	설명절 선물 구입	2,062,920		
2015.09.0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570,220		
2015.09.0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1,004,080		
2016.01.22.	교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1,002,240		
2016.01.22.	설명절 선물 구입	151,200		
2016.08.31.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1,113,480		
2016.08.31.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305,900		
2017.01.11.	교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1,455,110		
2017.09.1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314,720		
합계		**9,619,810**		

- 2014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숭의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숭의유치원 원 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697,220원
수감기관	숭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숭의유치원

내 용

숭의유치원 원장 ■■■은 2008. 7. 14.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1]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숭의유치원에서는

- [표]와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원아들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유치원 급식비에서 구입하면서 원아의 급식과 관계 없는 교직원 간식(커피·탄산음료·라면 등)을 구입하였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 가산세 납부 등등 총 29건 금274,220원(금이십칠만사천이백이십원)을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1)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교직원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상품권 총 21건 금423,000원(금사십이만삼천원)을 유치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현황

(단위: 건, 원)

연번	건명	건수	지급액	세부내역	비고
1	예산의 목적외 물품 구입 등	29	274,220	<붙임1> 참조	
2	상품권 수령	21	423,000	<붙임2> 참조	
계		**50**	**697,220**		

조치할 사항 **숭의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697,220원(금육십구만칠천이백이십원)을 회수하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숭의유치원 원 장 ■■■

<붙임 1>

예산의 목적외 물품 구입, 과태료 지급 등등 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1	2014.04.16.	빵외 급간식비	115,140	11,360	컵라면 구입	급식비
2	2014.06.02.	야채외 급간식비	128,470	9,210	라면,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3	2014.07.10.	빵외 급간식비	48,540	7,20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4	2014.08.22.	빵외 간식비	55,290	3,960	라면 구입	급식비
5	2014.08.27.	간식비	95,870	15,90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6	2014.09.02.	빵외 급간식비	39,610	8,160	컵라면 구입	급식비
7	2014.10.14.	빵외 급간식비	241,770	7,12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8	2014.12.20.	부식비	78,190	8,050	라면 구입	급식비
9	2015.06.22.	돈까스외 부식비	207,940	15,160	컵라면 구입	급식비
10	2015.10.01.	음료외 간식비	130,680	4,96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11	2015.10.02.	팝콘외 간식비	46,270	7,880	라면 구입	급식비
12	2015.11.16.	고기외 부식비	364,800	9,480	라면 구입	급식비
13	2015.12.31.	원아 간식비	158,860	30,440	라면 구입	급식비
14	2015.01.04.	우유외 간식비	162,920	9,510	라면 및 커피 구입	급식비
15	2015.01.15.	두부외 부식비	223,090	2,94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16	2015.02.27.	야채외 부식비	91,940	12,360	컵라면 구입	급식비
17	2016.02.1	돈까스외 부식비	145,280	15,160	컵라면 구입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5.					
18	2016.02.23.	음료 간식비	3,880	3,8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19	2016.03.03.	야채외 부식비	97,120	4,2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20	2016.03.21.	빵외 급간식비	417,050	9,480	라면 구입	급식비
21	2016.04.06.	어묵외 부식비	188,930	8,66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22	2016.05.31.	생선외 부식비	147,620	6,250	라면 구입	급식비
23	2016.06.14.	고기외 급간식비	527,070	7,1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24	2016.07.15.	2016년 1기 근로소득세 납부	114,110	3,540	가산세	공통운영비
25	2016.08.19.	고추장외 부식비	193,340	15,700	라면 구입	급식비
26	2016.09.07.	어묵외 부식비	151,820	3,9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27	2016.10.17.	고기외 부식비	393,950	18,460	라면 및 커피 구입	급식비
28	2016.11.08.	떡갈비외 부식비	190,100	3,2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29	2017.02.13.	호일외 주방용품 구입	43,910	10,680	탄산음료 구입	급식비
합 계				**274,220**		

<붙임 2>

증정상품권 수령 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증정상품권 수령액	비고
1	2014.08.22.	교직원 명절 선물 구입	1,639,940	100,000	업무추진비
2	2014.10.14.	빵외 급간식비	241,770	4,000	급식비
3	2015.09.0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570,220	25,000	업무추진비
4	2015.09.0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1,004,080	50,000	업무추진비
5	2015.01.15.	물티슈외 학급물품 구입	69,500	4,000	교수학습 활동비
6	2016.01.22.	교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1,002,240	50,000	업무추진비
7	2016.02.26.	과일외 급간식비	118,930	7,000	급식비
8	2016.03.11.	생선외 부식비	236,380	1,000	급식비
9	2016.04.06.	어묵외 부식비	188,930	3,000	급식비
10	2016.08.19.	고추장외 부식비	193,340	5,000	급식비
11	2016.08.31.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1,113,480	50,000	업무추진비
12	2016.08.31.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305,900	15,000	업무추진비
13	2016.09.07.	어묵외 부식비	151,820	10,000	급식비
14	2016.10.05.	야채외 부식비	155,600	3,000	급식비
15	2016.10.05.	세제외 물품 구입	56,380	5,000	급식비
16	2016.10.10.	운동회 행사물품 구입	367,440	15,000	공통운영비
17	2016.11.08.	떡갈비외 부식비	190,100	1,000	급식비
18	2016.11.1	간장외 부식비	89,130	5,000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증정상품권 수령액	비고
	6.				
19	2016.11.24.	음료외 급간식비	102,760	5,000	급식비
20	2017.01.11.	교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1,455,110	50,000	공통운영비
21	2017.09.17.	교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314,720	15,000	공통운영비
합 계				**423,00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숭의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연말정산 신고 소홀

관 계 기 관 숭의유치원

내 용

숭의유치원 원장 ■■■은 2008. 7. 14.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숭의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2015년까지 원장 ■■■ 등 15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성질의 교직원 상여금 금8,450,000원(금팔백사십오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숭의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말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2014~2015년도 교직원 15명의 누락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숭의유치원 원 장 ■■■

<붙임>

2014 ~ 2015년 교직원 상여금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번	성명	설날 상여금 (2014.1.28)	하계 휴가비 (2014.7.28)	추석 상여금 (2014.9.4)	2014년도 소계	설날 상여금 (2015.2.17)	스승의날 상여금 (2015.5.15)	하계 휴가비 (2015.7.26)	추석 상여금 (2015.9.24)	2015년도 소계	합계
1	---	200,000	300,000	400,000	9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2,100,000
2	---	200,000	200,000	300,000	7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1,500,000
3	---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300,000
4	---	100,000	100,000	200,000	400,000	100,000				100,000	500,000
5	---	100,000	100,000	200,000	400,00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700,000
6	---		100,000	200,000	300,000	100,000				100,000	400,000
7	---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600,000
8	---	50,000	100,000	100,000	250,000	50,000				50,000	300,000
9	---	50,000	100,000	100,000	2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500,000
10	---	100,000			100,000					0	100,000
11	---	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350,000
12	---						100,000	100,000	100,000	300,000	300,000
13	---						100,000	100,000	100,000	300,000	300,000
14	---						100,000	100,000	100,000	300,000	300,000
15	---							100,000	100,000	200,000	200,000
합계		850,000	1,200,000	1,700,000	3,750,000	1,100,000	1,000,000	1,300,000	1,300,000	4,700,000	8,450,000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이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이화유치원

내 용

이화유치원 원장 ▼▼▼는 1983. 3. 2.~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원감 ◁◁◁은 2014. 3. 1.~2015. 2. 28.까지, 원감 ◀◀◀는 2015. 3. 1.~2016. 2. 29.까지, 원감 ▷▷▷는 2016. 3. 1.~2017. 2. 27.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감 ▶▶은 2017. 3. 1.~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및 「사립유치원 재정업무처리 지침」(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거나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유치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방법으로 하고,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화유치원에서는 2014 ~ 2016학년도까지 유치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당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공사 관련 사진 등) 없이 대금을 지급(7건 금2,876,000원)하거나, 유치원명의의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우선 결재 후 정산하여 관련 경비를 해당 교직원

♧♧♧ 외 6명의 계좌로 입금(18건 금1,086,500원)하는 등 [표]와 같이 총25건 금3,962,500원(금삼백구십육만이천오백원)에 대한 지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예산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건, 원)

연번	건명	건수	지급액	세부내역	비고
1	지출증빙서류 미비	7	2,876,000	<붙임 1> 참조	
2	개인카드 사용	18	1,086,500	<붙임 2> 참조	
계		**25**	**3,962,500**		

조치할 사항 **이화유치원 설립자**는 이화유치원에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이화유치원 원장 ▼▼▼

②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③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④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⑤ 이화유치원 원감 ▶▶

<붙임 1>

지출증빙서류 미비 내역

(단위: 원)

학년도	지출일	적요	지출액	거래처명	미비내역	비고
2015	2015.3.16.	복사지 외	242,500		물품 내역서 없음	
	2015.4.7.	원장실 가구 구입	600,000		물품 내역서 없음	
	2015.5.27.	수협카드대금	1,439,600		무증빙	
	2015.6.30.	사무용품	40,000		물품 내역서 없음	
	2015.10.26.	1,2,3층 화장실 수리비	500,000		무증빙	
2016	2016.3.3.	부식및간식대	11,900		무증빙	
	2016.8.11	교직원사기진작	42,000		무증빙	
합 계		**7건**	**2,876,000**			

<붙임 2>

개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원)

학년도	지출일	적요	지출액	거래처명	실제채주(교직원)	비고
2014	2014.9.2	황소차 유류대	97,000		♧♧♧	
2015	2015.3.23.	휴지구입	30,000		♣♣♣	
	2015.3.27.	주유비	60,000		♧♧♧	
	2015.3.27.	주유비	78,000		♧♧♧	
	2015.3.27.	주유비	79,000		♧♧♧	
	2015.3.27.	주유비	77,000		∑∑∑	
	2015.3.27.	주유비	76,000		∑∑∑	
	2015.3.27.	주유비	73,000		∑∑∑	
	2015.3.30.	주유비	72,000		∑∑∑	
	2015.4.1.	usb구입비	50,700		♨♨♨	
	2015.4.7.	풍선구입	20,000		☏☏☏	
	2015.4.27.	주유비	66,000		∑∑∑	
	2015.4.27.	주유비	76,000		∑∑∑	
	2015.5.1.	주유비	78,000		∑∑∑	
	2015.5.1.	주유비	72,000		∑∑∑	
	2015.6.8.	부식비	14,800		☎☎☎	
	2015.6.18.	부식비	54,980		☎☎☎	
2016	2016.3.4	교구바구니구입	12,020		▷▷▷	
합계		**18건**	**1,086,500**		♧♧♧ **외 6명**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이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및 연말정산 신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이화유치원
내 용

이화유치원 원장 ▼▼▼는 1983. 3. 2.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원감 ◁◁◁은 2014. 3. 1. ~ 2015. 2. 28.까지, 원감 ◀◀◀는 2015. 3. 1. ~ 2016. 2. 29.까지, 원감 ▷▷▷는 2016. 3. 1. ~ 2017. 2. 28.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감 ▶▶은 2017. 3. 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 의무) 제5조(과세기간),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르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화유치원에서는 [표]와 같이

1. 2014년도 ~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리자 ♣♣♣과 차량기사 ☜☜☜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2. 2014 ~ 2016년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총무이사 ☎☎☎의 실제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관리자 ♣♣♣과 차량기사 ☜☜☜의 실제 급여를 신고하지 않아, 3년간 근로소득 총 금174,411,340(금일억칠천사백사십일만일천삼백사십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2014~2017년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축소 신고 내역

(단위 : 원)

년도	성명	직	지급총액	비과세액	정당신고액	실제연말정산 신고액	신고누락액	소득세 원천징수여부
2014	☎☎☎	총무이사, 차량기사	58,470,000	0	58,470,000	57,849,280	620,720	○
	♣♣♣	관리자, 과학교실	29,560,000	0	29,560,000	0	29,560,000	×
	☜☜☜	차량기사	23,570,000	0	23,570,000	0	23,570,000	×
2015	☎☎☎	총무이사, 차량기사	67,136,280	1,800,000	65,336,280	46,042,460	19,293,820	○
	♣♣♣	관리자, 과학교실	28,490,000	0	28,490,000	0	28,490,000	×
	☜☜☜	차량기사	21,600,000	0	21,600,000	0	21,600,000	×
2016	☎☎☎	총무이사, 차량기사	49,945,550	400,000	49,545,550	41,828,750	7,716,800	○
	♣♣♣	관리자, 과학교실	23,060,000	0	23,060,000	0	23,060,000	×
	☜☜☜	차량기사	20,500,000	0	20,500,000	0	20,500,000	×
2017	♣♣♣	관리자, 과학교실						×
	☜☜☜	차량기사						×
합 계							**174,411,340**	

조치할 사항 **이화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2014 ~ 2016년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고, 2017년 ♣♣♣·☜☜☜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이화유치원 원장 ▼▼▼
②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③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④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⑤ 이화유치원 원감 ▶▶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405,058원
수감기관	이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이화유치원

내 용

이화유치원 원장 ▼▼▼는 1983. 3. 2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감 ▷▷▷는 2016. 3. 1. ~ 2017. 2. 28.까지 유치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립유치원 보험관리 기준」(학교운영지원과-4960호, 2017. 4. 21.)에 따르면 2014. 5. 19.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가입한 수익형 보험을 포함한 모든 만기 환급형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 하도록 하되, 이미 유치원 회계를 통해 납입한 납입보험료 중 '보장보험료(기본 보험료)' 부분은 세입조치 금액에서 제외하고 단순 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 부분은 계약 해지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화유치원에서는 2016. 7. 5. 가입한 만기 환급형 보험(현대해상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을 2016. 8. 31. 해지 하면서 총 납입 보험료 금600,000원(금육십만원) 중 단순 정기적금 성격의 적립보험료 금415,504원(금사십일만오천오백사원)을 유치원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해지환급금인 금10,446원(금일만사백사십원)만 세입조치 하고 보험해지로 발생한 손실금 금405,058원(금사십만오천오십팔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보험 가입 현황

(단위: 원)

상품명	가입일	해지일	보험료 납입 현황			세입 조치 현황		비고
			보장 보험료	적립 보험료	합계 보험료	세입 조치금액 (B)	세입 미조치금액 (A-B)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 가드재산 종합보험)	2016.7.5	2016.8.31	184,496	415,504	600,000	10,446 (해지환급금)	405,058	

조치할 사항 **이화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적립보험료 금405,058원(금사십만오천오십팔원)을 회수하고,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이화유치원 원장 ▼▼▼

② 이화유치원 원감 ▷▷▷(퇴직불문)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1,475,270원
수감기관	큰사랑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시정

제 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큰사랑유치원

내 용

큰사랑유치원 원장 ▽▽▽은 2014. 3. 1. ~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예산[1]은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큰사랑유치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원아들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유치원 급식비에서 구입하면서 원아의 급식과 관계없는 교직원 간식(커피·탄산음료·라면 등) 및 주류를 구입하였고,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등 총 119건 금1,475,270원(금일백사십칠만오천이백칠십원)을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1)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있다.

조치할 사항 **큰사랑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정】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한 금1,475,270원(금일백사십칠만오천이백칠십원)을 회수하고,

【경고요구】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① 큰사랑유치원 원장 ▽▽▽

<붙임>

예산의 목적 외 물품 구입, 과태료 지급 등등 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1	2014.03.01.	포도외	163,200	21,110	커피,주류, 탄산음료,라면	급식비
2	2014.03.06.	볶음깨외	42,590	4,350	커피우유	급식비
3	2014.03.07.	된장외	70,760	5,400	컵라면	급식비
4	2014.03.12.	포도씨유외	32,520	2,040	커피	급식비
5	2014.03.21.	홈플러스-토마토외	48,330	6,000	라면	급식비
6	2014.03.26.	요거트외	72,430	3,650	커피,라면	급식비
7	2014.03.26.	찰현미외	616,640	49,460	주류,커피	급식비
8	2014.03.28.	세외수입(FDK)	40,000	40,000	교통과태료	공통운영비
9	2014.04.02.	할인마트-계란외	21,150	800	커피우유	급식비
10	2014.04.04.	홈플러스-종합어묵외	155,620	16,060	주류,커피우유, 라면	급식비
11	2014.04.11.	홈플러스-황도외	59,010	16,520	라면,주류	급식비
12	2014.04.11.	홈플러스-요구르트외	23,910	11,300	콜라,주류	급식비
13	2014.04.18.	홈플러스-콩나물외	9,500	1,300	콜라	급식비
14	2014.04.18.	홈플러스-요리만두외	113,140	22,940	주류	급식비
15	2014.04.23.	다이소-노트외	38,520	2,500	콜라, 남성용깔창	교재및재료비
16	2014.04.24.	도서구입(원사용)	45,900	45,900	중2용자습서등	공통운영비
17	2014.04.30.	근로소득세	491,620	6,920	가산세	공통운영비
18	2014.05.0	홈플러스-당면	125,160	17,800	커피우유,컵라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1.	외			면 술깨는비밀(숙취해소음료)	
19	2014.05.05.	홈플러스-어묵외	39,310	9,060	콜라,주류	급식비
20	2014.05.09.	트레이더스-갈비외	80,360	17,780	콜라	급식비
21	2014.05.09.	할인마트-오리지날20	3,450	3,450	주류	급식비
22	2014.06.03.	다이소-곰인형	4,500	1,500	콜라	교재및재료비
23	2014.06.03.	홈플러스-표고버섯외	127,820	14,740	얼큰우동,커피	급식비
24	2014.06.03.	이마트-고소한두부외	93,890	23,630	커피	급식비
25	2014.06.04.	홈플러스-치즈외	42,610	13,740	주류,커피우유	급식비
26	2014.06.11.	이마트-양파외	116,300	42,380	주류	급식비
27	2014.06.13.	원차량과태료납부	80,000	80,000	과태료	공통운영비
28	2014.06.13.	이마트-방울토마토외	206,650	17,780	콜라	급식비
29	2014.06.15.	홈플러스-미역외	67,860	9,200	라면,사이다	급식비
30	2014.06.25.	홈플러스-꿀호떡외	132,650	27,870	커피,라면	급식비
31	2014.06.26.	이마트-표고버섯외	130,740	14,580	주류	급식비
32	2014.07.04.	홈플러스-자몽외	73,760	5,180	콜라,커피우유	급식비
33	2014.07.07.	홈플러스-도토리묵외	21,770	850	커피우유	급식비
34	2014.07.08.	홈플러스-식빵외	29,630	2,940	커피,라면	급식비
35	2014.07.14.	홈플러스-생닭외	24,080	4,000	헛개수,탄산음료	급식비
36	2014.07.1	홈플러스-	108,620	15,060	콜라,라면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9.	고등어외				
37	2014.07.24.	홈플러스-영양란외	80,840	20,010	라면,헤어젤	급식비
38	2014.07.24.	홈플러스-마요네즈외	34,560	17,000	주류,콜라,번데기탕	급식비
39	2014.08.01.	홈플러스-식품	38,660	7,740	주류	급식비
40	2014.08.20.	롯데마트-오징어외	70,000	1,890	커피우유	급식비
41	2014.08.21.	홈플러스-콩자반외	56,370	5,360	콜라,청양고추	급식비
42	2014.08.25.	이마트-쌀외	34,280	6,280	주류	급식비
43	2014.08.25.	홈플러스-새송이버섯외	78,640	25,140	주류,커피,비비크림,매운맛카레	급식비
44	2014.09.08.	홈플러스-콩나물외	111,270	13,070	주류,컵라면,사이다	급식비
45	2014.09.12.	성모치과	230,000	23,000	수진자:김석민(750219-*******)	공통운영비
46	2014.09.12.	홈플러스-두부외	86,270	32,580	아웃도어모자,요가탑SET,라면,헤어컨디셔너	급식비
47	2014.09.14.	홈플러스-현미외	116,830	22,730	주류,라면,커피우유	급식비
48	2014.09.14.	세일마트-숙주나물외	36,170	3,720	신당동떡볶이,커피	급식비
49	2014.09.18.	홈플러스-미숫가루외	74,930	12,200	커피,쫄떡볶이,라면	급식비
50	2014.09.20.	홈플러스-단호박외	38,890	7,020	화끈한매운갈비,매운맛카레,커피우유	급식비
51	2014.09.28.	화성통상-애호박외	35,030	14,440	주류,화장소품,탄산음료,청양고추	급식비
52	2014.10.0	홈플러스-어묵	54,530	8,350	커피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7.	외				
53	2014.10.10.	홈플러스-치즈외	95,400	4,000	사이다	급식비
54	2014.10.12.	이마트-오징어외	93,440	19,360	주류	급식비
55	2014.10.15.	홈플러스-우유외	97,480	4,350	커피우유	급식비
56	2014.10.25.	홈플러스-빅파이외	114,080	24,830	주류,커피우유,쫄떡볶이,매운떡볶이	급식비
57	2014.10.28.	홈플러스-배추외	81,000	14,830	주류,사이다,환타,쫄떡볶이	급식비
58	2014.10.31.	홈플러스-볶음깨외	60,790	9,040	헛개수,커피,쫄떡볶이,커피우유	급식비
59	2014.11.06.	홈플러스-양배추외	54,790	5,000	헛개차,커피우유	급식비
60	2014.11.14.	이마트-다진마늘외	143,070	17,880	커피	급식비
61	2014.11.14.	세일마트-양파외	70,410	5,980	컵라면	급식비
62	2014.11.25.	홈플러스-어묵외	29,720	8,560	주류,사이다	급식비
63	2014.11.25.	홈플러스-홍합가루외	134,920	7,300	떡볶이,라면	급식비
64	2014.11.25.	홈플러스-장조림용소고기외	51,320	7,800	커피,라면	급식비
65	2014.12.01.	홈플러스-우유외	35,870	6,100	커피,떡볶이	급식비
66	2014.12.01.	홈플러스-당근외	142,940	7,400	떡볶이,라면	급식비
67	2014.12.12.	홈플러스-마요네즈외	106,630	2,700	커피	급식비
68	2014.12.12.	홈플러스-콩나물외	47,390	7,400	라면,빨계떡	급식비
69	2014.12.23.	뚜레쥬르-마늘빵외	7,300	2,800	커피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70	2014.12.23.	홈플러스-특란외	16,670	2,300	라면	급식비
71	2014.12.23.	홈플러스-스파게티외	91,860	5,550	커피	급식비
72	2014.12.23.	홈플러스-뒷다리외	100,610	21,300	주류,라면,커피	급식비
73	2014.12.24.	이마트-쌀외	115,120	5,680	캡사이신	급식비
74	2014.12.29.	홈플러스-우유외	54,430	8,230	라면,떡볶이	급식비
75	2014.12.30.	홈플러스-소스외	12,650	3,850	매운살사소스,북경짜장매운라면	급식비
76	2014.12.31.	홈플러스-찹쌀외	109,040	15,120	주류,커피	급식비
77	2015.01.05.	동인책서점-도서구입	7,900	7,900	중등 문제집	교수학습활동비
78	2015.01.05.	홈플러스-요구르트외	42,850	3,000	커피	급식비
79	2015.01.13.	트레이더스-수박외	28,060	6,280	주류	급식비
80	2015.01.13.	C엔U-캔디외	12,950	5,550	주류	급식비
81	2015.01.13.	홈플러스-광천김외	89,890	18,440	컵라면,주류,커피	급식비
82	2015.01.13.	트레이더스-두부외	164,880	6,680	컵라면	급식비
83	2015.01.15.	홈플러스-블루베리외	50,830	5,000	커피,사이다	급식비
84	2015.01.23.	홈플러스테스-마늘바게뜨외	7,320	1,000	커피	급식비
85	2015.01.24.	홈플러스-불가리스외	46,300	17,460	라면,주류	급식비
86	2015.01.26.	뚜레쥬르-식빵외	19,760	2,800	커피	급식비
87	2015.01.31.	홈플러스-브로콜리외	55,280	12,460	라면,커피,주류	급식비
88	2015.02.0	홈플러스-	84,270	8,350	라면,커피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7.	건포도외				
89	2015.02.11.	홈플러스-단호박호빵외	27,900	11,720	커피	급식비
90	2015.02.15.	홈플러스-카레외	120,040	26,000	커피	급식비
91	2015.02.17.	교사간식	62,000	62,000	교사간식 (커피 등)	급식비
92	2015.03.10.	두부외	76,970	7,670	주류	급식비
93	2015.04.02.	홈플러스-무말랭이외	134,270	3,000	커피	급식비
94	2015.04.04.	홈플러스-단호박죽외	31,260	7,500	팻다운 (다이어트음료)	급식비
95	2015.04.08.	홈플러스-어묵외	57,200	2,380	커피우유	급식비
96	2015.04.13.	하모니마트-적상추외	8,880	2,650	라면,커피우유	급식비
97	2015.04.14.	이마트-원아피자외	58,500	1,000	커피	급식비
98	2015.04.16.	홈플러스-흑설탕외	46,060	4,000	라면	급식비
99	2015.04.18.	홈플러스-요구르트외	53,800	5,700	라면,커피우유	급식비
100	2015.04.23.	이마트-양배추외	142,490	10,780	라면	급식비
101	2015.04.24.	홈플러스-어묵외	142,760	3,000	라면	급식비
102	2015.05.12.	홈플러스-멸치외	76,670	4,950	라면	급식비
103	2015.05.21.	이마트-계란외	116,740	6,280	주류	급식비
104	2015.05.23.	신선유통-우유외	30,740	4,200	커피	급식비
105	2015.06.08.	홈플러스-오징어외	98,660	24,990	주류 컵라면,커피	급식비
106	2015.06.21.	뚜레쥬르-케익외	28,000	10,400	커피	급식비
107	2015.07.1	홈플러스-	107,020	16,520	주류	급식비

연번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회수대상 금액	회수대상 내역	비고
	1.	요구르트외			라면	
108	2015.07.17.	홈플러스-친환경대란외	68,820	22,310	주류	급식비
109	2015.07.24.	홈플러스-망고외	138,500	11,350	육포매운맛, 커피,컵라면	급식비
110	2015.07.24.	홈플러스-누룽지외	105,390	23,700	주류 커피우유	급식비
111	2015.08.05.	홈플러스-설탕외	49,730	8,400	커피,라면	급식비
112	2015.08.08.	홈플러스-건시래기외	77,190	18,540	주류 커피,라면	급식비
113	2015.08.14.	홈플러스-원소모품	74,440	22,140	주류	공통운영비
114	2015.09.01.	홈플러스-왕교자만두외	64,170	4,140	주류	급식비
115	2015.09.11.	홈플러스-불가리스외	89,560	8,090	주류	급식비
116	2015.09.18.	홈플러스-원운영비	30,490	13,920	주류	공통운영비
117	2015.10.02.	홈플러스-단무지외	47,980	8,600	주류	급식비
118	2015.10.07.	홈플러스-당근외	154,420	8,090	주류	급식비
119	2015.11.15.	홈플러스-간식	1,350	650	주류	급식비
합 계			**9,530,490**	**1,475,270**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도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담유치원

내 용

도담유치원 원장 ◉◉◉은 2015. 3. 1.~2015. 5. 29. / 2016. 3. 1.~2017 2. 28. / 2017. 3. 1.~2017. 3. 31.까지, 원장 ◈◈◈는 2015. 6. 1.~2016. 2. 29.까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장 ▣▣▣은 2017. 4. 1.~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3조(지출의 방법),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되,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거나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는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도담유치원에서는 2015 ~ 2017학년도까지 유치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붙임>과 같이 정당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없이 대금을 지급(18건 금1,628,990원)하는 등 지출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담유치원 설립자**는 도담유치원에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도담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② 도담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③ 도담유치원 원장 ▣▣▣

<붙임>

지출증빙서류 미비 내역

(단위: 원)

학년도	지출일	적요	지출액	거래처명	미비내역	비고
2015	2015.4.21.	로렌츠에듀교재비	396,000		무증빙	
(7건)	2015.8.18.	주방용품구입	65,000		무증빙	
	2015.9.24.	부식비	18,080		무증빙	
	2015.10.13.	문구구입	120,000		무증빙	
	2015.11.17.	김장용품구입	61,900		무증빙	
	2015.12.17.	화분구입	34,000		무증빙	
	2016.2.22.	웜라이팅물품	165,000		무증빙	
2016	2016.3.7.	문구대금	165,000		무증빙	
(7건)	2016.5.12.	부식비	96,600		무증빙	
	2016.7.22.	부식비	73,080		무증빙	
	2016.7.25.	부식비	108,180		무증빙	
	2016.8.26.	영화관람체험비	133,000		무증빙	
	2016.12.29.	차량주유비(경유)	50,000		무증빙	
	2017.1.17.	민속행사-강정만들기 재료	23,000		무증빙	
2017	2017.3.1.	교수학습활동비	12,950		무증빙	
(4건)	2017.4.3.	주방용품 구입	29,000		물품 내역서 없음	
	2017.5.13.	교수학습자료	70,000		물품 내역서 없음	
	2017.6.14.	공통운영비	8,200		무증빙	
합 계		**18건**	**1,628,990**			